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소규모맥주 과세특례 등
주세법령 개선방안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소규모맥주 과세특례 등
주세법령 개선방안

2017. 10

소규모맥주 과세특례 등 주세법령 개선방안

2017. 10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소규모맥주 과세특례 등
주세법령 개선방안

2017. 10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소규모맥주 과세특례 등 주세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2017년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형수

요 약

-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소규모주류제조면허제, 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 주류도매업면허(지역별 T/O제), 주세 증가세율 과세체계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하는 것
 - 소규모주류제조면허는 주류 소비자들의 소비선택권 확대 및 틈새시장 확대를 통한 자영업자의 시장 확대 등의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의 정책목표는 주류의 부정유통 방지를 통해 주류 관련 사업자(음식점, 유흥주점 등)들의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의 탈루 방지임
 - 주류도매업면허제(지역 T/O제로 운용 중)의 정책목표는 (주류 유통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등의) 세원관리의 적정성, 유효경쟁 확보를 통한 초과이윤 방지, 과당경쟁 방지·최소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방점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주세부담의 역진성 보완 등의 차원에서 증가세율 체계로 운용
 - 음주의 폐해 방지 측면에서는 음주의 사회적 외부비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종량세 체계가 보다 우월하지만 현행 주세정책은 역진성 보완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 주류시장의 과제를 요약하면, 규제 완화와 주류제품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진 필요성 검토와, 세부담의 형평성(역진성)과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피구후생조세에 입각한 주세율 체계 정립 필요 등으로 집약 가능

-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소비자 선호의 다양화·고급화 및 민간경제의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다각화를 통해 사회후생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
 - 기존의 소수의 대규모·少품목 주류제품 중심의 국내 주류시장을 다양화하여 다수의 소규모·多품종 주류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 기준을 시장 현실에 맞게 재조정

- 아울러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운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규모주류제조자에게 세경감 혜택을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할 필요
 - 시설 기준 및 세경감 혜택의 상향조정이 바람직

- 음식점이나 유흥주점에서 소비되는 주류제품은 특성상 (유통마진 등을 포함한) 부가가치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자료거래 등을 통한 각종 세부담(개인소득자의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의 탈루·회피 유인이 매우 높음
 - 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는 가정용·면세용 등의 주류제품이 (음식점, 유흥주점 등에서) 용도 외로 소비되는 경우, 식별·적발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세원관리 및 탈세방지에 유효한 정책효과(타당성, 효과성 등)를 발현 중
 - 반면 그에 따른 비용은 주류제품의 용도별 재고관리비용, 용도 표시비용 외에는 한계비용이 거의 0일 정도로 효율적인 정책수단

- 주류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주류도매업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T/O제도를 시행중
 - 현행의 지역별 T/O제는 본연의 효율적 세원관리 기능에 충실한 가운데, 도매업자들이 면허권역을 넘어 주류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유효경쟁을 유지하면서도, 면허를 받은 지역 외에는 역외 판매장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
 - 동시에 공급비용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적절한 공급체계도 유지 가능
 - 본래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경제위기 이후 단행되었던 구조조정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로 인해 초과노동공급 및 자영업 부문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율 하락으로 야기되는 도산·파산 가능성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발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류 수요의 집중과 인터넷 등의 발달에 따라 지역별 T/O제도를 통한 중소지역 공급안정화 기능이 약화될 것이므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격오지 수요 비중 등을 감안하여 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

- 주세율 체계의 종량세 전환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로서, “세부담의 형평(역진성 완화)” vs.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 원칙에 대한 선택문제와 함께, 입장에 따라 주류제조자·수입업자 간 이해관계가 엇비슷하면서 문제해결이 난망한 상황

- 주종 간 가격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종량세 수준에 대한 이해득실이 상충
 - 상대적으로 저가 주류의 세부담 증가 폭이 커지게 되어 국산 주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 종량세율 전환 시 사회적 비용을 세율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주요 논점
- 만약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의 종량세 전환 시, 개편의 실익 없이 고가주의 세부담만 인하하게 되는 상황에 유의할 필요
- 이 경우 증가세의 역진성 보완 장점이 사라지는 한편, 종량세 전환의 의의도 얻지 못함으로써 현행 체계보다 못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유념할 필요
- 외부비용을 충분히 세율에 반영한 상태라면 종량세 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예: 세수중립 종량세 전환방안 등)에는 오히려 종량세 체계로 전환 시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만 증폭될 전망
- 즉,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는 한편,
 - 가격이 저렴한 대중주(예: 희석식소주)의 가격만 인상되고, 고가증류주는 세율이 대폭 인하됨으로써 본연의 주류소비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은 상태에서 형평성과 국내 대중주 주류산업 위축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그러므로 사회적 외부비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현행의 증가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단순한 과세체계 변화는 그 부작용이 클 수 있으므로 각 과세체계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시행될 필요

목 차

I. 서 론	11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기본 방향	14
3. 선행연구 검토	14
II. 연혁 및 현황	17
1. 주세율 체계	19
2. 주류 소비 및 주세 세수	21
3. 주류시장의 여건: 면허제도를 중심으로	23
4. 소득계층별 주세부담 분포 및 소득재분배 효과	33
5. 주세 관련 현안 정책과제	38
III. 외국의 주세제도	41
1. 요약	43
2. OECD 회원국의 주세 고세체계 및 도입배경	51
3. 해외 주요국의 주류 유통체계 및 불법유통 방지제도	67
IV. 타당성 분석	91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 타당성: 소비패턴의 고급화·다양화에 따른 시장경제의 이해	93
2. 상표 용도구분 표시제 관련 정책의 타당성	100
3. 주류 도매업면허제도 관련 정책의 타당성	103
4. 현행 주세율 체계의 타당성	107

V. 효과성 분석	115
1. 개요: 효과성 분석방법	117
2.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제도	117
3. 주류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	119
4. 주류도매업면허 지역T/O제	121
5. 주세 증가세 과세체계	123
VI. 효율성 분석	125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	127
2. 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	128
3. 주류도매업면허제도	129
4. 주세 증가세율 체계	131
VII. 제도 운용 및 검토·개선방안	135
1. 주류 시장 관련 현안이슈 검토	137
2. 소규모맥주제조면허 관련 개편방안	147
3. 주세율 체계 개편방안의 적정성 검토: WTO 주세분쟁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152
VIII. 종합평가 및 결론	167
참고문헌	172
부록 1: 참고 표	175

표 목 차

<표 Ⅰ-1> 주세제도 및 세부담 형평성 관련 주요 선행연구	15
<표 Ⅱ-1> 주세율의 변천	20
<표 Ⅱ-2> 주종별 주류 출고량 및 납부(할)세액 추이	22
<표 Ⅱ-3> 주류 제조면허 현황	27
<표 Ⅱ-4> 민속주 제조면허 현황	28
<표 Ⅱ-5>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현황	29
<표 Ⅱ-6> 주류 판매업 면허 현황	30
<표 Ⅱ-7> 최근의 주류 제조면허·소규모주류면허 제도의 변화	31
<표 Ⅱ-8> 소규모주류면허와 일반주류면허의 비교	32
<표 Ⅱ-9> 소득계층별 총소득, 주세부담 부담 분포	34
<표 Ⅲ-1> OECD 국가의 주세정보	44
<표 Ⅲ-2> 종가세 적용 국가의 정책목적	47
<표 Ⅲ-3> 주요국의 주류행정 요약	50
<표 Ⅲ-4> 외국의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세율 적용 현황	52
<표 Ⅲ-5> 영국의 맥주 주세율	55
<표 Ⅲ-6> 캐나다 연방정부의 맥주에 대한 주세율	56
<표 Ⅲ-7> 네덜란드 맥주 주세율	57
<표 Ⅲ-8> 종량세 및 종가세의 장·단점	59
<표 Ⅲ-9> 태국의 주세 세율	65
<표 Ⅲ-10> 미국의 주류 유통과정별 규제 법령 및 담당기관	68
<표 Ⅲ-11> 미국의 주류 종류별 제조면허제도	70
<표 Ⅲ-12> 미국의 주류 종류별 판매면허제도	71
<표 Ⅲ-13> 미국에서 주류 전매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states)	73
<표 Ⅲ-14> 캐나다 주별 주류 소매점 주체(2011기준)	75

<표 III-15> 주류의 활동과 면허의 종류	80
<표 III-16> 일본의 주류 관련 법체계 및 주류행정 분담	87
<표 III-17> 일본의 주류판매업 등 면허의 구분	89
<표 IV-1> 종가세·종량세 체계의 장·단점 비교 1	108
<표 IV-2> 종가세·종량세 체계의 장·단점 비교 2	109
<표 IV-3> 주세 종가세 채택 국가의 현황	111
<표 VII-1> 외국의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세율 적용 현황	144
<표 VII-2> 소규모맥주제조 관련 개편방안 모음	152
<표 VII-3> 주요 주종별 과세실적과 단위당 주세액	162
<표 VII-4> 희석식소주와 위스키의 증류주 세수중립적 종량세율 추정결과	162
<표 VII-5> 소득계층별 가구당 주세부담 분포의 변화효과	163
<표 VII-6> 증류주 세수중립적 종량세율 개편의 누진도 및 소득재분배 효과	164
<부표 1> 주세법 시행령 [별표 3](<개정 2017. 2. 7.>),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제5조제1항 관련)	175

그림 목 차

[그림 II-1] 주종별 출고량 및 납부세액 비중 비교(2015년)	23
[그림 II-2] 주요 세목의 누진도 지수(Suits 지수 기준)	35
[그림 II-3] 소득구성 항목별 지니계수 변화율	37
[그림 III-1] 영국의 주류 관련 행정체계	81
[그림 III-2] 독일의 주류 관련 행정체계	85
[그림 IV-1]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단기 균형	97
[그림 VII-1]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시장진입 증가에 따른 소비자후생의 증가	139

I. 서론



I. 서론

1. 연구의 목적

-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세정·세원관리의 적정성·효율화 등을 위해 현행 주세 과세체계 및 각종 면허제도, 유통규제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 WTO 주세분쟁 이후 주세율 체계 변화, 주류 소비패턴의 구조 변화, 주류 제조·소비시장의 환경 변화, 음주 관련 사회적 비용의 급증 등 주류시장 전반에 걸쳐 구조 변화가 진행되면서 관련 제도의 개편 필요성 제기

- 주요 환경변화
 - 주세율 체계: 한·EU 그리고 한·미간 WTO 주세분쟁의 결과, 고가주-고세율, 저가주-저세율 구조의 주세체계가 맥주·와인·증류주별 동일세율 구조로 개편
 - 주류 소비시장의 변화
 - 소비자들의 기호 다양화로 소(少)품목·대량 생산·소비 위주의 소비구조에서 다품목·소량 중심의 생산 및 소비패턴이 등장하면서 다양화
 - 회식 등 음주관련 문화의 변화
 - 수입주류시장의 다양화 및 비중 확대: 국내·수입주류 간 경쟁 심화
 - 음주운전 폐해(음주운전사고, 건강 유해성 등) 증가에 따른 사회적 경각심 역시 크게 증대
 - 생산·유통 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 증대
 - 소비패턴의 고도화 과정에서 소비자 기호 존중 및 다양성 중요시
 - 주류산업이 규제대상에서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적 중요성 부상
 - 주세의 외부불경제 시정 기능에 대한 시대적 요구 증대
 - 대표적 sin tax의 하나로서 주세의 소비억제적 조세기능(sumptuary taxation)이 강조되면서 본연의 소비억제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 증대

- 이상과 같은 주류시장 전반에 걸친 제반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주세의 각종 제조·판매면허제도, 규제사항, 주세 과세체계의 적정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증대

2. 연구의 기본 방향

-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규제의 적정화, 경쟁촉진, 적정 세원관리 방안, 종가세·종량세의 장단점 비교 및 적정 주세율 과세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 규제의 적정화를 통한 국민후생 증진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
 - “세부담의 형평” vs. “외부불경제의 교정” 사이의 상충관계를 고려한 적정 주세 과세체계의 정립방안을 모색
 -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 본 연구의 핵심 연구방향은 심층평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주류 제조면허, 주류제품 용도구분, 도매면허, 적정 과세체계 등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

3. 선행연구 검토

- 주류 제조면허 및 유통, 주세 과세체계, 귀착·재분배 효과 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성명재·장근호(1999), 장근호(2005), 정영호·성명재(2009), 박상원·성명재(2010), 성명재(2016) 등이 있음
- 성명재·장근호(1999)는 WTO 체제하에서의 주세율 체계 정비방향, 장근호(2005)와 정영호·성명재(2009)는 주세율 체계 개편방안, 박상원·성명재(2010)는 제조면허 및 주세 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연구
- 성명재(2016)는 주세를 포함하여 주요 조세·재정지출의 누진도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

□ 성명재(2017)는 수입주류·국내주류 사이의 주세 과세표준 차이, 주세 증가세·종량세 체계의 장단점과 적정성을 정성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

<표 I -1> 주세제도 및 세부담 형평성 관련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및 연구명	주요 내용
성명재·장근호(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C 및 한·미간 WTO 주세분쟁의 결과로서, 맥주류, 와인류, 증류주의 3개 주종별 주세율의 일치화 방안 및 주세율 수준에 대한 개편방안 및 기대효과를 분석 - 증가세·종량세의 장단점 비교 및 우리나라 주세율 체계로 바람직한 과세체계를 비교분석
장근호(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심각성을 지적 - 음주로 인한 외부불경제 및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주세율 체계의 조정방안을 제안: 전반적인 주세율 상향조정방안을 제안
정영호·성명재(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와 흡연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음주·흡연의 억제 필요성을 주장 - 주세와 관련하여 증가세 과세체계의 제약조건하에서 주세율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안
성명재·박상원(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제조시장 진입과 관련한 각종 규제제도의 적정성을 검토 - 과도한 시장진입규제의 완화를 통한 주류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 - 맥주 등 소규모제조자 육성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와 그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증진방안을 검토·제안
성명재(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조세 및 복지재정지출, 교육지출 등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를 분석 - 주세를 비롯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세, 유류세 등) 및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여, 과세의 형평성 효과를 분석
성명재(2017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주류와 수입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의 차이 발생 원인 진단 - 주세 과세체계의 개편(변경)의 경제적 효과 예상 및 적정성 검토 - 주세 과세단계의 변경방안의 적정성 검토 - 수입주류 주세 과세표준의 항목변경 방안의 타당성 검토 - 증가세·종량세 과세체계의 장단점 비교 및 적정성 검토

Ⅱ. 연혁 및 현황



II. 연혁 및 현황

-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세율 체계의 구조와 현황을 간략히 조망(제1절)하고, 주세율 체계 및 주류시장 관련 제반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제2절)

1. 주세율 체계

- 우리나라는 종가세 구조의 주세율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상세 사항은 <표 II-1> 참조)
 - 주종별 구조는 맥주류와 증류주 72%, 와인류(청주, 약주 등 포함) 30%, 탁주 5% 등의 세율이 적용
 - 1960년대 중후반까지 주세율 체계는 종량세 구조였으나, 1960년대 말부터 단계적으로 종가세 체계로 전환
 - 현재는 주정만 제외하고 모두 종가세 체계로 과세
 - 그런데 주정의 대부분이 희석식소주 제조를 위해 중간재로 투입되며, 이 경우 주정에 부과된 주세는, 희석식소주에 대한 주세 산정 시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
- 현행 주세율 체계는 1990년대 말 한·EU 및 한·미간 WTO 주세분쟁의 결과, 증류주 내의 세율차등 요소를 제거하라는 WTO 주세패널의 결정사항을 이행한 결과로서 형성
 - WTO 주세패널은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증류주 내의 세율격차를 철폐할 것을 결정

〈표 II -1〉 주세율의 변천

	(단위: %, 원/천리터[주정])										
	1991.7.1~	1994.1.1~	1996.1.1~	1997.1.1~	2000.1.1~	2001.1.1~	2002.1.1~	2005.1.1~	2006.1.1~	2007.1.1~	비고
탁주	5	5	5	5	5	5	5	5	5	5	
약주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명약주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청주
청주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청주
맥주	150	150	150	130	115	100	100	90	80	72	
과실주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기타양조주	80	80	80	80	72	72	72	72	72	72	일반증류주
증류식소주	50	50	50	50	72	72	72	72	72	72	
회석식소주	35	35	35	35	72	72	72	72	72	72	
고량주	80	80	80	80	72	72	72	72	72	72	일반증류주
위스키·브랜디	150	120	100	100	72	72	72	72	72	72	
주정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기타증류주	80	80	80	80	72	72	72	72	72	72	일반증류주
인삼주1	50	50	50	50	72	72	72	72	72	72	리큐르
인삼주2	50	50	50	50	72	72	72	72	72	72	
기타제제주											
기타제제주1	80	80	80	80	72	72	72	72	72	72	일반증류주
기타제제주2	80	80	80	80	72	72	72	72	72	72	

주: 1. 음영 표시()한 것은 종량제 세율을 나타냄.

2. 인삼주1과 기타제제주1, 그리고 인삼주2와 기타제제주2는 각각 주세율이 80% 이상 또는 미만 주류를 원료로 사용한 것임.

3. 교육세: 1981.12. 5 제정 - 주세액의 10%. 단, 탁주, 약주, 소주, 약주, 소주 제외함.

1990.12.31 개정 - 주세액의 10%. 단, 탁주, 약주, 소주, 주정 제외, 주세율 80% 이상 주류는 30%.

1993.12.31 개정 - 주세액의 10%. 단, 탁주, 약주, 주정 제외, 주세율 80% 이상 주류는 30%(소주 교육세는 1995년부터 과세).

1999.12.31 개정 - 주세액의 10%. 단, 탁주, 약주, 소주, 주정 제외, 주세율 70% 이상 주류는 30%.

원자료: 성명제·장근호(1999)의 <표 II-1>의 내용 중 일부를 성명제(2017A)가 발췌 인용 및 업데이트하여 수정.

자료: 성명제(2017A)의 <표 I> 인용

2. 주류 소비 및 주세 세수

가. 주류 소비추이

-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는 물량 기준으로는 맥주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표 II-2> 참조)
 - 2015년 현재 주류 전체 소비량(정확히는 출고량)은 총 407.4만kl인데, 이 중 맥주가 220.9만kl로 54.2%를 차지
 - 맥주 다음으로는 희석식소주(23.5%)와 탁주(10.2%)가 절대적으로 소비(출고) 비중이 높음

나. 주세 세수추이

- 주세의 납부(할)세액 기준으로는 2015년 현재 전체 세수 3조 2,269.7억원 중 맥주가 1조 6,085.2억원으로 49.8%로 가장 세수비중이 높음
 - 희석식소주의 세수비중은 36.3%로 2번째로 높는데, 탁주는 0.6%로 매우 미미
 - 맥주와 희석식소주의 경우 통상적으로 1병당 소비자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1병당 병입량이 맥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물량기준에 비해 세수기준의 비중이 희석식소주와의 상대적 크기 차이가 조금 줄어들
- 탁주는 주세율이 5%에 불과하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소비물량은 3위에 해당하지만 세수는 거의 미미한 수준
 - 탁주는 한동안 거의 소비되지 않는 수준까지 소비량이 격감하면서, 주세율도 명목만 유지한 채 5%로 낮게 책정되었으나,
 -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비가 폭증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세율 수준의 정상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표 II -2〉 주종별 주류 출고량 및 납부(할)세액 추이

(단위: kl, 백만원)

출고량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회식소주	위스키	브랜드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계
2010	412,279	18,841	21,267	1,956,826	46,915	785	930,608	26,179	1,113	9,390	4,779	5,323	298,409	3,732,713
2011	458,198	18,975	22,329	2,022,215	46,384	706	923,028	23,371	927	10,525	4,621	4,312	294,743	3,830,334
2012	448,047	16,544	23,860	2,103,654	46,505	693	950,962	20,428	704	11,790	6,547	4,484	303,184	3,937,402
2013	426,216	14,538	25,326	2,156,597	52,091	805	905,919	18,488	744	15,214	6,806	5,295	293,037	3,921,076
2014	430,896	12,320	23,291	2,173,472	53,664	861	957,818	17,991	998	16,832	6,844	6,475	313,410	4,014,872
2015	416,046	11,332	22,249	2,208,808	61,905	1,045	955,523	17,402	642	19,226	36,316	7,292	315,829	4,073,615
비중(%)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회식소주	위스키	브랜드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계
2010	11.0	0.5	0.6	52.4	1.3	0.0	24.9	0.7	0.0	0.3	0.1	0.1	8.0	100.0
2011	12.0	0.5	0.6	52.8	1.2	0.0	24.1	0.6	0.0	0.3	0.1	0.1	7.7	100.0
2012	11.4	0.4	0.6	53.4	1.2	0.0	24.2	0.5	0.0	0.3	0.2	0.1	7.7	100.0
2013	10.9	0.4	0.6	55.0	1.3	0.0	23.1	0.5	0.0	0.4	0.2	0.1	7.5	100.0
2014	10.7	0.3	0.6	54.1	1.3	0.0	23.9	0.4	0.0	0.4	0.2	0.2	7.8	100.0
2015	10.2	0.3	0.5	54.2	1.5	0.0	23.5	0.4	0.0	0.5	0.9	0.2	7.8	100.0
납부(할)세액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회식소주	위스키	브랜드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계
2010	19,448	21,175	26,001	1,289,116	71,147	3,527	968,083	264,510	8,501	14,647	10,566	2,737	2,619	2,702,077
2011	21,971	21,908	27,460	1,346,794	73,523	3,281	968,300	234,546	7,112	16,619	11,404	2,747	2,454	2,738,119
2012	21,444	18,464	27,486	1,430,242	72,473	3,387	1,011,468	204,417	5,309	20,776	17,968	3,174	2,411	2,839,019
2013	20,345	17,119	29,600	1,544,699	81,381	4,015	1,052,401	171,016	5,640	25,864	19,981	3,742	2,326	2,978,129
2014	20,580	14,667	29,404	1,568,691	83,207	4,857	1,138,898	172,174	4,702	28,889	19,453	4,814	2,358	3,092,694
2015	20,204	13,557	28,051	1,608,517	87,680	6,573	1,171,309	167,310	4,939	27,825	82,663	5,970	2,368	3,226,966
비중(%)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회식소주	위스키	브랜드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계
2010	0.7	0.8	1.0	47.7	2.6	0.1	35.8	9.8	0.3	0.5	0.4	0.1	0.1	100.0
2011	0.8	0.8	1.0	49.2	2.7	0.1	35.4	8.6	0.3	0.6	0.4	0.1	0.1	100.0
2012	0.8	0.7	1.0	50.4	2.6	0.1	35.6	7.2	0.2	0.7	0.6	0.1	0.1	100.0
2013	0.7	0.6	1.0	51.9	2.7	0.1	35.3	5.7	0.2	0.9	0.7	0.1	0.1	100.0
2014	0.7	0.5	1.0	50.7	2.7	0.2	36.8	5.6	0.2	0.9	0.6	0.2	0.1	100.0
2015	0.6	0.4	0.9	49.8	2.7	0.2	36.3	5.2	0.2	0.9	2.6	0.2	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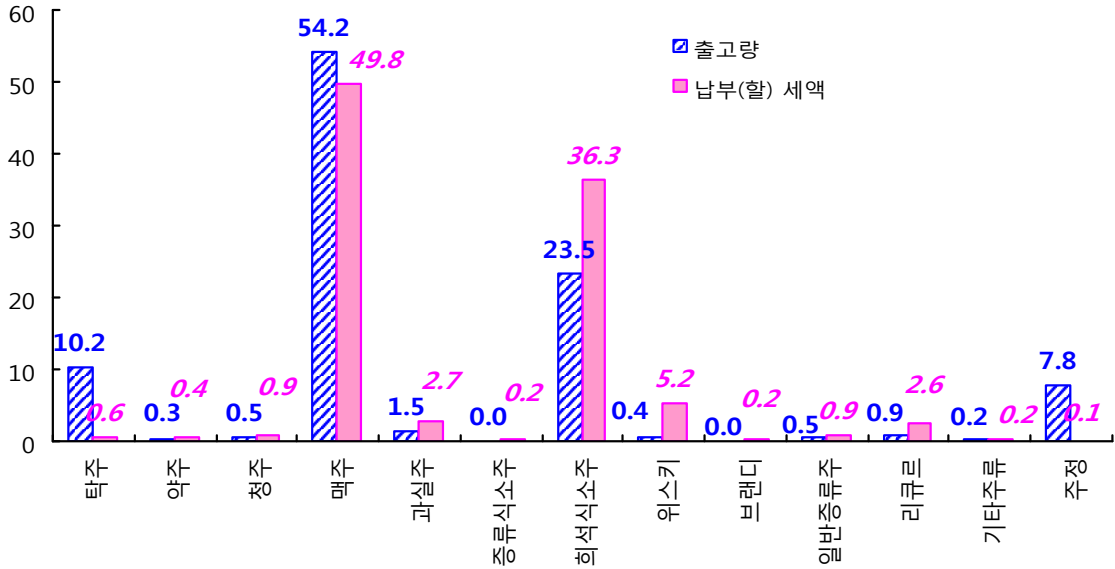
주: 1. 해당연도의 출고량(수입분(수입량 기준)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
 2. 2010-2015년의 주세 정수실적은, 각각 2조 8,783억원, 2조 6,465억원, 2조 9,989억원, 2조 9,470억원, 2조 8,520억원, 3조 2,275억원(세수실적 자료는 기획재정부)

원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2016.

자료: 성명제(2017A)의 <표 2> 재인용

[그림 II -1] 주종별 출고량 및 납부세액 비중 비교(2015년)

(단위: %)



주: 국세청(2015)의 원자료를 성명재(2017A)가 가공하여 작성한 것을 재인용
 자료: 성명재(2017A)의 [그림 2] 재인용

3. 주류시장의 여건: 면허제도를 중심으로

- 본 절에서는 주류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한 각종 면허제도와, 음주 억제를 위한 사회정책적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해 제반 여건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논의
 - 구체적으로는 세원관리의 적정화·원활화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는 면허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 등을 주류시장의 여건 변화와 결부시켜 정리하고 분석

가. 개요

- 주류는 통상적인 일반 소비재와 달리 소비 시에 효용도 제공하지만 음주의 결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 즉 각종 비용(예: 음주 관련 질병 및 사고, 가정불화, 주취폭력, 노동력 상실, 생산성 하락, 사회불안 가중 등)을 발생시키므로 엄격한 제조·유통·소비 관리가 필요
 - 그러므로 소비자효용 극대화라는 개인적 욕구의 충족과 함께 사회경제적 비용의 최소화하는 정책목표가 다분히 상충되는 특이성을 보유

- 이에 따라 거의 모든 국가들이 주류의 제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엄격한 규제와 조세정책을 전개
- 기본적으로 주류의 제조·유통·소비에 있어(소비자후생과 생산자잉여 등을 포함한) 사회후생의 극대화라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 틀을 따르되, 외부불경제 최소화를 목적으로 제조·유통단계의 규제, 개별소비세(excise taxes) 부과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주류의 제조·소비 및 부정유통 등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유통단계에서 각종 면허제도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
- 주류 제조 및 판매(유통)단계에서 면허제 등을 통해 주류의 제조와 유통을 적절하게 통제
 - 좁게는 주세 및 관련 조세의 세원을 관리하고
 - 넓게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면허제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역사적으로 주세가 과세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세원관리의 편의성·효율성 등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매우 오래전부터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제도를 시행
 - 전통적으로 주류 면허제를 시행한 가장 큰 이유는 원활한 세원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컸음
 - 다만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정보화와 전산화를 통해 세원정보의 축적이 급진전되고 세원관리업무가 크게 용이해진 반면,
 - 음주의 사회적 비용(외부불경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부불경제 축소 기능이 더 강조되는 형태로 주류시장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중
- 주류산업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동시에 분별 있는 음주문화를 위해 엄격한 국가 및 공공 차원에서의 규제가 필요한 양면성을 보유

- 따라서 제조·유통단계에서의 엄격한 통제(국가전매제 또는 면허제 등)와 함께,
 - 소비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규제(예: 고율의 소비세, 주류 판매장소, 판매 시간, 음주허용 연령, 판매허용 연령 제한, 영업장 위치 및 형태별 판매가능 주종 규제 등)를 다양하게 전개할 필요
- 주류시장 여건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추세는 산업활동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다양한 소비자선택권의 보장을 통한 사회후생 증진 차원에서 제조 및 유통단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음주 외부불경제 축소를 목적으로 소비단계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트렌드
- 아래에서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류 면허제도에 대한 이해증진과 정책과제를 검토

나. 주류제조면허

- 주류 면허제도는 주류제조면허와 주류판매(업)면허로 구분될 수 있음(<표 II-3>~<표 II-6>)
- 주류제조면허는 각 주종별로 제조장마다 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
- 주류의 제조품질과 원활한 세원관리 등을 위해 일정한 시설기준 등을 설정하여 관리
 - 시설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주류 제조 및 소비를 통제하고 규제
 - 예전에는 맥주, 희석식소주 등 우리나라 주류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종의 경우 (최소)시설기준이 상당히 높아 새로운 기업의 시장 신규진입이 어려웠음
 - 따라서 소(少)품목·대량유통 주류가 주류시장의 대종을 이루던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
 - 2002년에는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도입을 통해 소규모주류제조자들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면서 다품종·소량유통 주류가 다수 출현하면서 주류 소비패턴이 빠르게 다양화
 - 그 밖에 민속주, 지역특산주 등 문화·전통보전 및 지역특산물 주류 등을 대상으로 주류제조면허가 활발하게 발급되기 시작

□ 주류판매업면허의 종류(「주세법 시행령」 제9조 기준)

- 종합주류도매업면허
- 특정주류도매업면허
 - 발효주류 중 탁·약·청주
 - 전통주
 -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 주정도매업면허
- 주류수출입업면허
- 주류중개업면허
- 주류소매업면허
- 주정소매업면허

〈표 II -3〉 주류 제조면허 현황

(단위: 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술덧	합계
2003	888	151	86	3	61	16	17	7	3	30	87	20	11	2	1,382
2004	864	163	117	6	83	17	17	7	4	34	90	19	11	1	1,433
2005	813	164	118	6	84	21	17	8	5	34	96	45	10	1	1,422
2006	782	177	106	5	82	24	17	7	5	37	88	65	10	1	1,406
2007	778	180	6	99	131	27	17	8	5	42	89	31	11	1	1,425
2008	780	190	6	94	142	29	17	8	5	52	89	44	11	1	1,468
2009	768	184	6	83	167	35	17	10	5	55	89	74	11	1	1,505
2010	847	220	7	73	204	43	17	12	8	70	95	41	10	1	1,648
2011	868	230	6	69	230	48	19	13	8	78	99	47	10	1	1,726
2012	873	273	6	69	242	51	18	12	8	83	98	59	10	1	1,803
2013	891	283	7	61	250	54	18	11	9	92	99	74	10	1	1,860
2014	825	288	6	61	235	48	19	11	8	104	97	83	10	1	1,796
2015	800	297	9	79	246	55	19	11	8	132	106	89	10	1	1,862

주: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 -4〉 민속주 제조면허 현황

	타주	약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합계
2002	3	28		6	4	5	1	47
2003	4	25		6	4	5	1	45
2004	3	27		6	5	5	2	48
2005	4	25		6	5	6	2	48
2006	3	23	0	7	5	7	3	48
2007	4	25	0	9	6	7	3	54
2008	4	24	2	8	7	7	4	56
2009	2	21	1	7	6	6	3	46
2010	6	22	2	8	9	7	3	57
2011	9	23	2	8	8	6	4	60
2012	10	29	1	12	8	9	5	74
2013	4	21	0	7	7	7	2	48
2014	7	22	1	7	7	7	2	54
2015	6	22	0	8	7	7	2	52

주: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단위: 개)

〈표 II -5〉 지역특산물 제조면허 현황

(단위: 개)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브랜드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합계
2002	**	9	**	33	2	n.a.	7	47	3	101
2003	**	10	**	39	2	n.a.	9	55	6	121
2004	**	10	**	46	2	n.a.	12	56	7	133
2005	**	16	**	81	2	n.a.	14	57	14	184
2006	7	24	1	98	2	**	17	56	16	221
2007	7	26	1	109	4	1	18	57	18	241
2008	12	33	1	117	5	0	26	59	22	275
2009	20	43	1	134	11	2	30	57	20	318
2010	38	55	2	174	15	2	40	61	25	412
2011	57	62	1	202	19	2	48	64	25	480
2012	75	97	1	215	19	2	54	62	29	554
2013	103	124	2	224	26	2	65	65	43	654
2014	96	141	1	210	22	1	75	61	48	655
2015	100	148	3	220	28	1	101	71	52	724

주: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

자료: 국제청, 국제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 -6〉 주류 판매업 면허 현황

(단위: 개)

	도매업면허					소매업면허					국내 증개업	수출입 증개업	직매장	하차장	총계					
	종합주류 도매		특정주류 도매		수입주류 전문도매	수출입업	주정	소계	일반 소매업	유형 음식점						전문 소매업	관광 지정업	소계		
	1,189	1,226	1,233	1,229	1,214														1,198	1,196
2002	1,189	1,226	1,233	1,229	1,214	1,198	1,196	1,188	1,182	1,173	1,172	1,162	1,159	1,149	1,149	197	114	277	51	614,307
2003	1,226	1,331	1,473	1,476	1,520	1,541	1,512	1,507	1,863	1,885	1,849	1,788	1,785	1,777	200	117	263	54	618,728	
2004	1,233	1,229	1,473	1,476	1,520	1,541	1,512	1,507	1,863	1,885	1,849	1,788	1,785	1,777	207	111	257	54	621,441	
2005	1,229	1,214	1,473	1,476	1,520	1,541	1,512	1,507	1,863	1,885	1,849	1,788	1,785	1,777	208	107	259	78	608,751	
2006	1,214	1,198	1,473	1,476	1,520	1,541	1,512	1,507	1,863	1,885	1,849	1,788	1,785	1,777	204	103	279	111	612,962	
2007	1,198	1,196	1,473	1,476	1,520	1,541	1,512	1,507	1,863	1,885	1,849	1,788	1,785	1,777	207	100	276	128	619,372	
2008	1,196	1,188	1,473	1,476	1,520	1,541	1,512	1,507	1,863	1,885	1,849	1,788	1,785	1,777	214	104	285	167	628,277	
2009	1,188	1,182	1,473	1,476	1,520	1,541	1,512	1,507	1,863	1,885	1,849	1,788	1,785	1,777	221	104	277	180	643,776	
2010	1,182	1,173	1,473	1,476	1,520	1,541	1,512	1,507	1,863	1,885	1,849	1,788	1,785	1,777	230	96	282	187	660,140	
2011	1,173	1,172	1,473	1,476	1,520	1,541	1,512	1,507	1,863	1,885	1,849	1,788	1,785	1,777	236	98	267	216	670,832	
2012	1,172	1,162	1,473	1,476	1,520	1,541	1,512	1,507	1,863	1,885	1,849	1,788	1,785	1,777	243	96	265	262	675,060	
2013	1,162	1,159	1,473	1,476	1,520	1,541	1,512	1,507	1,863	1,885	1,849	1,788	1,785	1,777	246	94	264	304	678,902	
2014	1,159	1,149	1,473	1,476	1,520	1,541	1,512	1,507	1,863	1,885	1,849	1,788	1,785	1,777	244	93	273	346	695,064	
2015	1,149	1,149	1,473	1,476	1,520	1,541	1,512	1,507	1,863	1,885	1,849	1,788	1,785	1,777	236	96	273	364	712,290	

주: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다. 우리나라 주류 면허제도의 변화추이

- <표 II-7>은 최근 우리나라 주류제조면허제도의 변화를 나타냄
 -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시장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II-7> 최근의 주류 제조면허·소규모주류면허 제도의 변화

구분	내용
주류 제조면허 시설기준 (담금·저장·제성용기 총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주: 8,125kl → 2,775kl('08) → 150kl('11) → 75kl('14) · 희석식소주: 360kl → 130kl('08) → 25kl('11) · 탁·약주: 13.26kl → 13.2kl('08) → 5kl('10)
소규모주류 면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맥주 제조면허 신설('02) · 판매범위 확대: 자신의 영업장('02) → 자신의 다른 영업장 추가('08) →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 추가('14) → 병입후 최종소비자 판매 허용('16) · 과세표준 감면 확대: 과세표준 20% 경감('12) → 출고량에 따라 20%, 40% 경감('14) → 출고량에 따라 20%, 40%, 60% 경감 · 소규모 탁·약·청주 면허 신설('16)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 주류 제조면허의 경우 주종별로 제조 시설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 상세 정보는 <부표 1> 참조
-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대폭 하향조정
 - 맥주: 종전 8,125kl → 75kl(2014년)
 - 희석식소주: 종전 360kl → 25kl(2011년)
 - 탁주, 약주: 종전 13.26kl → 5kl(2010년)
 - 제조장 시설기준의 대폭 하향조정을 통해 잠재적 신규진입자들의 진입이 크게 용이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시장경쟁도 촉진
- 소규모주류면허(<표 II-8> 참조)
 - 제조 시설기준(2017년 현재)

- 맥주(2002년 신설): 5kl 이상 75kl 미만
- 탁·약·청주(2016년 신설): 1kl 이상 5kl 미만

□ 일반 주류제조면허와 비교해볼 때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경우에는 판매허용장소(유통범위)와 과세표준 산정방식, 세경감 혜택 등이 상이(<표 II-8> 참조)

- 소규모주류 제품의 경우 일반소매점에서의 판매가 금지
 - 점차 판매범위가 확대중: 최근에는 병입 후 제조장 외 최종소비자 판매를 허용
- 과세표준: 일반주류가 제조장 반출가격인 데 반해 소규모주류는 제조원가의 110% 기준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경우에는 제조장 내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일반주류의 출고가격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
 - 따라서 편의상 제조원가의 110%에 준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설정
- 그 밖에 출고량 수준에 따라 과세표준을 20~60% (차등)경감하여 세경감 혜택을 부여
 - ※ 일반적으로 소규모주류의 제조원가가 규모의 경제, 특정 선호의 반영 등의 문제로 일반주류보다 평균제조원가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짐

<표 II -8> 소규모주류면허와 일반주류면허의 비교

면허종류	소규모주류면허	일반주류면허
제조 시설기준	· (맥주) 5kl 이상 75kl 미만 · (탁·약·청주) 1kl 이상 5kl 미만	· (맥주) 75kl 이상 · (탁·약주) 5kl 이상 · (청주) 12.5kl 이상
유통경로	· 종합주류도매업 · 특정주류도매업	· (맥주)종합주류도매업 · (탁·약·청주)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유통범위	· 일반소매점 유통 금지 · 병입 후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 일반소매점 유통 가능
과세표준	· 제조원가×1.1	· 출고가격(통상가격)
과세표준 경감 혜택	· 출고량에 따라 20~60% 경감	· (맥주) 직전년도 출고량이 3,000kl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300kl까지 30% 경감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4. 소득계층별 주세부담 분포 및 소득재분배 효과

가. 소득계층별 주세부담 분포

- 우리나라의 일반가계가 부담하는 연간 주세부담액(교육세 포함, 가구외 장소(식당, 유흥주점 등) 소비분 제외)은 가구당 평균 3만 7천원(2014년)
 - 총소득 대비 주세부담률은 평균 0.08%(2014년)로 미미한 편

- 주세부담액(교육세 포함)은 저소득층 → 고소득층일수록 절대세부담액은 증가하지만 총소득 대비 실효세율은 하락
 - 이는 주세부담이 소득역진적임을 의미
 - 절대세부담액(2014년): 1분위 1만 3천원 → 10분위 5만 6천원
 - 총소득 대비 실효세율(2014년): 1분위 0.12% → 5분위 0.09% → 10분위 0.05%

〈표 II -9〉 소득계층별 총소득, 주세부담 부담 분포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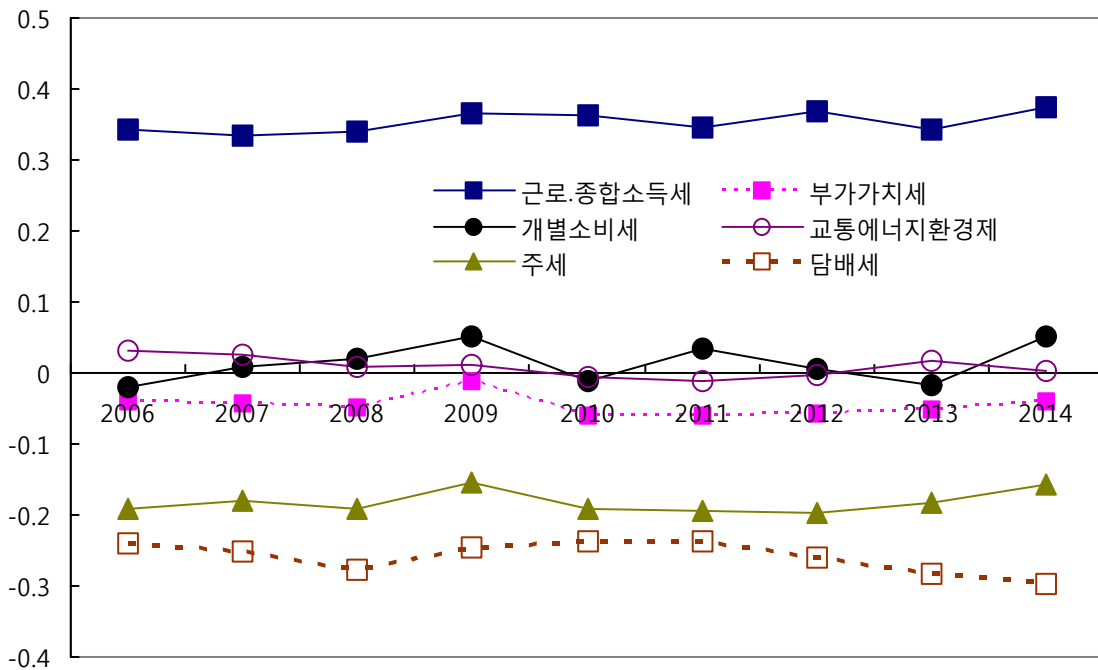
총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6	8,936	15,346	20,569	25,343	30,541	35,992	41,907	49,055	59,083	87,782	37,455
2007	8,847	15,431	21,005	26,502	31,482	36,910	43,034	50,318	61,115	91,315	38,602
2008	8,828	15,128	20,987	26,492	31,920	37,471	43,713	51,535	62,774	94,407	39,324
2009	8,961	15,990	21,597	27,117	32,752	38,412	44,739	52,345	62,567	91,700	39,616
2010	8,494	16,109	22,102	28,080	33,750	39,511	46,349	54,453	65,957	96,099	41,088
2011	9,498	16,917	22,971	29,408	35,660	41,815	48,774	56,905	68,735	99,357	42,999
2012	10,138	17,817	24,746	31,556	37,640	44,112	51,151	59,581	72,782	107,443	45,696
2013	9,862	17,948	25,390	32,814	39,343	45,834	53,163	62,646	75,262	108,076	47,039
2014	10,456	18,383	25,769	32,866	39,752	46,557	54,083	63,508	77,086	112,455	48,088
주세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6	13	17	23	26	31	31	29	30	37	39	28
2007	10	20	21	25	29	29	30	31	37	40	27
2008	13	18	25	30	28	31	31	32	39	46	29
2009	10	16	23	25	31	27	30	36	40	40	28
2010	12	16	25	25	32	32	34	34	35	40	29
2011	11	20	22	33	32	38	37	42	36	40	31
2012	12	21	23	32	38	37	40	38	42	43	33
2013	13	18	30	40	37	38	40	43	46	50	36
2014	13	21	28	38	37	37	46	48	52	56	37
주세/총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6	0.14	0.11	0.11	0.10	0.10	0.08	0.07	0.06	0.06	0.04	0.07
2007	0.11	0.13	0.10	0.09	0.09	0.08	0.07	0.06	0.06	0.04	0.07
2008	0.15	0.12	0.12	0.11	0.09	0.08	0.07	0.06	0.06	0.05	0.07
2009	0.11	0.10	0.11	0.09	0.09	0.07	0.07	0.07	0.06	0.04	0.07
2010	0.14	0.10	0.11	0.09	0.09	0.08	0.07	0.06	0.05	0.04	0.07
2011	0.11	0.12	0.09	0.11	0.09	0.09	0.08	0.07	0.05	0.04	0.07
2012	0.12	0.12	0.09	0.10	0.10	0.08	0.08	0.06	0.06	0.04	0.07
2013	0.13	0.10	0.12	0.12	0.09	0.08	0.07	0.07	0.06	0.05	0.08
2014	0.12	0.11	0.11	0.11	0.09	0.08	0.08	0.08	0.07	0.05	0.08

주: 1. 2006~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저자추정치 기준
 2. 단독가구를 포함한 전국단위의 전 가구 기준

- 주세부담의 역진성은 누진도 지수(Suits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주세 Suits 지수(2006~2014년): -0.2 수준 → 상당히 역진적임을 시사
 - ※ Suits 지수: -1~+1의 값을 가지며, 0이면 세부담 분포가 중립적, (+)이면 누진적, (-)이면 역진적이며, 절댓값이 클수록 누진도 또는 역진도가 더 커짐을 의미

- 주요 소비세의 세목별 Suits 지수값을 비교해보면, 주세와 담배세가 역진성이 매우 크며,
 - 부가가치세는 미소하게 역진적
 -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대체로 미소하게 누진적인 경우가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득중립적인 것으로 추정

[그림 II -2] 주요 세목의 누진도 지수(Suits 지수 기준)



- 주: 1. 성명재(2017C)의 [그림 2]에 주세와 담배세에 대한 Suits 지수 추정치를 추가하여 작성함. 기초 분석자료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함
2. Suits 지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조세부담의 누진도(역진도)를 측정하는 지수로서, 양수 (+)이면 세부담 분포가 누진적, 음수(-)이면 역진적, 0이면 중립적임을 나타냄. 절댓값이 커질수록 누진도(또는 역진도)가 커짐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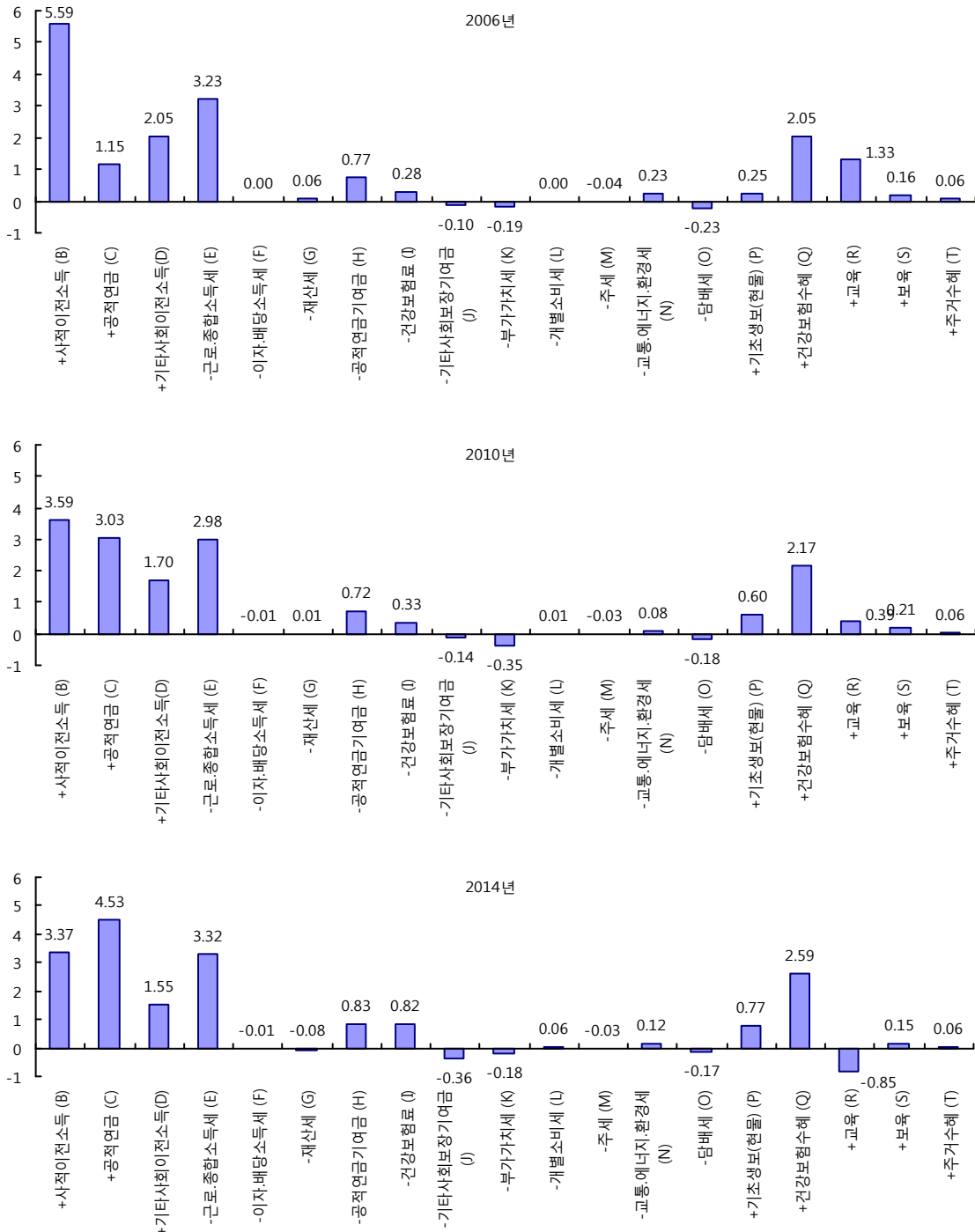
나. 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 성명재(2017B)에 의하면 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의 하락률로 측정)는 2006년 -0.04%, 2010년 -0.03%, 2014년 -0.03%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
 - 같은 기간 담뱃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각각 -0.23%, -0.18%, -0.17%로 주세보다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크기가 상당히 큰 편
 - 담뱃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크기가 더 큰 이유는 담배세의 역진도가 주세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담뱃세의 세수규모가 주세 세수보다 크기 때문

- [그림 II-2]에서 보듯이 Suits 지수로 측정한 주세부담의 역진성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크기가 상당히 작는데, 그 이유는 주세의 세수규모가 작기 때문
 - 누진도(역진도)가 크다는 것은, 단지 세금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의 한계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 소득재분배 효과의 총량이 크다는 것과는 구별됨에 유의 필요

[그림 II -3] 소득구성 항목별 지니계수 변화율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추정결과)

(단위: %)



주: 소득재분배 효과는 지니계수 하락률로 추정함. 따라서 지니계수 하락률이 양수(+)면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며, 하락률이 음수(-)면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냄
자료: 성명재(2017B)의 [그림 9] 인용.

5. 주세 관련 현안 정책과제

- 본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주요 연구주제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상표 용도구분 표시의무제, 주류 판매업 면허제도, 주세율 체계(종가세·종량세)의 적정성 비교의 네 가지로 구성

- (주류 제조면허 관련 사항) 맥주 및 탁주·약주·청주 제조면허가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유통범위, 유통경로, 과세표준이 상이하고 복잡
 - 주종내·주종간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
 - 소규모 업체가 시설규모를 확대하여 일반면허로 전환하려는 경우 유통체계, 과세표준의 경감혜택 등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문턱효과로 작용하여 정상적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사회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음주기호의 다양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류제품의 다양성, 즉 제품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에 대한 소비자후생의 증진에 대한 소비자들의 암묵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주류 공급구조에 대한 규제(면허)제도에 대한 개편·개선이 요청
 - 본래의 정책의도와 무관하게 기존의 주류제조면허 제도는 결과적으로 다분히 암묵적으로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 실현, 대형화를 통한 세원관리의 효율화(즉, 비용절감 등) 등 공급 중심의 정책에 치중한 경향이 짙었으나,
 -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 구조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소비패턴의 고급화·다양화 추세가 급진전되면서 소비의 다양성에 대한 수요가 급증
 - 정보화가 미흡했던 과거에는 대형화가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였으나, 정보화 진전과 수요 다양화를 통한 제품 차별화 수요가 급증한 현 시점에서 새로운 규제(면허)변모가 요구

- (주류 용도구분 표시 관련 사항) 주류의 불법·부정유통 방지를 통해 세원관리 및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중인 주류 용도구분 표시제는 세원양성화·관리 효율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주류 제조·수입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증대시키는 측면도 존재
 - 주류 유통과정에서 탈세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주류 상표에 용도구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 간접적으로 분별 있는 음주문화를 유도, 직접적으로 유통질서 개선을 통한 세원관리(소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의 적정화를 도모
 - 다만 그 과정에서 상표에 용도구분 표시 부착을 의무화함에 따라 주세 납세의무와 별개로 제조·수입업자에게 추가비용(납세협력비용)을 발생
 - 세원관리의 적정화를 위한 비용·편익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주류 유통 관련 세목(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원관리업무 원활화를 위해 운용 중인 규제정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정책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
 -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주세의 부과·징수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 외에도 주류의 소비·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주종에 대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전매제도(주로 증류주에 해당) 시행, 도·소매판매규제(면허 또는 인·허가제도 등) 및 판매장소·판매시간의 제한 등의 사안도 광의의 주세규제의 틀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제규범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의 검토가 필요
- (도매면허 관련 사항) 주류 소비의 외부불경제(음주운전, 음주폭력, 음주 관련 질병 등)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고자 각국은 주류 유통·판매에 대해 각종 규제(예: 주류 제조·유통 관련 면허·전매제도, 주류 판매장소·판매시간 규제 등) 정책을 시행 중
- 우리나라도 주류 유통규제를 통해 분별 있는 주류 소비문화 정착에 노력 중
 - 판매규제(도매면허)가 지역별 권역(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경계를 구분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경쟁촉진 vs. 지역간 과당경쟁 방지 및 시장 안정화” 사이의 갈등과 상충관계가 존재
 - 유통구조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
- (주세율 체계) 주세 과세의 목적이 형평성(역진성 보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음주 관련 사회적 비용의 축소)을 강조하는 체계로 이행 중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강조하여 주세율 체계도 고가주-고세율, 저가주-저세율 중심 구조를 유지해왔으며, 과세체계도 그에 유리한 증가세 체계를 채택·시행 중

- 주세부담의 역진성 보완 기능은 종량세보다 종가세가 유리
- 현행의 종가세율 체계는 종량세보다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효과가 있지만 음주 관련 사회적 비용 저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중론
- 종량세 체계는 종가세 체계에 비해 저가주류 제조자의 가격 대비 실효세부담률을 높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 조성
- 따라서 “과세의 불공평(형평성) 문제” vs.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의 필요성 사이에 상충관계가 발생
- 우리나라의 여건·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과세체계의 선택에 대한 심층적 검토 필요
 - 알코올도수별 주세율 차등화 가능성, 이원화된 교육세율의 단일화 문제 등의 적용 가능성과 국제규범과의 부합성,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특히 서구·미국과 여타 국가(한국, 일본, 칠레 등 포함) 사이에 진행되었던 WTO 주세분쟁의 판결내용은 실질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WTO 판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

Ⅲ. 외국의 주세제도



Ⅲ. 외국의 주세제도

1. 요약

-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9개국은 모든 주류에 대한 주세를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증가세 과세체계에 따라 과세
 -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1949년부터 주세를 종량세로 과세하였으나 1967년 11월 29일 법 개정 에 의하여 주세의 과세체계를 증가세 방식으로 전환함¹⁾
 - 다만 탁주, 양주와 주정의 경우 1971년까지 종량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다 1972년부터 주정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세 과세체제로 개정함²⁾

- 본고에서는 OECD 회원국의 주세 경감세율, OECD 회원국 중 증가세 과세체계를 선택한 국가의 증가세 적용 배경과 주류의 유통 면허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에 참고하고자 함
 - 우선 OECD 회원국의 주세 경감세율 적용 여부를 조사함
 - 또한 현재 증가세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나 과거 증가세를 적용했던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세 과세체계를 선택한 배경을 살펴봄
 - 마지막으로 주요 6개국(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과 일본)의 주류에 대한 유통 면허체계와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특별한 제도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봄

가. OECD 회원국의 주세 과세체계와 경감세율 적용 여부

-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9개국은 모든 주류를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나, 3개국은 모든 주류를 증가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2개국은 특정 주류만 증가세 방식으로 과세함

1) 박명호·문예영,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 에 대한 고찰』 2007.11, p.2.

2) 상동

- 우리나라, 칠레와 멕시코의 3개국은 모든 주류에 대해 종가세 과세체계를 따르고 호주와 터키의 2개국은 특정 주류만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함

□ 소규모 양조업자나 저알코올 맥주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여부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임

-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칠레, 우리나라와 멕시코 중에서 멕시코는 저알코올 맥주에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알코올 함량을 세율에 반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칠레만 높은 도수의 알코올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국은 소규모 독립 양조업자에게 경감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21개국은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은 저알코올 맥주에 경감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14개국은 저알코올 맥주에 경감세율을 적용함

<표 III-1> OECD 국가의 주세정보

국가	종가세 적용 여부 ¹⁾	경감세율 적용 여부 ²⁾		
		소규모 독립 양조업자에 대한 경감세율	저알코올 맥주에 대한 경감세율 ³⁾	알코올 강도에 따른 누진성 ⁴⁾
호주	△(와인만 종가세)	○	○	○
오스트리아	×	○	×	×
벨기에	×	○	×	×
캐나다	×	○	○	○
칠레	○	×	×	×
체코	×	○	×	×
덴마크	×	○	×	×
에스토니아	×	○	×	×
핀란드	×	○	○	×
프랑스	×	×	○	×
독일	×	○	×	×
그리스	×	○	×	×
헝가리	×	○	×	×
아이슬란드	×	×	○	○
아일랜드	×	○	○	×
이스라엘	×	×	×	×
이탈리아	×	×	○	×
일본	×	○	×	×

국가	증가세 적용 여부 ¹⁾	경감세율 적용 여부 ²⁾		
		소규모 독립 양조업자에 대한 경감세율	저알코올 맥주에 대한 경감세율 ³⁾	알코올 강도에 따른 누진성 ⁴⁾
대한민국	○	×	×	×
라트비아	×	○	×	×
룩셈부르크	×	○	×	×
멕시코	○	×	○	○
네덜란드	×	○	○	○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	×	○	○
폴란드	×	○	×	×
포르투갈	×	○	○	○
슬로바키아	×	○	×	×
슬로베니아	×	×	×	×
스페인	×	×	○	○
스웨덴	×	×	×	×
스위스	×	○	○	○
터키	△(맥주만 증가세)	×	○	×
영국	×	○	○	×
미국	×	○	×	×

주: 1) ×는 모든 주류에 종량세로 과세하는 경우, ○는 모든 주류에 증가세로 과세하는 경우, △는 일부는 증가세로 그 외 주류는 종량세로 과세하는 경우를 나타냄

2) 자세한 주세 경감세율은 ‘II. OECD 회원국의 주세 과세체계 및 도입배경’ 중 ‘<표 II-1> OECD 회원국의 주세 경감세율 적용 현황’ 참고

3) 저알코올 맥주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경감세율 적용은 없는 것으로 작성

4) 경감세율이 단일세율인 경우 알코올 강도에 따른 누진성은 없는 것으로 작성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2016, pp.131~135.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증가세 방식의 과세체계를 선택한 배경

증가세와 종량세 과세체계 모두 ‘국민의 건강증진’과 ‘조세수입 확보’의 정책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량세와 증가세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며, 각 국가는 각 과세체계의 장·단점과 주류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국가에 적합한 과세체계를 선택했을 것임

○ 종량세는 세액산출 및 세수입 예측 용이, 제조업자의 제품 품질개선 장려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의 소비 억제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과세형평성 저해와 물가상승분이 세액에 반영되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 증가세는 물가변동부분의 세액 반영과 소득재분배 효과 달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세수입 예측의 어려움, 판매가격 조작을 통한 인위적 과세회피 가능성, 제조업자의 제품 품질개선 저해 측면에서 단점이 있음
- 자료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현재 증가세 과세체계를 운영 중인 국가(멕시코, 일본, 태국과 호주)나 과거 증가세 과세체계를 운영했던 국가의 증가세를 선택하거나 포기한 배경을 조사함
- 멕시코의 경우 주세 도입 당시 멕시코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았으며, 이에 따라 세액에 물가변동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증가세를 도입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멕시코는 증가세 과세방식을 도입할 당시 조세회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세를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으로 과세하였으며 대표적인 증가세 적용국가인 칠레도 멕시코와 동일하게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으로 과세함
 - 일본은 1989년 증가세 과세체계를 포기하고 종량세 과세체제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일본에 고가 주류를 수출하는 EC 등 주변국의 압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EC를 중심으로 일본이 증가세 과세체계에서 수입산 위스키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일본이 수입산 spirit와 국내산 위스키를 차별한다고 반발하여 동일 주류에 동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전반적인 과세체계를 개정하면서 증가세 과세 방식에서 종량세 과세방식으로 변경함
 - 한편, 1989년 부가가치세의 도입이 종량세로의 과세체계 전환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있음
 - 태국은 종량세와 증가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하며, 이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와 고가 주류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짐
 -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에는 종량세 세율을, 고가 주류에는 증가세 세율이 적용됨
 - 특히 알코올 도수가 낮은 주류를 주로 소비하는 젊은층의 주류시장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의 과세체계를 선택했다는 주장도 있음
 - 호주는 와인만 증가세 방식을 적용하는데, 호주는 와인 최대 생산국 중 하나로 와인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주류와 다르게 과세함

- 적절한 와인 섭취가 오히려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증가세를 부과한다는 의견도 있음

〈표 III-2〉 증가세 적용 국가의 정책목적

국가	주세 특징	정책목적이나 배경
멕시코	• 증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주세 도입시점에 증가세 과세방식 채택 • 당시 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가격 상승분이 세액에 반영되도록 한 결과임
일본	• 1989년 증가세에서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량세 과세체계로의 전환은 수입산 위스키 등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던 일본의 과세방식에 주요 위스키 수출국 이던 EC 국가들이 반발한 결과 ‘동일 주류에 동일 세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세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한 결과임 • 1989년 3% 세율의 부가가치세 도입이 주세 과세방식 전환에 영향을 끼쳤다는 견해도 있음
태국	• 증가세와 종량세 방식을 모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와 고가 주류의 소비를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종량세와 증가세 방식을 모두 적용함 • 알코올 도수가 낮은 주류를 선호하는 젊은층의 주류시장 진입 억제를 위해 종량세 과세체계만 선택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음
호주	• 와인만 증가세로 과세하고 그 외 주류는 종량세 과세체계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인 최대 생산국으로서 와인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와인에만 증가세를 적용함 • 주세 부과의 정책목적인 ‘건강 증진’을 고려할 때 건강에 유익한 측면이 있는 와인에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도록 증가세를 적용한다는 견해도 있음 • 와인 제조업자나 와인 주 소비층인 귀족이 정치적으로 입법에 영향을 끼쳤다는 견해도 있음

자료: 저자 작성

다. 주요국의 주류 유통체계

- 조사대상 주요 6개국(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과 일본)은 모두 정부에서 제조 면허와 판매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며, 발급기관은 국가마다 차이를 보임
- 미국은 주류의 과다소비 및 무분별한 소비 방지를 위하여 주류의 유통단계를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규제하고 있음

- 주류의 유통에 대한 규제기관은 연방정부기관으로 식품의약국과 알코올·담배에 대한 관리국(TTB)가 있으며, 주정부기관으로 주류관리국(ABC)과 면허 발급, 면허세 징수 등을 담당하는 BOE(the State Board of Equalization)가 있음
 -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류의 제조 및 판매자는 기본면허를 충족하고, 제조장 시설을 TTB에 등록·승인받아야 함
 - 다만, 맥주의 제조 및 판매자는 기본면허와 시설 등록 대신 TTB에 제조장 시설에 대한 통지서를 제출하면 됨
 - 연방정부 외에 주정부도 각 주의 경제적·사회적 특성에 따라 주류 행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8개 주가 전매제를 채택하고, 나머지 주는 면허제를 채택하여 운영중임
- 캐나다는 주별로 각각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주류를 관리하고 있으며, 앨버타(Alberta)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들이 주류 전반을 직접 관리하고 있음
- 각 주의 주류관리청은 주류판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연방정부는 주류관리법을 근거로 주류의 포장과 함유성분 등을 관리함
 - 주류 소비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Ontario) 주는 모든 주류를 주류관리청에서 판매하며, 주류 및 게임위원회에서는 주류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 면허 등을 관리함
 - 주류 제조를 위해서는 주류제조면허, 제조대행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주류판매 관련 면허에는 주류판매면허, 이동술집면허, 특별임시면허, 주류배달면허 등이 있음
- 호주에서 주류 관련 유통은 식품표준청, 국세청(Australia Tax Office), ACCF(Alcohol Corporate Consultative Forum)에서 분할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류의 제조·저장·이동과 관련하여 주류업자는 단계별 면허가 필요함
- 국세청은 주류 관련 과세행정 및 제조면허, 저장면허, 이동허가 등 주류 면허제도 전반의 행정업무를 수행함
 - 주류의 제조를 위해서 주류 제조업자는 제조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 주류 저장면허는 주류의 저장을 포함한 도매와 소매의 유통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면허임
 - 이동허가는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의 주류의 반입 및 반출을 가능하게 함

- 영국의 일반적인 주류행정은 국세청에서 이루어지며, 원료가 되는 과실에 대해서는 환경식품농촌부, 주류의 안전관리는 식품표준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주류의 제조·생산·저장(주정 제외)과 관련해서는 공인된 창고업자, 등록된 주류업자, 위탁업자 등에게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들은 법에 의해 승인과 면허 및 등록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국세청이 정기적인 조사를 시행함
 - 판매면허 종류에는 점포면허, 인적면허, 클럽점포면허 등이 있음
 - 주류를 공급 및 판매하려는 슈퍼마켓, 펍(pubs), 바(bars), 영화관 등은 점포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 클럽점포면허는 회원제 클럽의 구역에서 점포면허 대신 주류판매를 허가하는 면허임
 - 면허가 발급된 점포에서 지정된 관리인은 인적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 독일은 포도주와 포도주 이외의 주류를 구분하는 이원화된 주류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음
 - 포도주는 연방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가 담당하며, 이 외에는 연방재무부 소속 관세청과 전매청에서 담당함
 - 제조면허 발급 담당부서(주종별로 연방 재무부, 연방 식량농업부)는 과세 납부에 의심이 가지 않는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고도주인 증류주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고려하여 면허조건을 다른 주류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함

- 일본에서는 재무성의 주세국이 주류행정의 총괄적 계획수립을 담당하고, 주류 제조, 판매관리, 세수 확보 등의 주류행정은 국세청이 집행함
 -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품목별로 제조장마다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 또한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판매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판매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 판매면허제는 ① 주류판매업면허 ② 주류판매대리업면허 ③ 주류판매중개업면허로 구분됨

<표 III-3> 주요국의 주류행정 요약

국가	주류행정의 관할부서	면허	
		제조면허	판매면허
미국	연방정부 ¹⁾ , 각 주의 주류통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의 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함 • 각 주별로 발급함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의 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함 • 각 주별로 발급함²⁾
캐나다	각 주의 주류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별로 발급함 • 주류 제조업체는 주종(酒種)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별로 발급함
호주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이 발급함 • 주류·저장면허, 이동면허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별로 발급함
영국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이 발급함 • 주류의 제조·생산·저장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이 주류면허와 관련된 전반적인 검사를 수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에서 발급함 • 점포는 점포면허를 점포의 관리인은 인적면허를 발급함
독일	재무부, 연방 식량농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종(酒種)별로 국세청, 식량농업부, 전매청에서 발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종(酒種)별로 관할부서에서 발급함 • 점포내 주류소비를 대상으로 함
일본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종(酒種)별로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함

주: 1) 연방정부기관으로서 재무부 산하 알코올·담배에 대한 관리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TTB)와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가 담당함
2) 면허제를 도입한 주의 경우 주류통제국(Alcoholic Beverage Control, ABC)에서 발급함

라. 주요국의 주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

- 조사대상 주요국 중에서 영국을 제외한 국가(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과 일본)는 주류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것 외에 주류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는 발견되지 않음
 - 다만, 호주의 경우 이동허가제도 등을 통해 주류 유통을 관리하는 것이 다른 국가와 차이를 보임
- 영국의 경우 주류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4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 관리하고 있음
 - MOU 체결 기관은 주류 저장이나 유통 등에 있어 국세청(HMRC)의 조사와 식별 과정을 거친 라벨링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보장받으나 동시에 강한 법적제약도 부과됨

2. OECD 회원국의 주세 고세체계 및 도입배경

가. OECD 회원국의 주세 과세체계

- 주세 과세방식은 제품가격과 상관없이 제품에 포함된 알코올 함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ad quantum) 과세체계와 제품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ad valorem) 과세체계로 구분됨

-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만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여 주세를 부과하며, 29개국은 종량세 과세체계에 따름³⁾
 - 모든 주류에 종가세를 적용하는 3개국은 우리나라, 멕시코와 칠레임⁴⁾
 - 호주와 터키는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특정 주류에 대해서만 종가세 과세방식으로 과세함
 - 현재 종량세로 과세하는 29개국 중에서 일본과 스웨덴은 과거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전환함

나. OECD 회원국의 주세 경감세율

-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여부에 대하여 OECD의 『Consumption Tax Trends 2016』를 통해 자료를 정리함⁵⁾

- 주세를 경감하는 회원국들은 맥주의 연간 생산량에 따라 소규모 맥주제조업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OECD 회원국 중 대부분 국가가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에게 주세율을 경감해 주고 있음
 - 경감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칠레,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등이 있음

3)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2016, p.131~p.132.

4) 상동

5)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의 맥주에 대한 소비세(excise rates)를 우리나라의 주세로 번역함

□ OECD 보고서상 세율은 무수알코올(Absolute alcohol) 헥토리터(100리터)당 세금을 의미함

○ 알코올함량은 일반적으로 100리터당 순수 에탄올부피(alcohol by volume: abv)로 표시되며, 알코올당 세금을 산정하지만, 폴란드,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는 주세를 산출함에 있어 플라토(plato)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데, 비교를 위해 이를 알코올 도수로 변환함

- 플라토(plato)는 맥즙의 농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플라토를 abv로 환산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세법상 1% abv는 2.5플라토와 같으므로, 플라토에 2.5배수를 적용하여 abv와 비교 가능하도록 환산함

<표 III-4> 외국의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세율 적용 현황

	100리터당 abv에 따른 일반세율		소규모 독립 양조업자에 적용되는 저세율			저알코올맥주 (2.8% abv미만)에 대한 100리터당 주세		VAT %	알코올 강도에 따른 소비세 누진성 여부
	자국 통화	USD	연간 생산(hl)	자국 통화	USD	자국 통화	USD		
호주	각주 참조 ¹⁾							10.0	예
오스트리아	5.00	5.55	<12,500	3.00	3.33	-	-	20.0	아니오
			<25,000	3.50	3.88				
			<37,500	4.00	4.44				
			≤50,000	4.50	4.99				
벨기에	5.01	5.56	≤12,500	4.36	4.84	-	-	21.0	아니오
			≤25,000	4.50	4.99				
			≤50,000	4.65	5.16				
			≤75,000	4.79	5.32				
			≤200,000	4.94	5.48				
캐나다	각주 참조 ²⁾							5.0/13.0/ 14.0/15.0	예
칠레	각주 참조 ³⁾							19.0	아니오
체코	80.00	3.25	≤10,000	40.00	1.63	-	-	21.0	아니오
			≤50,000	48.00	1.95				
			≤100,000	56.00	2.28				
			≤150,000	64.00	2.60				
			≤200,000	72.00	2.93				
덴마크	56.02	8.33	≤3,700	각주참조 ⁴⁾		0.00	0.00	25.0	아니오
			≤20,000						
			≤200,000						
에스토니아	8.30	9.21	≤3,000	4.15	4.61	-	-	20.0	아니오
핀란드 ⁵⁾	32.05	35.57	≤5,000	16.03	17.79	8.00	8.88	24.0	아니오
			≤30,000	22.44	24.90				
			≤55,000	25.64	28.46				
			≤100,000	28.85	32.01				

	100리터당 abv에 따른 일반세율		소규모 독립 양조업자에 적용되는 저세율			저알코올맥주 (2.8% abv미만)에 대한 100리터당 주세		VAT %	알코올 강도에 따른 소비세 누진성 여부
	자국 통화	USD	연간 생산(hl)	자국 통화	USD	자국 통화	USD		
프랑스	7.41	8.22	≤200,000	7.41	8.22	3.70	4.11	20.0	아니오
독일	1.97	2.19	≤5,000	1.10	1.22	-	-	19.0	아니오
			≤10,000	1.32	1.47				
			≤20,000	1.54	1.71				
			≤40,000	1.65	1.83				
그리스	6.50	7.21	≤200,000	3.25	3.61	-	-	23.0	아니오
헝가리	1,620.00	5.80	≤8,000	810.00	2.90	-	-	27.0	아니오
아이슬란드	각주 참조 ⁶⁾							11.0	예
아일랜드	22.55	25.03	각주 참조 ⁷⁾					23.0	아니오
이스라엘	231.00	59.43	-			각주 참조 ⁸⁾		17.0	아니오
이탈리아	7.60	8.44	-			각주 참조 ⁹⁾		22.0	아니오
일본	각주 참조 ¹⁰⁾		-					8.0	아니오
대한민국	각주 참조 ¹¹⁾		-			각주 참조 ¹¹⁾		10.0	아니오
라트비아	3.80	4.22	≤10,000	1.90	2.11			21.0	아니오
룩셈부르크	1.98	2.20	≤50,000	0.98	1.09	-	-	17.0	아니오
			≤200,000	1.12	1.24	-	-		
멕시코	26.5% ¹²⁾		-			-	-	16.0	예
네덜란드	각주 참조 ¹³⁾		-			-	-	21.0	예
뉴질랜드	27.20	18.97	-			각주 참조 ¹⁴⁾		15.0	아니오
노르웨이	각주 참조 ¹⁵⁾		-			-	-	25.0	예
폴란드	19.48	5.17	각주 참조 ¹⁶⁾			-	-	23.0	아니오
포르투갈	각주 참조 ¹⁷⁾							23.0	예
슬로바키아	3.59	3.98	≤200,000	2.65	2.94	-	-	20.0	아니오
슬로베니아	12.10	13.43	-			-	-	22.0	아니오
스페인	각주 참조 ¹⁸⁾		-			각주 참조 ¹⁸⁾		21.0	예
스웨덴	194.00	23.02	-			-		25.0	아니오
스위스	각주 참조 ¹⁹⁾		-			각주 참조 ¹⁹⁾		8.0	예
터키	0.63	-	-			-		18.0	아니오
영국	18.37	28.09	각주 참조 ²⁰⁾			8.10	12.39	20.0	아니오
미국	각주 참조 ²¹⁾							-	아니오

주: 1) 호주: 48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개별 용기 - 알코올 함량≤3%: 알코올 리터당 47.85호주달러/알코올 함량>3%: 알코올 리터당 47.85호주달러; 48리터를 초과하는 개별 용기 - 알코올 함량≤3%: 알코올 리터당 8.21호주달러/3% <알코올 함량≤3.5%: 25.73호주달러, 3.5% <알코올 함량: 33.70호주달러. 알코올 함량이 1.15%를 초과하는 분부터 과세되기 때문에, 알코올 함량이 1.15%를 초과하지 않으면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이러한 과세는 201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며, 매년 2월과 8월 물가지수에 연동됨.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맥주 양조업체는 주세의 6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3만호주달러임(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Excise-and-excise-equivalent-goods/In-detail/Brewery-refunds/>)

2) 캐나다: 주세는 생산된 제품의 100리터당 부과됨(알코올 함량이 아님). 지방정부는 통상적으로 연방세보다 더 큰 추가세를 부과함. 연방세는 1)2.5%≤알코올 함량: 100리터당 31.22캐나다달러, 2)1.2%≤알코올 함량 <2.5%: 100리터당 15.61캐나다달러, 3)알코올 함량 <1.2%: 100리터당 2.591캐나다달러가 부과되나, 일정 생산량까지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됨

- 3) 칠레: 알코올음료의 판매는 19%의 부가가치세와 부가세(surtax)가 부과됨. 맥주에 대한 주세는 20.6%이며 알코올 함량에 따라 부과하지 않고 판매가격(부가가치세 제외금액)에 주세가 부과됨
 - 4) 덴마크: 독립적인 소규모 양조업자에게 생산량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2.8% 미만 알코올 함량의 맥주에 대해 주세가 부과됨. 연간생산량이 3,700hl 이하인 경우: DKK 77.08/hl 연간생산량이 3,700hl 초과 20,000hl(X) 이하인 경우: DKK 259.939/(X + 6.83) 적용됨
 - 5) 핀란드: 알코올 함량이 0.5% 미만에 대해 비과세
 - 6) 아이슬란드: 리터당 알코올 함량 % abv에서 2.25센티리터를 차감 후 센티리터당 ISK112 과세. 즉, 2.25% abv 미만은 비과세됨
 - 7) 아일랜드: 연간 3만리터까지 소규모 독립 양조업자에게 주세의 50%를 환급함. 저알코올 맥주에 대해서는 비과세(알코올 함량≤1.2% abv) 또는 11.27유로(1.2% abv <알코올 함량≤2.8% abv)로 과세됨
 - 8) 이스라엘: 100리터당 ILS231로 과세되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변경됨. 2%미만(재활용 병이 사용되면 3.8%)의 알코올에 대해서는 비과세됨
 - 9) 이탈리아: 알코올 함량 0.5% 미만에 대해 비과세됨
 - 10) 일본: 제품 100리터당 22천엔으로 부과. 13,000hl의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는 면허 최초 5년간(임시조치) 2,000hl에 대해 hl당 187백만엔의 경감세율 적용
 - 11) 대한민국: 주세는 출고가의 72%로 과세되며, 주세의 30%가 교육세로 부과됨
 - 12) 멕시코: 가격에 따라 과세되는데, 14도루삭(Gay-Lussac:GL)까지 26.5%, 14도GL에서 20도GL사이 30%, 20도GL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53%가 적용됨
 - 13) 네덜란드: 100리터당 알코올 함량≤7디그리플라토: 8.83유로, 7디그리플라토 <알코올 함량≤11디그리플라토: 28.49유로, 11디그리플라토 <알코올 함량 <15디그리플라토: 37.96유로, 15디그리플라토 이상≤알코올함량: 47.48유로. 소규모 양조업자에게는 2천만리터까지 알코올 함량에 따라 8.83유로에서 43.92유로까지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14) 뉴질랜드: 2.5% abv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 27.870뉴질랜드달러, 1.15-2.5% abv에 대해 41.797뉴질랜드달러, 1.15% abv미만은 비과세됨
 - 15) 노르웨이: 생산제품 100리터당 a)0.0-0.7% abv: 비과세, b)0.7-2.7% abv: 327크로네, c)2.7-3.7% abv: 1,229크로네, d)3.7-4.7% abv 2,129크로네로 과세되며, 4.7%이상의 맥주에 대해서는 알코올 함량당 476크로네로 과세됨
 - 16) 폴란드: 소규모 양조업자에 대해 2백만리터 이하의 판매시 100리터당 생산량에 따라 30즐로티에서 9즐로티까지 공제허용하고 있으나, 공제금액은 기본세율 적용시 과세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17) 포르투갈: 100리터당 a)0.5-1.2% abv는 7.98로, b)1.2% abv부터 7디그리플라토까지 10.00유로, c)1.2% abv 이상 7-11디그리플라토까지 15.95유로, d)1.2% abv 이상 11-13디그리플라토까지 20.0유로, e)1.2% abv 이상 13-15디그리플라토까지 23.99유로, f)1.2% abv 이상 15디그리플라토를 초과시 28.06유로 적용하며, 포르투갈은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연간생산량 200,000hl)에 대하여 기본 세율의 50%만 적용
 - 18) 스페인: 100리터당 a)≤1.2% abv: 비과세, b)1.2-2.8% abv: 2.75유로, c)2.8% abv-11디그리플라토 초과: 7.48유로, d)11-15디그리플라토: 9.96유로, e)15-19디그리플라토: 13.56유로, f)19디그리플라토 < : 디그리플라토당 0.91유로로 과세됨
 - 19) 스위스: 100리터당 저알코올맥주(10.0디그리플라토까지): 16.88프랑, 일반적 및 특수 맥주(10.1-14디그리플라토): 25.32프랑, 독주(14.1디그리플라토 초과): 33.76프랑으로 과세되며, 소규모 양조업자(55,000hl)에게 40%까지 저세율 부과(한도 15,000hl)
 - 20) 영국: a)1.2% abv미만은 비과세, b)1.3-2.8% abv에 대해 £8.42의 저세율 부과, c)7.5% abv를 초과하는 경우 £5.69가 일반세율에 추가 부과되며,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에게는 생산량에 따라 일부 경감이 이루어짐
 - 21) 미국: 가중평균 연방 및 지방 주세율은 100리터당 22달러임
- 자료: 세법연구센터, 『조세동향』 2015년 제1호, pp. 44-46 참조;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p. 131~135

□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본 조사에서는 연방정부의 주세율만 조사함

- 연방정부 주세율의 일반세율은 \$18/barrel(1barrel=1.1735hl)임
- 연간 맥주생산량이 200만배럴 이하의 소규모 맥주제조업자는 경감세율을 적용함
 - 60,000배럴 이하: \$7/barrel
 - 60,000배럴 초과: \$18/barrel

□ 영국은 연간 맥주 생산량이 60,000hl 이하인 경우를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함

<표 III-5> 영국의 맥주 주세율

(단위: £, Excise duty/hl/alc)

일반세율	연간 200,000hl 이하 생산시	
	생산량	세율
19.08	~5,000hl	일반세율의 50%
	5,000hl~30,000hl	(연간생산량-2,500hl)/연간생산량×일반세율
	30,000~60,000hl	[연간생산량-2,500hl-(30,000hl를 초과 하는 연간생산량의 8.33%)]/연간생산량×일반세율

자료: 영국 국세청(<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excise-duty-alcohol-duty/alcohol-duty-rates-from-24-march-2014>)

□ 캐나다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본 조사에서는 연방정부의 주세율만 조사함

- 일반세율과 경감세율 모두 에틸알코올도수의 함유량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에 대해서 연간 생산량 기준을 75,000hl로 설정하고 있음

<표 III-6> 캐나다 연방정부의 맥주에 대한 주세율

(단위: 캐나다달러)

구 분		에틸알코올 도수	세율 (알코올도수 기준)
일반세율 (75,000hl 초과생산자)		에틸알코올 도수 2.5%이상	\$31.22/hl
		에틸알코올 도수 1.2%이상 ~ 2.5%미만	\$15.61/hl
		에틸알코올 도수 1.2%미만	\$2.591/hl
소규모 맥주 양조업 자	연간 생산량 2,000hl 미만	에틸알코올 도수 2.5%이상	\$3.122/hl
		에틸알코올 도수 1.2%이상 ~ 2.5%미만	\$1.561/hl
		에틸알코올 도수 1.2%미만	\$0.2591/hl
	연간 생산량 2,000hl~5,000hl 미만	에틸알코올 도수 2.5%이상	\$6.244/hl
		에틸알코올 도수 1.2%이상 ~ 2.5%미만	\$3.122/hl
		에틸알코올 도수 1.2%미만	\$0.5182/hl
	연간 생산량 5,000hl~15,000hl 미만	에틸알코올 도수 2.5%이상	\$12.488/hl
		에틸알코올 도수 1.2%이상 ~ 2.5%미만	\$6.244/hl
		에틸알코올 도수 1.2%미만	\$1.0364/hl
	연간 생산량 15,000hl~50,000hl 미만	에틸알코올 도수 2.5%이상	\$21.854/hl
		에틸알코올 도수 1.2%이상 ~ 2.5%미만	\$10.927/hl
		에틸알코올 도수 1.2%미만	\$1.8137/hl
	연간 생산량 50,000hl~75,000hl 미만	에틸알코올 도수 2.5%이상	\$26.537/hl
		에틸알코올 도수 1.2%이상 ~ 2.5%미만	\$13.269/hl
		에틸알코올 도수 1.2%미만	\$2.2024/hl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133

- 네덜란드의 경우 헥토리터당 Plato에 따른 것이며, 일반세율과 경감세율 모두 당분(Plato)의 함유량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에 대해서 연간 생산량 기준을 200,000hl로 설정하고 있음
 -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가 생산한 알코올 함량 0.5%인 맥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율도 6%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표 III-7> 네덜란드 맥주 주세율

(단위: EUR, Excise duty/hl/Plato)

Plato Degree	일반세율	경감세율 (연간 200,000hl 이하 생산)
7 degree Plato 미만	8.83	8.83
7~11 degree Plato	28.49	26.35
11~15 degree Plato	37.96	35.11
15 degree Plato	47.48	43.92

주: 당분(A unit measuring sugar content)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2016

- 독일은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에게 연간 40,000헥토리터를 한도로 생산량에 따라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연간생산량이 5,000hl 이하인 경우: EUR1.10
 - 연간생산량이 10,000hl 이하인 경우: EUR1.32
 - 연간생산량이 20,000hl 이하인 경우: EUR1.54
 - 연간생산량이 40,000hl 이하인 경우: EUR1.65

- 폴란드는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제(allowances)방식으로 주세를 경감해주고 있으며, 공제금액은 기본세율 적용시 과세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간생산량이 20,000hl 이하인 경우: PLN⁶⁾ 30/hl/plato
 - 연간생산량이 70,000hl 이하인 경우: PLN 15/hl/plato
 - 연간생산량이 150,000hl 이하인 경우: PLN 12/hl/plato
 - 연간생산량이 200,000hl 이하인 경우: PLN 9/hl/plato
 - 1% alcohol = 2.5 degrees Plato

-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가 납부한 주세를 저세율인 아닌 환급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호주, 아일랜드가 있음
 - 호주는 독립적인 양조업자가 직접 판매한 맥주의 경우 납부된 주세의 60%를 매 과세연도에 30,000호주달러를 한도로 환급됨

6) 폴란드 화폐단위-Polish Zloty(PLN)

- 아일랜드는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연간생산량 30,000헥토리터)에 대하여 주세의 50%를 환급해주고 있음

다. 주세 과세방법별 정책목적

- 각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목적 및 주류시장 특성에 따라 최적의 주세 과세방법은 다를 수 있음
 -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종량세 방식으로 주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각 주세 과세방법별로 장단점이 상이하기 때문임
- 따라서 본장에서는 주세 과세방법인 종량세와 종가세의 장·단점을 제도운영 및 세수변동 측면, 소득재분배 측면, 제품품질 개선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봄⁷⁾
- 종량세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과세하므로 세액산출이 용이하며, 제품의 가격변동과 상관없이 일정한 세액이 부과되어 세수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반면 종가세는 제품가격에 따라 과세하므로 인위적인 과세회피 발생 및 세수입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수입업자가 주류 수입 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을 낮게 조정하는 등 과세회피가 발생할 동기가 존재함
 - 종가세는 물가인상 시 세수입도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가격변동에 따라 세수도 같이 변동하여 종량세보다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종가세의 경우 가격이 높은 주류를 구입할수록 세부담이 높아지므로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일 수 있으나, 종량세의 경우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에 비해 낮은 세금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정책목적은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두는 경우 종가세가 종량세보다 더 효율적인 과세방법이 될 수 있음
 - 이는 고소득자일수록 가격이 비싼 제품을 구입하려는 동기가 더 크기 때문임

7)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p 121~122, Somchai Richupan, “Alcohol products taxation: International Experiences and selected practices in asia”;; Siam Development Institute, 2005.2.

○ 그렇지만 주류의 경우 과세체계가 아닌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따라 세부담이 변동되는 부분이 크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소득 재분배는 납부세액이 소득과 연관된 누진세율체계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⁸⁾

□ 마지막으로 종량세는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여 제품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납부세액은 동일하므로 제조업자의 제품 품질향상 유인을 제공하는 반면 증가세는 제품 품질 개선비용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세부담이 높아지므로 제조업자의 제품 품질 개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이외에 많은 국가에서 주류 소비성향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주류세제를 운영해 온 것으로 미루어볼 때 알코올 함량이 높은 주류의 소비를 억제해 알코올 과도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종량세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⁹⁾

○ 예를 들어, 영국에서 ‘진 광풍(gin craze)’이 일어났을 때 영국은 증류주에 대한 소비세 과세 강화를 통해 진(gin) 소비에서 맥주 소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대부분 국가가 종량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종량세가 우월한 제도라서가 아니라 종량세는 제조업자가 주류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실질적 세부담을 낮춰주므로 증가세보다 유리하다는 점에서 도입되었다는 의견도 있음¹⁰⁾

<표 III-8> 종량세 및 증가세의 장·단점

	종량세	증가세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산출 및 세액수입 예측이 용이 • 제품 품질개선 장려 • 알코올 함량이 높은 주류의 소비억제 • 물가상승 시 납세자의 실질적 세부담은 낮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부분이 세액에 반영됨 • 가격이 높은 주류에 높은 금액이 과세되어 소득재분배 효과를 어느정도 달성¹⁾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이 비싼 주류를 구입해도 알코올 함량이 같다면 동일하게 과세되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동일하게 과세됨 • 물가상승부분이 세액에 반영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수입 예측의 어려움 • 판매가격을 조작하여 인위적인 과세회피 가능 • 제품 품질개선 저해

주: 1) 주로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가격의 제품을 산다는 가정하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한다고 보는 것이며,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8)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122.

9) Foundation for Alcohol Research & Education, “Historical and cross-cultural changes in taxation of different alcoholic beverages”, p.6, 2015.7.

10) 박종구, 「주세제도의 합리화: 증가세 체계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주류산업협회, 『주류공업』, 제17권 제2호(Vol.17 No.2), 1997.

라. 종가세 적용 국가 사례

- 종량세나 종가세 과세체계와 무관하게 주세의 정책목적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조세수입 확보’로 동일함
- 종가세를 선택한 국가의 경우 종량세를 선택한 국가와 구별되는 세원관리 목적이거나 역사적 배경이 존재하는지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종가세 적용 국가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자료 확보가 가능한 국가(멕시코, 일본, 태국, 호주)를 중심으로 종가세를 선택하거나 포기한 배경을 간략히 소개함
 - 소개할 국가는 종가세에서 종량세 과세방식으로 전환한 일본,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적용하여 과세하는 태국, 와인에 대해서만 종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주류는 종량세를 적용하는 호주와 대표적인 종가세 국가 중 하나인 멕시코임

1) 멕시코¹¹⁾

- 멕시코 연방정부는 1980년 소비세를 종가세 방식으로 도입하고, 전통적으로 주세뿐만 아니라 가솔린, 담배, 전화서비스 등에 대한 모든 소비세를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함
- 멕시코 정부가 종가세 방식으로 소비세를 과세한 이유를 1980년대 멕시코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에서 찾을 수 있음
 - 현재 멕시코의 인플레이션율은 낮으며, 이 때문에 OECD 국가에서 도입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실제 종가세 방식에서 변화하여 오일 탄화수소(hydrocarbon oil)의 경우 용량을 기준으로, 담배의 경우 부분적으로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11) 멕시코 관련 정보는 동일 출처로부터 얻음. Giugale et al., 『Mexico, a Comprehensive Development Agenda for the New Era』 pp.190~191. 2001.1

- 또한 과거 멕시코는 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으로 과세하였음¹²⁾
 - 멕시코 정부는 일부 기업이 수입이나 제조 이후 가격을 인상하여 수입이나 제조시점에 과세할 경우 조세회피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OECD 국가와 다르게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으로 소비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주세는 수입이나 제조 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종량세를 적용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나 과거 이러한 배경 때문에 증가세 과세방식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음
 - 주세는 다수의 소규모 생산자와 도소매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폐지함

2) 터키

- 터키는 2002년 8월 1일부터 특별소비세 체계로 개편하고 특별소비세의 하나로 주세를 규정함¹³⁾
 - 기존 16개 세목으로 구분되었던 소비세 항목을 특별소비세로 개편한 것임¹⁴⁾
- 터키는 주세를 증가세 형태로 과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맥주를 제외하면 증가세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각 주류별로 고정된 금액의 세액이 부과됨¹⁵⁾

3) 일본

- 일본의 주세는 1953년에 도입¹⁶⁾되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세율을 포함한 개편작업을 진행함¹⁷⁾

12) 주세를 증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칠레의 경우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함

13) IBFD > Turkey Country Analysis > Corporate Taxation - 14. Miscellaneous Indirect Taxes

14) IBFD > Turkey Country Analysis > Corporate Taxation - 14. Miscellaneous Indirect Taxes

15) IBFD, "Turkey special consumption tax rates on beverages and tobacco products published", 2016.12.2., (검색일자: 2017. 3. 30)

16) 현행과 유사한 체계를 갖춘 주세가 도입된 시점임

17) Omura, 「The Effects of Tax Policy on Alcoholic Beverage Trends and Alcohol Demand in Japan」,

- 일본은 고가 주류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종가세 형태로 과세하였으나 1989년 종량세로 변경함¹⁸⁾
 - 1990년 일본이 소주의 세율보다 위스키에 적용되는 종량 세율을 인상하면서 EC와 일본 사이에 무역분쟁이 발생하였고, WTO의 중재 결과 일본이 소주와 위스키에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위스키의 세율을 인하하고 소주의 세율을 인상함¹⁹⁾
 - 당시 일본은 소주는 낮은 등급의 증류주이며 위스키는 높은 등급의 증류주이므로 차등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EC는 증류주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²⁰⁾
 - 일본은 2000년대 자국 내 심각한 재정상황과 주류의 생산과 소비 동향을 고려한 적절한 세부담 확보를 목표로 주세의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음²¹⁾
- 주류세 개편 중 가장 중요한 변화인 1989년 종가세 과세방식에서 종량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은 EC와 같이 일본에 고가 주류를 수출하는 주변국의 압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²²⁾
- 개편 전 종가세 과세방식하에서 특정 사케(150% 세율 적용), 위스키와 브랜드(220% 세율 적용)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특히 수입산 위스키에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주요 위스키 수출지역인 EC를 중심으로 일본이 수입 spirit와 국내산 위스키를 차별한다고 반발함²³⁾
 - 당시 주류의 소매가 대비 주류 세율 비교 결과 국내산 사케나 spirit의 세율은 26.9%와 14.1%인 반면 수입 위스키의 세율은 40.1%로 더 높았음²⁴⁾
 - 이렇게 차등 세율이 적용된 이유는 일본이 주류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차등적으로 세율을 부과하였기 때문임
 - 1989년 일본은 3%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참고한 연구에 따르면 종가세 방식인 부가가치세의 도입이 이러한 주류 과세방식의 변화와 관련되

2014.4.9, p.3.

18) Omura, 「The Effects of Tax Policy on Alcoholic Beverage Trends and Alcohol Demand in Japan」, 2014.4.9, pp.3-4.

19) Ishi, 『The Japanese Tax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258.

20) Ishi, 『The Japanese Tax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258.

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번역자료, 『일본 세제의 새로운 구축을 위한 기본방침』, 2002.6, p.32.

22) Ishi, 『The Japanese Tax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257.

23) Ishi, 『The Japanese Tax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257.

24) Ishi, 『The Japanese Tax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257.

어 있다고 밝힘²⁵⁾

-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고가 주류인 사케, 위스키와 와인의 세부담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²⁶⁾
- 기존 사케, 와인과 위스키를 여러 분류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였던 방식을 폐지하고 종량세로 변경하면서 주류 분류를 간소화하고 동일 주류에 동일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함²⁷⁾

□ 가장 최근 개편작업은 2005년에 있었으며²⁸⁾, 개편을 통해 주류 간 세율격차를 축소하고 주류의 분류 간소화를 도모함²⁹⁾

- 개정 전 주류를 10종류 11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 종류구분을 폐지하고 17품목으로 구분함³⁰⁾
- 이는 세제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관점에서 주류를 간소화하고 세부담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주세를 개정하려는 노력의 결과임³¹⁾
- “같은 종류 같은 등급 상품에는 동일한 세부담”을 목표로 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함³²⁾

4) 태국

□ OECD 국가는 아니지만 태국은 주류를 종가세로 과세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나, 다른 종가세 국가와 다르게 주류 성분의 기능(종량세 측면)과 가격의 기능(종가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과세하는 “Two-Chosen-One” 방식을 적용함³³⁾

25) Omura, 「The Effects of Tax Policy on Alcoholic Beverage Trends and Alcohol Demand in Japan」, 2014.4.9, p.4.

26) Omura, 「The Effects of Tax Policy on Alcoholic Beverage Trends and Alcohol Demand in Japan」, 2014.4.9, pp.3~4.

27) Omura, 「The Effects of Tax Policy on Alcoholic Beverage Trends and Alcohol Demand in Japan」, 2014.4.9, p.4.

28) 박명호·문영예(2007) pp.70~73

29) 박명호·문영예(2007) pp.70~73

30) 박명호·문영예(2007) pp.70~73

3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번역자료, 『일본 세제의 새로운 구축을 위한 기본방침』, 2002.6, p.32, 및 Omura, 「The Effects of Tax Policy on Alcoholic Beverage Trends and Alcohol Demand in Japan」, 2014.4.9, p.4.

3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번역자료, 『일본 세제의 새로운 구축을 위한 기본방침』, 2002.6, p.32.

33) Sornpaisarn et al., 「Alcohol taxation policy in Thailand: implications for other low-to middle-income countries」, 2011.10.3, p.1372.

- Two-Chosen-One 방식이란 주류에 대한 소비가 많은 사람과 잠재적인 주류 소비층이 선호하는 주류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임³⁴⁾
 - 태국의 Two-Chosen-One 방식은 1950년부터 도입됨³⁵⁾
- Two-Chosen-One 시스템 하에서 고가 주류의 경우 종가세 방식으로 세액이 결정되며, 저가 주류의 경우 종량세 방식으로 세액이 결정됨³⁶⁾
- 정부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 소비 억제를 위하여 종량세 세율을 조정하고, 고가 주류에 대한 소비 억제를 위하여 종가세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종량세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적에 보다 적합하다고 주장함³⁷⁾
- Sornpaisarn et al.(2011)에 따르면 태국 젊은층의 경우 알코올 도수가 낮은 주류를 많이 소비하는데, 정부는 젊은층의 주류시장 진입 억제를 주류세 부과 정책목적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어 알코올 도수가 낮은 주류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주장함³⁸⁾
-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세를 부과하는 정책 목적은 주류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고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줄이는 것이나, 저소득국이나 중진국에서는 이러한 정책 목적 외에도 주류 소비에 대한 참여를 억제하고 높은 금주율을 유지하려는 정책 목적도 고려함³⁹⁾
 -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전체 인구 중 음주 인구의 비중이 중진국이나 저소득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진국은 한 사람이 섭취하는 알코올 도수를 낮추는 것을 주된 정책목적으로 고려하므로 종량세를 보다 선호한다는 견해가 있음⁴⁰⁾

34) 상동

35) Sornpaisarn et al., 「Alcohol taxation policy in Thailand: implications for other low-to middle-income countries」, 2011.10.3, p.1375.

36) 상동

37) 상동

38) Sornpaisarn et al., 「Alcohol taxation policy in Thailand: implications for other low-to middle-income countries」, 2011.10.3, p.1374.

39) Sornpaisarn et al., 「Alcohol taxation policy in Thailand: implications for other low-to middle-income countries」, 2011.10.3, pp.1372~1374.

40) Sornpaisarn et al., 「Alcohol taxation policy in Thailand: implications for other low-to middle-income countries」, 2011.10.3, p.1374.

- 태국의 주세 세율은 출고가격의 일정비율을 곱한 종가세 방식의 세액과 리터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종량세 방식의 세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됨⁴¹⁾
- 세율은 주류를 양조주(brewed beverage)와 증류주(distilled beverage)로 구분한 후 주류 분류별로 도수에 따라 구분하고, 도수가 낮은 경우는 종량세와 종가세 세율을 모두 규정하고 도수가 높은 경우 종량세 과세방식의 세율만 규정함⁴²⁾
 - 자세한 세율은 아래 표를 참조

〈표 III-9〉 태국의 주세 세율

구분	분류	도수	그밖의 기준	세율	
				종가 (%)	종량 (알코올 리터당 바트)
양조주	맥주	7도 이하	-	48	155바트/순수알코올 리터 또는 8바트/고급알코올 리터
		7도 초과	-	-	55바트/순수알코올 리터 또는 8바트/고급알코올 리터 + 3바트/리터 (7도 초과부터)
	와인 및 발포성 와인	15도 이하	600바트 이하	-	1,000바트/순수알코올 리터 또는 225바트/고급알코올 리터
		15도 이하	600바트 초과	36	1,000바트/순수알코올 리터
		15도 초과	-	-	1,000바트/순수알코올 리터+ 3바트/리터 (15도 초과부터)
	그 밖의 양조주	15도 이하	-	5	70바트/순수알코올 리터 또는 10바트/고급알코올 리터
		15도 초과	-	-	70바트/순수알코올 리터 또는 10바트/고급알코올 리터+ 3바트/리터 (15도 초과부터)

41) Sornpaisarn et al., 「Alcohol taxation policy in Thailand: implications for other low-to middle-income countries」, 2011.10.3, p.1375.

42) The Excise Department(กรมสรรพสามิต 태국 소비세청), <http://interweb.excise.go.th/contents.php?lang=en&m=4>(검색일자: 2017. 3. 30)

구분	분류	도수	그밖의 기준	세율	
				증가 (%)	종량 (알코올 리터당 바트)
증류주	White Spirit (색이나 첨가물 없는 경우)	40도 이하	-	4	145바트/순수알코올 리터 또는 40바트/고급알코올 리터
		40도 초과	-	-	145바트/순수알코올 리터 또는 40바트/고급알코올 리터+ 3바트/리터(40도 초과부터)
	에탄올(80도 초과 Spirit)	-	지정 산업용	-	1바트/고급알코올 리터 (순수알코올은 면세)
		-	지정 의약, 과학용	-	0.05바트/고급알코올 리터 (순수알코올은 면세)
		-	기타	-	6바트/순수알코올(고급알코올은 면세)
	그 밖의 Spirit	45도 이하	-	25	250바트/순수알코올 리터 또는 50바트/고급알코올 리터
		45도 초과	-	-	250바트/순수알코올 리터 또는 50바트/고급알코올 리터+ 3바트/리터(45도 초과부터)

주: 1. 세액은 출고가격에 증가세율(%)를 곱한 금액과 알코올 리터에 종량세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됨

2. 증류주 중 에탄올은 장관이 지정한 산업, 의약이나 과학용으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음

자료: The Excise Department, <http://interweb.excise.go.th/contents.php?lang=en&m=4>(검색일자: 2017. 3. 30)

5) 호주

□ 호주는 맥주, 알코올 음료에는 종량세 과세체계를 적용하나 와인의 경우 증가세 형태의 ‘와인세(Wine Equalisation Tax(WET))’를 부과하고 있음⁴³⁾

○ 와인세는 최종 도매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주류 판매 시 부과되며 부가가치세(GST)를 제외한 최종 와인 판매가격에 29%의 세율로 과세함

- 수입업자에게도 와인세가 부과되며 수입시 와인세(WET)를 납부함

43)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Wine-equalisation-tax/>

- 와인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알코올 도수가 1.15% 이상인 주류로 포도 와인, 과일 와인, 야채 와인, 사과주(cider), 배주(perry), 벌꿀주(mead), 사케(sake)가 포함됨⁴⁴⁾
- 호주에서 다른 주류와 달리 와인에 증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증가세가 종량세에 비해 와인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기 때문임⁴⁵⁾
 - 호주는 프랑스, 이탈리아와 더불어 최대 와인 생산국으로 와인 제조업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대해 와인의 세부담을 낮추고자 증가세를 부과하도록 함
 - 와인 생산량이 많은 프랑스, 미국에서도 다른 주류보다 와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함
 - 또한 역사적으로 당시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귀족(rich)들이 와인을 즐겨 마셔 와인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증가세를 부과함
 - 적절한 와인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알코올 함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 대신 증가세를 부과함⁴⁶⁾

3. 해외 주요국의 주류 유통체계 및 불법유통 방지제도

가. 미국

1) 주류 관련 유통체계 현황

- 미국은 주류의 과다소비 및 무분별한 소비방지를 위하여 주류의 유통단계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규제하고 있음⁴⁷⁾
 -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알코올·담배에 대한 관리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이하 TTB)’과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이 담당함
 - 연방정부는 TTB를 통해 주류의 제조·판매와 유통·수입의 면허제도와 표시

44)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Wine-equalisation-tax/Products-WET-applies-to/>

45) Foundation for Alcohol Research&Education, “Historical and cross-cultural changes in taxation of different alcoholic beverages”, 2015.7, pp.5~6.

46) Kym Anderson, “Excise and Import Taxes on Wine, Beer and Spirit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2009.12, p.1.

47) 박명호 외(2007), p.45.

등에 대해서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포장, 광고, 음주연령, 음주운전 등에 대한 규제를 시행함

- FDA를 통해서 주류의 음용 안정성을 통제함

○ 주정부 차원의 규제는 ‘주류통제국(Alcoholic Beverage Control, 이하 ABC)’이 주류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규제를 행하고 있음

□ 미국은 다음과 같이 주류의 유통 단계별로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도 각 주의 경제적·사회적 특성에 따라 주류행정을 규제하고 있음⁴⁸⁾

○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는 TTB가 연방내국세법(IRC)과 연방주류행정법(The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에 따라 면허제도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음

○ 주류표시 단계의 경우에도 TTB가 연방주류행정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안전관리 단계의 경우, FDA와 TTB가 연방식품의약품 시행령에 따라 생산된 주류의 음용 안정성 등을 통제함

○ 주류의 판매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주정부 기관인 ‘주류관리국(Alcoholic Beverage Control, 이하 ABC)’이 각 주의 주법에 따라 법적 음주허용연령 및 허용유형, 판매점의 수, 광고제한, 판매가능일 및 시간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음

- 주류의 판매는 면허제도(license or permit)나 전매제도(governmental monopoly)를 통하여 운영 중임

<표 III-10> 미국의 주류 유통과정별 규제 법령 및 담당기관

업무	근거법령	담당기관
제조 및 판매단계	연방내국세법 연방주류행정법	TTB(알코올, 담배에 대한 관리국)
주류표시단계	연방주류행정법	TTB
안전관리단계	연방식품의약품법	TTB 및 FDA(식품의약국)
유통규제단계	연방주류행정법 및 주법	TTB 및 주정부의 ABC(주류관리국)

자료: 이은경 외(2012), p.30.

48) 이은경 외(2012), pp.2~30.

2) 주류 관련 면허제도

- 미국에서의 주류 관련 면허제도는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면허제도와 각 주정부가 운영하는 주류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면허제도가 있음⁴⁹⁾
 - 연방정부가 담당하는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면허제는 연방주류행정법에 따라 기본면허(basic permit)라는 이름으로 주류의 제조자, 판매업자, 수입업자에게 요구됨
 - 이는 주로 주류의 제조 및 면허의 승인 절차에 대한 것으로 주류 행정규제에 대한 공통기준을 제시함
 - 주정부가 관리하는 주류의 판매에 대한 면허는 각 주의 주류관리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에 따라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에게 요구됨
 - 이는 주로 실질적인 면허발급 등의 행정관리에 대한 것으로 주류 행정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제를 운용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제조 및 판매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규제를 먼저 살펴도록 함

가) 연방법상 면허제도

- 연방정부는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기본면허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며, 주종별(증류주, 와인, 맥주)로 각각 다르게 규제하고 있음⁵⁰⁾
 - 기본면허는 연방법 및 주법상 위반사항 없이 해당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신청일로부터 5년 내에 연방법이나 주법상 중죄(felony)를 선고받지 않고, 신청일로부터 3년 내에 주류 관련 연방법상 경죄(misdemeanor)를 선고받지 않을 것
 - 둘째, 신청인의 사업경험, 재무상태, 거래관계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입업, 제조업, 판매업을 개시하고, 연방법에 따라 그러한 사업체를 영위할 가능성이 있을 것

49) 이은경 외(2012), pp.41~43.; 박명호 외(2007) pp.51~52.

50) 27 United States Code(이하 USC) § 204(a)(2)

- 셋째, 예정된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이 수행될 주정부의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 먼저, 주류의 제조에 대한 기본면허는 증류주와 와인의 제조자에게만 요구되며 맥주 제조자에게는 기본면허 대신 제조장 시설에 대한 통지서(notice)가 요구됨

○ 증류주 제조자의 경우에는 기본면허 충족 외에 제조장 시설을 TTB에 서면으로 등록(registration) 신청해야 함⁵¹⁾

- 신청 시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조장에 대한 상세내역(소재 부지의 정보, 건물의 크기와 위치 등에 대한 정보), 생산량 및 제조장의 보안에 대한 정보 등을 필수로 제공해야함⁵²⁾

○ 와인 제조자의 경우에는 기본면허 충족 외에 담보를 제공하고 와인 제조 부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TTB에 승인(permission) 신청을 하여야 함⁵³⁾

- 신청시 사업자에 대한 정보, 와인 제조 부지에 대한 상세내역(소재 부지의 건물 크기, 구조, 용도 정보 등), 제조 부지에 대한 담보내역에 대한 정보 등을 필수로 제공해야함⁵⁴⁾

○ 맥주 제조자의 경우에는 제조장 시설에 대한 통지서를 제출하면 되며, TTB에 제조장을 등록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됨⁵⁵⁾

- 통지서 제출 시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조장의 상세내역(제조장이 위치한 토지의 각 구역 정보 등), 예정영업시간 등을 필수로 제공하여야 함⁵⁶⁾

<표 III-11> 미국의 주류 종류별 제조면허제도

구분	연방주류행정법상 기본면허 대상 여부	연방법상 제조장의 등록 또는 승인 의무
증류주	○	○(등록)
와인	○	○(승인)
맥주	×	○(승인)

51) 26 USC § 5171(b)

52) 27 Code of Federal Regulation(이하 CFR) § 19.73-19.76

53) 26 USC § 5172

54) 27 CFR § 24.109

55) 26 USC § 5401

56) 27 CFR § 25.62, 25.68

- 다음으로, 주류의 판매에 대한 기본면허는 전주류(증류주, 와인, 맥주)의 판매자에게 요구되고 등록의무도 함께 부여되며, 해당 판매자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주류도매판매자(wholesale dealer in liquors)와 맥주도매판매자(wholesale dealer in beer)⁵⁷⁾
 - 주류소매판매자(retail dealer in liquors)와 맥주소매판매자(retail dealer in beer)⁵⁸⁾
 - 제한소매판매자 이외의 소매판매자를 말함
 - 제한소매판매자(limited retail dealer)⁵⁹⁾

〈표 III-12〉 미국의 주류 종류별 판매면허제도

구분	연방주류행정법상 기본면허 대상 여부	연방법상 판매자/수입업자 등록 의무 ⁶⁰⁾
증류주	○	○
와인	○	○
맥주	○	○

나) 주법상 면허제도

- 연방정부 외에 주정부도 각 주의 경제적·사회적 특성에 따라 주류 행정을 운영하고 있음
 - 2015년 11월 기준으로 주정부가 직접 주류 유통에 개입하는 전매제(governmental monopoly)를 채택한 주는 18개 주이며, 나머지 주는 주류의 제조나 판매 등 유통을 허가받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면허제(license or permit)를 채택하고 있음

57) 26 USC § 5121(c)

58) 26 USC § 5122(c)

59) 26 USC § 5122(c), 제한소매판매자란 오락, 파티, 소풍, 바자회 또는 축제를 개최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공제조합, 시민단체, 교회, 노동조합, 자선단체 등과 축제, 모임, 소풍 또는 이와 유사한 야유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개인을 말함

60) 26 USC § 5121, 5122

A. 면허제(license or permit)를 시행하는 주(states)

- 대표적으로 주류의 판매 및 유통에 대하여 면허제도를 채택한 주는 캘리포니아 주이며 주법상 제조자, 판매자, 수입업자 등 주류 관련 업종을 면허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⁶¹⁾
 - 주류관리국(ABC)은 2016년 현재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주류 종류별, 소매/비소매, 판매장소, 판매대상 등에 따라 약 77종의 면허를 관리하고 있음
 - 판매장소의 경우 식료품점, 주류판매점과 같이 판매점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소비하는 가정용 판매업(off-sale)에 대한 면허와 레스토랑, 주점 같이 판매점에서 주류를 소비하는 업소용 판매업(on-sale)에 대한 면허가 있음
 - 비소매 면허는 제조자의 판매, 도매 및 수입 등에 대한 면허를 말함
-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관리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BOE(the State Board of Equalization)⁶²⁾의 승인이 있으면 면허 발급이 가능함⁶³⁾
 - 면허 신청자는 신청 시에 신청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며, 면허세(license fee) 납부의무가 발생함
 - BOE는 면허 신청자가 인적요건과 장소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면허를 발급함⁶⁴⁾
 - 인적 요건의 경우, 신청자가 형사상 중죄를 범하지 않고 주법 규정상 위반행위가 없었을 것을 요함⁶⁵⁾
 - 장소적 요건의 경우, 교회, 병원, 학교, 아동시설 등이 인접한 장소 등이 아닐 것을 요함⁶⁶⁾

B. 전매제(governmental monopoly)를 시행하는 주(states)

- 전매제를 채택한 주는 18개 주이며,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와인과 맥주에 비해 다소 도수가 높은 증류주에 한해서만 전매제를 시행하고 있음⁶⁷⁾

61) California 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 23300

62) BOE는 연방정부의 권한위임하에 주정부 산하에서 조직 및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주류 행정 전반과 면허세 징수 등의 업무를 함

63) California 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 23950

64) California 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 24040

65) California 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 23952

66) California 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 23789

- 다만, 메릴랜드 주의 경우 몇몇 자치주(county)에서만 전매제를 시행 중임
 - 메릴랜드에서 전매제를 시행하는 자치주는 Montgomery, Somerset, Wicomico 등이 있음

<표 III-13> 미국에서 주류 전매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states)

주(states)	전매제 주종
오리건 주	증류주
아이다호 주	증류주
몬테나 주	증류주
와이오밍 주	증류주
아이오와 주	증류주
미시간 주	증류주
오하이오 주	증류주
웨스트버지니아 주	증류주
미시시피 주	증류주
앨라배마 주	증류주
버지니아 주	증류주
버몬트 주	증류주
뉴햄프셔 주	증류주
메인 주	증류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증류주
유타 주	증류주, 와인, 맥주
펜실베이니아 주	증류주, 와인
매릴랜드 주	몇몇 자치주에서만 전매제 실시

자료: The Alcohol Research Group(2008), p.3을 업데이트함

3) 기타 불법유통 방지제도

- 미국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류표시사항(mandatory label information, “라벨링”)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용도구분 표기와 같이 주류의 불법유통이나 탈세 방지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주류의 불법유통과 탈세 방지 목적으로 주류에 대형매장용, 가정용, 주세 면세용 등 용도구분을 의무화함

67) The Alcohol Research Group, “Alcohol Control System and the Potential Effects of Privatization,” pp.3-4.

- 미국의 라벨링 규정⁶⁸⁾은 주류의 브랜드명, 상품의 등급 및 종류, 알코올 함유량, 제조 및 유통업자의 상호와 주소, 수입 주류의 경우 원산지 등의 정보를 요구하나 주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용도구분에 대한 정보는 요구하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상기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면허제도 외에 주류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발견되지 않음

나. 캐나다

1) 주류 관련 유통체계 현황

- 캐나다는 주류의 제조, 판매 및 유통에 대해서 주(province)별로 각각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주류 관련 면허는 각 주의 법적 권한에 의해 발급되고 있음
- 앨버타(Alberta)주를 제외한 캐나다의 각 지방정부는 주류 전반에 대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 주류 판매점을 직접 운영하거나 주류면허를 소지한 식당 등을 관리함⁶⁹⁾
 - 캐나다는 주류제조면허보다는 판매면허에 대해 많은 부분 규제를 두고 있으며, 각 주의 주류관리청이 주류판매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있음⁷⁰⁾⁷¹⁾
 - 또한 각 주마다 자체적인 주류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주류 생산업체의 세금 문제,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관리함
 - 연방정부는 ‘주류관리법(Liquor Control Act)’을 근거로 주류의 포장과 함유성분 등을 관리함

68)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Laws and Regulations under the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 2007.에서 주류 종류별 mandatory label information 참조.

69) 박명호·문예영(2007), p.55.

70) 박명호·문예영(2007), p.55.

71) 캐나다의 각 주별 주류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는 다음의 기관 또는 위원회에서 주로 관리되고 있음. (Alberta Gaming and Liquor Commission, British Columbia Liquor Distribution Branch, 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 Manitoba Liquor Control Commission, Northwest Territories Liquor Commission, Newfoundland and Labrador Liquor Corporation, New Brunswick Liquor Corporation, Nova Scotia Liquor Corporation, Nunavut Liquor Commission, Prince Edward Island Liquor Control Commission, Saskatchewan Liquor and Gaming Authority, Société des alcools du Québec, Yukon Liquor Corporation), 출처(<http://www.ttb.gov/wine/state-ABC.shtml#Canada>).

- 캐나다의 모든 주는 주류의 도매단계 유통을 정부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소매 판매도 정부에서 독점하거나 판매면허를 취득한 상점과 같이 유통하고 있음⁷²⁾
- 다만 앨버타 주는 지난 1994년부터 주류 소매점을 전부 민영화하여 면허를 보유한 일반 상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III-14〉 캐나다 주별 주류 소매점 주체(2011년 기준)

주	NL	PEI	NB	NS	QC	ON	SK	MB	AB	BC	YT	NWT
판매 주체	민·관 혼합	정부 독점	정부 독점	민·관 혼합	민·관 혼합	민·관 혼합	민·관 혼합	민·관 혼합	민간	민·관 혼합	민·관 혼합	정부 독점

주: NL(Newfoundland and Labrador), PEI(Prince Edward Island), NB(New Brunswick), NS(Nova Scotia), QC(Quebec), ON(Ontario), SK(Saskatchewan), MB(Manitoba), AB(Alberta), BC(British Columbia), YT(Yukon), NWT(Northwest Territories)

자료: Thomas(2012), p.6

- 캐나다는 대부분 전매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각 주마다 주류행정제도에 차이점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몇 개 주의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주류의 소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온타리오(Ontario) 주는 모든 주류를 주류관리청(The 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 LCBO)에서 판매하며, 주류 및 게임위원회(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AGCO)에서는 주류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 면허 등을 관리하고 있음⁷³⁾
 - 앨버타 주는 주류 및 게임위원회(Alberta Gaming and Liquor Commission; AGLC)에서 주류에 대한 면허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매점 판매활동은 민영화됨⁷⁴⁾
 - 퀘벡(Quebec) 주는 RACJ(Régie des alcools, des courses et des jeux)라는 특별법을 통해 주류 유통 및 소비를 관리함
 - 일부 도수가 높은 주류(주로 알코올 함량이 15~20% 이상)는 SAQ 아울렛에서만 판매하도록 함
 -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주에서는 SLGA(Saskatchewan Liquor and Gaming Authority)에서 주류의 유통 및 규제를 담당함⁷⁵⁾

72) Thomas(2012), p.5.

73) 박명호·문예영(2007), pp.57~58.

74) AGLC(<http://www.aglc.gov.ab.ca/licences/default.asp>)

2) 주류 관련 면허제도

가) 제조면허제도

□ 캐나다는 각 주별로 주류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음

- 온타리오 주는 AGCO 등이 발급 및 관리하는 주류제조면허(Brew on Premise Facilities License), 제조대행면허(License to Represent a Manufacturer) 제도 등을 운영함⁷⁶⁾
 - 주류제조면허는 각종 주류를 제조하는 업체에 필요하며, 주종별로 각각 면허증을 소지해야 함(단, 필요장비 및 시설은 주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품질 검사장비도 갖추고 있어야 함)
 - 제조대행면허는 일반판매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제조할 수 있는 면허이며 이 또한 주정부로부터 제조 장비 등을 승인받아야 함
- 앨버타 주에서는 주류 판매 및 제조를 위한 다섯 등급의 면허가 있으며, 제조를 위해서는 E등급(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해야 함⁷⁷⁾
 - E등급 면허를 취득하면 맥주공장(breweries), 포도주 양조장(wineries), 증류주 양조장(distilleries) 등에서 주류를 제조할 수 있음
- 서스캐처원 주에서는 제조면허(Manufacturer License)를 취득해야 함⁷⁸⁾

나) 판매면허제도

□ 제조면허와 마찬가지로 각 주별로 주류 유통 관련 면허를 부여함

- 온타리오주는 LCBO에서 주류를 직접 판매하거나 주류판매면허 소지 판매점에 주류를 배급하고 있으며, AGCO는 주류판매면허(Liquor Sales License), 이동술집면허(Mini Bar License), 특별임시면허(Special Occasion Permits), 주류배달면허(Liquor Delivery Service License) 등을 관리함
 - 주류판매면허는 일반 상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이며, 정해진 시간 내에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함

75) SLGA(2012), pp.9~14.

76) 박명호·문예영(2007), pp.55~56.

77) AGLC(<http://www.aglc.gov.ab.ca/licences/default.asp>)

78) SLGA(2012), pp.13~14.

- 이동술집면허는 세미나, 단체 교육 등 집단 모임에 주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주류판매면허에 특별승인을 받은 경우 발급받을 수 있음
- 특별임시면허는 영업 목적이 아닌 비영리 모금활동, 결혼, 리셉션 등에서 주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임
- 주류배달면허는 주류를 취급하는 상점 또는 일반소비자에게 주류를 직접 배달해 주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사업상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배달하는 사업체에 필요함(허가 없이 주류를 배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임)
- 전술한 바와 같이, 앨버타 주에서는 일반 주류면허정보, 특별면허뿐만 아니라 주류의 판매 및 제조를 위한 다섯 등급의 면허가 있으며, 판매와 관련된 면허는 A~D등급에 해당함⁷⁹⁾
 - A등급(식당 및 라운지 등), B등급(레크레이션 시설 등), C등급(클럽, 매점 등), D등급(주류 소매점, 호텔 등)
- 서스캐처원 주에는 술집면허(Tavern License), 특별면허(Special Use License) 등이 있음⁸⁰⁾
 - 술집면허: 바, 술집, 식당, 클럽 등에서 술을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
 - 특별면허: 주류 판매가 주목적은 아닌 식당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발행

3) 기타 불법유통 방지제도

- 캐나다의 식품검사소(Canada Food Inspection Agency)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류표시사항(“라벨링”)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용도구분 표기와 같이 주류의 불법유통이나 탈세 방지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주류의 불법유통과 탈세 방지 목적으로 주류에 대형매장용, 가정용, 주세 면세용 등 용도구분을 의무화함
 - 캐나다의 라벨링 규정⁸¹⁾은 주류의 브랜드명, 알코올 함유량 등의 정보를 요구하나 주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용도구분에 대한 정보는 요구하지 않음

79) AGLC(<http://www.aglc.gov.ab.ca/licences/default.asp>)

80) SLGA(2012), pp.9~12.

81)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http://www.inspection.gc.ca/food/labelling/food-labelling-for-industry/alcohol/eng/1392909001375/1392909133296?chap=0#c1>)

- 캐나다의 경우 상기 주류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면허제도 외에 주류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발견되지 않음

다. 호주

1) 주류 관련 유통체계 현황

- 주류 관련 유통에 대한 규제는 식품표준청, 국세청(Australia Tax Office), ACCF (Alcohol Corporate Consultative Forum)에서 분할하여 관장함
 - 식품표준청은 식품표준법(Food Standards Code)에 근거하여 주류표시의 업무를 담당함
 - 국세청은 주류 관련 과세행정 및 제조면허, 저장면허, 이동허가 등 주류 면허 제도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함
 - 국내제조 주류는 국세청이, 수입주류는 관세청(Australia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이 관리함
 - 국내제조 목적으로 수입된 주류제품은 관세청과 국세청이 공동으로 관리함
 - ACCF는 국세청(ATO), 호주세관, 국경보호 서비스(ACBPS)의 주관하에 분기별로 개최되는 주류협회 관계자들의 협의기구임
 - 주류 관련 과세시스템, 행정적 절차, 위험관리에 대한 논의·승인을 담당함
 - 소비세, 관세, 세율 인상과 같은 과세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행정 및 위험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침

2) 주류 관련 면허제도

가) 제조면허제도

- 주류의 제조·저장·이동과 관련하여 주류업자는 단계별로 제조면허, 저장면허, 이동허가⁸²⁾가 필요함
 - 모든 주류의 제조와 희석 및 색상과 화학적 첨가에는 제조면허가 요구되고 유통, 채포장, 수출 등에는 저장면허와 이동허가가 필요함

82) Excise Act 1901 section 61(A)

- 주류 제조업자는 주류의 제조를 위해서 제조면허(Manufacturer license)를 취득하여야 함⁸³⁾
 - 주류 제조를 위해서는 사전에 생산에 대한 제조면허(manufacturer licence)가 요구됨⁸⁴⁾
 - 제조면허를 취득한 제조업자는 주류 관련 납세의무를 부담함
 - 주류 관련 소비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 주류 관련 세무감사 시 모든 합리적 시설을 제공하고, 주류의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각종 실험기구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제조업자 공장에서 제조된 주류를 해당 공장에서 저장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업자의 제조면허에는 저장면허의 권한까지 포함하게 됨

- 주류 저장면허는 주류의 저장을 포함한 도매와 소매의 유통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면허임⁸⁵⁾
 - 저장면허는 제조업자의 제조 주류를 저장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다른 제조 공장의 주류를 반입하여 저장할 때도 필요함
 - 여기서 저장의 범위에는 포장주류·벌크(bulk) 맥주의 저장·포장·재포장의 활동을 포함함

- 이동허가는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 주류의 반입 및 반출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제조면허 또는 저장면허와는 별도로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동빈도와 국내외 여부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함
 - 이동빈도가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경우 연속적 이동허가에 해당되고, 특정한 상황의 주류 반입 및 반출인 경우에는 일시적 이동에 해당됨
 - 일회성 이동허가(Single movement permission)는 특정한 곳에서 다른 정해진 곳으로 1회에 한하여 주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허가증으로 국내외 수출이동으로 구분됨
 - 연속적 이동허가(Continuing movement permission)는 특정한 곳에서 다른 정해진 곳으로 연속적으로 정해진 주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허가증으로 국내외 수출이동으로 구분됨

83) Excise Act 1901 section 4

84) Excise Act 1901 section 4

85) Excise Act 1901 section 4(1)

○ 수출이동허가는 수출권한을 의미하지 않으며, 관세청과는 분리하여 운영함

□ 이동허가 시, 각 제조공장에서 이동하는 주류제품에 대해서는 반출 공장과 도착지, 반출의 날짜, 포장 형태와 수량, 주류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함

3) 기타 불법유통 방지제도

□ 호주에서도 식품표준청의 “Food Standards Code” 등에 따라 주류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불법유통 방지 등의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호주도 면허제도 외에 주류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별도의 규정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면허제도 중 저장 면허 및 이동허가 제도를 살펴볼 수 있음

○ 저장 면허는 도·소매 유통과 관련한 필수 면허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동허가 제도를 통해 주류 유통을 관리하고 있음

○ 주류의 생산과 유통과정의 당사자는 제조자, 허가된 공급자, 소비자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제조, 저장, 이동허가가 필요함

- 유통, 재포장, 수출 등에는 저장, 이동허가가 있어야 함

- 맥주의 경우에는 재포장 시 제조면허와 저장면허가 필요하며, 증류주는 재포장 시 저장면허만 있어도 가능함

<표 III-15> 주류의 활동과 면허의 종류

활동	증류주(와인포함) 면허	맥주 면허
주류의 제조	제조	제조
주류의 희석	제조	제조
변성 과정을 포함하여 색상과 화학적 첨가	제조	제조
최종 소비자에게 주류 유통	저장, 이동허가	저장, 이동허가
주류의 재포장	저장	제조와 저장
주류의 수출	저장, 이동허가	저장, 이동허가
주류의 소비자	없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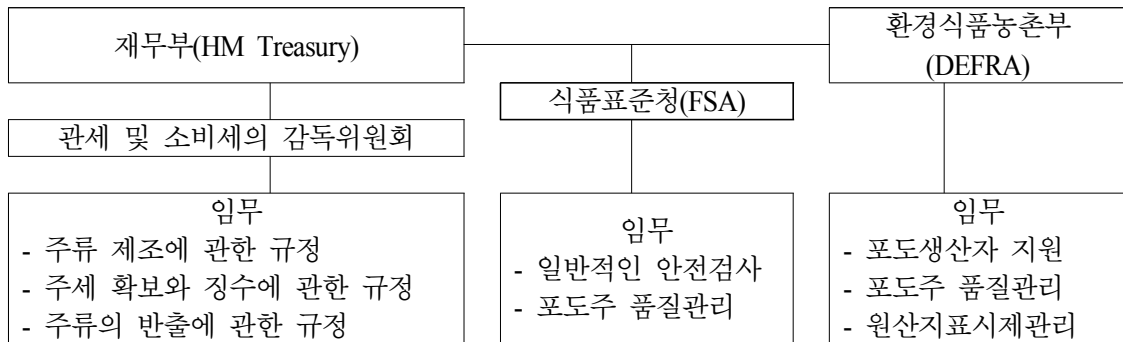
자료: <http://law.at.gov.au/> 법률 DB, 'Excise guidelines for the alcohol industry'; 이은경 외(2012), p.104., 재인용

라. 영국

1) 주류 관련 유통체계 현황

- 영국에서 주류행정은 국세청(HMRC NRU, HM Revenue Customs National Registration Unit)에서 이루어지며, 주류의 안전관리는 식품표준청, 포도주에 대한 관리는 환경식품농촌부에서 담당하고 있음⁸⁶⁾
- 국세청은 주류 전반에 대한 제조·생산·이동·저장과 관련된 면허·등록의 허가과 행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주류 위조 및 변성알코올의 안전업무에 대한 관리도 시행함

[그림 III-1] 영국의 주류 관련 행정체계



자료: 이은경 외(2012), p.61.

- 주류의 생산 및 저장과 관련된 주세법이 있으며, 주류의 소매면허는 면허법을 적용하고 있음
 - 영국의 주류인 증류주, 맥주, 포도주, 가공 포도주, 과일주의 생산과 제조 및 이동과 저장 등에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음
 - The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주류의 이동 및 저장
 - The Alcoholic Liquor Duties Act 1979: 주류제조 등
 - The Finance Act 1995: 세율 등
 - 주류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시간 및 면허대상 등은 면허법(Licensing Act 2003)에 근거하고 있음

86) 이은경 외(2012), P.61.

- 면허법은 주류의 소매판매면허보유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관리를 다루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소매판매 시 허용된 시간 및 판매주류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별 주류에 대한 각각의 규정이 존재함
 - The Spirits Regulations 1991
 - The Beer Regulations 1993
 - The Cider and Perry Regulations 1989
 - The Wine and Made-wine Regulations 1989

2) 주류 관련 면허제도

가) 제조면허제도

- 주류의 제조·생산·저장(주정 제외)과 관련해서는 공인된 창고업자, 등록된 주류업자, 위탁업자 등에게 권한이 부여되며, 이들은 법에 의해 승인과 면허 및 등록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음
 - 영국 국세청(HMRC)은 기존 공인된 저장업자, 기존 등록된 주류사업 및 신규 신청에 대한 허가 내용을 정기적으로 재조사함
 - 조사내용은 기존의 승인 및 공인에 대한 연장, 신규 제조·생산·도매업의 등록과 신청, 신규 및 추가적 제조·생산·도매 점포의 승인, 등록된 위탁업체에 대한 등록 및 승인 등임
 -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기본적인 감사와 실질적인 검사를 병행하게 됨
- 제조·생산·저장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 면허를 신청하여 사전등록증명서를 받은 후 합법적 과정을 통해 등록을 받아야 하며 해당 관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야 함
 - 제조·생산·저장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면허를 신청하기 전에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신청서를 사업개시 45일 전에 제출해야 함
 - 제조·생산·저장업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 모두에게 사전등록증명서를 발급해 줌

- 이는 사업예정자의 사업활동 및 계획, 공급 및 소비, 회계시스템, 점포, 금융 보증 등 제반조사를 위한 것임

나) 판매면허제도

- 영국의 판매면허와 관련해서는, 면허법 2003(The Licensing Act 2003)에 알코올의 공급, 규제되는 점포의 공급, 판매시간, 점포면허, 인적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판매시간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폭음문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제를 마련함
 - 주류를 판매하는 점포의 영업시간이 9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임시행사통지(temporary event notice)를 하도록 규정함⁸⁷⁾
 - 기타 일시적인 행사 기간에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도 하고,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인과 동행하거나 특별히 승인받은 경우에 허용됨⁸⁸⁾
 - 면허 종류에는 점포면허(premlises licence)와 인적 면허(personal licence), 클럽점포면허(club premlises certificate) 등이 있음⁸⁹⁾
 - 클럽점포면허는 회원제 클럽의 구역에서 점포면허 대신 주류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임
- 술을 공급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슈퍼마켓, 펍(pubs), 바(bars), 영화관 등은 점포면허(premlises licence)를 발급받아야 함⁹⁰⁾
 - 면허법 2003에 따른 점포면허는 점포의 관할 지방의회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의회에서 전자신청이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면허신청이 가능함
 - 온라인 신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지역에 따라 구분되어 운영되므로 관할 지역에 신청하여야 함

87) Licensing Act 2003 §100

88) Licensing Act 2003 §120

89) <https://www.gov.uk/guidance/alcohol-licensing#personal-licence>

90) <https://www.gov.uk/guidance/alcohol-licensing#personal-licence>

- 면허가 발급된 점포에서 지정된 관리인은 인적 면허를 발급받아야 함⁹¹⁾
 - 면허를 발급받은 점포나 기업에서 고용된 직원은 인적 면허를 발급받을 필요 없음
 - 면허법의 41D조항에서 규정하는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사회건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적 면허를 요구하지 아니함

3) 기타 불법유통 방지제도

- 영국 국세청(HMRC NRU)은 주류의 밀수 등 불법적 반입 및 주류 도매와 판매시 불법 유통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4개 기관과 MOU를 체결함⁹²⁾
 - MOU 체결기관의 회원사들은 주류의 반입과 저장 및 유통에 있어 HMRC의 조사와 식별과정을 거친 라벨링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보장받는 동시에 강한 법적 제약이 부과됨
 - 체결 기관은 UKWA(United Kingdom Warehouseing Association, 2007. 7. 2), BWA (Bonded Warehousing Association, 2007. 7. 2), SWA(Scotch Whisky Association, 2008), WSTA(Wine & Spirits Trade Association, 2008)임
 - 영국 정부가 주류안전 및 불법유통이나 밀수 관련 업무에 대해 MOU를 체결한 것은 세수손실을 막고, 주류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주류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임

마. 독일

1) 주류 관련 유통체계 현황⁹³⁾

- 주류를 제조/저장하려는 자는 정부의 허가(면허)가 필요하며, 연간 제조수량의 신고와 주원료, 제조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상세히 규정하여 엄격히 규제·관리함
 - 증류주는 전매제도를 채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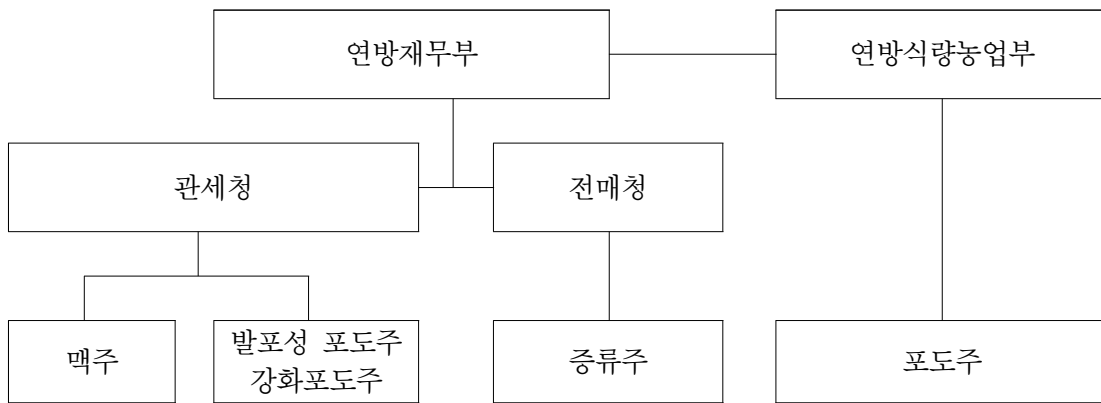
91) <https://www.gov.uk/guidance/alcohol-licensing#personal-licence>

92) 이은경 외(2012), pp.62~64.

93) 성명재·박상원(2010), pp.13~14.

- 연방 재무부와 연방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에서 주류행정을 이원화하고 있음
 - 포도주 관련 주류관리: 연방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가 담당함
 - 실질적 통제 및 관리는 주정부 도청 농정과 과수팀에서 담당함
 - 포도주 이외 주류관리: 연방 재무부 소속 관세청과 전매청

[그림 Ⅲ-2] 독일의 주류관련 행정체계



자료: 박현진(2014), p. 69

2) 주류 관련 면허제도

- 주종별 제조면허 발급 담당부서는 납세의무의 이행에 의심이 가지 않는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고도주인 증류주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고려하여 면허조건을 다른 주류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함
 - 맥주: 연방 관세청
 - 포도주: 연방 식량농업부
 - 포도주용 포도재배권을 가진 농가는 신고만으로 포도주 제조 및 유통 권한을 부여하여 농산물소비 촉진을 장려함
 - 증류주: 연방 전매청
 - 증류권이 없는 연간 증류주 생산량 1kl 이하의 소규모 증류장: 증류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류를 허용
 - 자가 증류장이 없는 원료생산 농민은 타인의 증류장에서 증류가 가능하며, 연간 50l 에 한해서만 증류권을 인정함

□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맥주·포도주 등 발효주: 제조시설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음
- 증류주: 고도주에 관한 철저한 관리·통제를 목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함

□ 도·소매를 위한 면허는 요구하지 아니하나, 점포(premises) 내에서 주류소비를 하거나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류판매 면허(Gaststättenkonzession)가 필요함⁹⁴⁾

- 무알코올이나, 무료샘플 등을 제공하는 것은 면허를 요하지 아니함⁹⁵⁾

3) 기타 불법유통 방지제도

□ 독일은 식품 정보표기규정(“라벨링”)에 따라 주류도 의무적인 라벨링 규정을 받고 있으나⁹⁶⁾, 우리나라의 용도구분 표기와 같이 주류의 불법유통이나 탈세 방지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독일의 경우 상기 주류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면허제도 외에 주류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발견되지 않음

바. 일본

1) 주류 관련 유통체계 현황

□ 일본에서 주류행정의 총괄적 계획 수립은 재무성의 주세국에서 담당하지만 주류 제조, 판매관리 및 세수 확보 등 주류행정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음

- 국세청에서는 주류 제조·판매면허와 주류표시에 대한 전통적인 주류 행정업무를 담당함
- 또한 주류의 생산에서 소비 단계까지 안정성, 품질 수준 등 안전관리업무를

94) Jugendschutzgesetz(JuSchG) § 3 Bekanntmachung der Vorschriften

95) Gaststättengesetz § 2 Erlaubnis

96) Esa Österberg and Thomas Karlsson, Alcohol Policies in EU Member States and Norway: A Collection of Country Reports, 2002., p.198.

담당하며, 주류의 공정한 거래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매년 주류 판매장 등에 대한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있음

<표 III-16> 일본의 주류 관련 법체계 및 주류행정 분담

업무	근거법령	담당기관
제조·판매면허 허가	주세법, 알코올사업법	국세청
주류표시	주세보전 및 주류 산업 협회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국세청
안전관리	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국세청, 독립행정법인 주류종합연구소 ¹⁾
유통규제	주류에 관한 공정거래를 위한 지침	국세청

주: 1) 독립행정법인 주류종합연구소에서는 원료농산물의 재배시험, 주류제조, 유통, 소비단계에 걸친 기술연구, 주류의 품질향상, 유전자, 효소 등 기반연구 및 분석과 감정방법 개발, 보유타 및 연구성과 보급 및 정보의 수집, 정리,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함
 자료: 이은경 외(2012), p.50.

가) 주류 관련 면허제도

A. 제조면허제도

- 신규로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거나 시설을 이전할 경우, 제조시설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조자는 주류의 품목별로 제조장마다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⁹⁷⁾
 - 신청자의 주소·이름(명칭), 제조장의 소재지·명칭, 제조 주류의 품목 및 범위, 제조의 개시 및 중지, 제조방법, 제조면허를 받은 후 1년간 주류 제조예상수량, 시험목적으로 주류 제조 시 그 취지 및 목적, 제조장 설비상황 등의 내용을 사전 신고해야 함⁹⁸⁾
 - 매월분의 주류 제성 및 출고수량, 매월 말 주류 보유수량 및 월중 미출고 주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97) 박명호 외(2007), p.74.

98) 주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B. 판매면허제도

- 주류를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판매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판매면허를 받아야 함
 - 판매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의 주소·이름(명칭), 판매장의 소재지·명칭, 판매 주류의 품목, 범위 및 판매방법, 전람회장·직매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 취지 및 판매업을 하려는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⁹⁹⁾

- 주류판매와 관련된 면허는 크게 ① 주류판매업면허 ② 주류판매대리업면허 ③ 주류판매중개업면허로 구분됨
 - 주류판매업면허는 주류 판매처에 따라 다시 주류도매업면허와 주류소매업면허로 구분됨
 - 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의 범위와 판매방식에 따라 전주류도매업면허, 맥주도매업면허, 양주도매업면허, 수출입주류도매업면허, 특수주류도매업면허, 매장판매주류도매업면허, 협동조합원간주류도매업면허, 자기상표주류도매업면허 등 8종류로 구성됨¹⁰⁰⁾¹⁰¹⁾
 - 주류소매업면허에는 취급주류와 판매방식에 따라 일반주류소매업면허, 통신판매소매업면허, 특수주류소매업면허가 있음
 - 주류판매대리업면허는 주류제조사 또는 주류판매업자의 주류판매에 관한 계속적인 대리행위를 인정하는 면허임
 - 주류판매중개업면허는 타인 간 주류의 매매거래를 계속적으로 매개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면허임

99)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00) 2012년 9월부터 판매요건이 완화되어 매장판매주류도매업면허, 협동조합원간주류도매업면허, 자기상표주류도매업면허가 신설됨

101) 마정화 외(2012), p.165.

<표 III-17> 일본의 주류판매업 등 면허의 구분

구분		개념	
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 소매업 면허	일반주류 소매업면허	판매장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주류를 소매할 수 있는 면허
		통신판매소매업 면허	2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이상 지역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카탈로그 송부 등의 방법에 의해 일정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는 면허
		특수주류소매업 면허	자사 종업원에 대한 소매 등 주류 소비자 등의 특별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류를 소매할 수 있는 면허
	주류 도매업 면허	전주류도매업면허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주류를 도매할 수 있음
		맥주도매업면허	맥주를 도매할 수 있는 면허
		양주도매업면허	과실주, 감미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발포주, 기타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 분말주 및 주정을 도매할 수 있는 면허
		수출입주류도매업면허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주류를 도매할 수 있는 면허
		특수주류도매업 면허	주류제조업자의 특수한 필요에 따라 주류를 도매하는 것이 인정된 면허
		매장판매주류도매업면허	자기 회원인 주류 소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매장에서 주류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만 도매할 수 있는 면허
		협동조합원간주류도매업면허	가입된 사업협동조합의 다른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류를 도매할 수 있음
자기상품주류도매업면허	자체 개발한 상표의 주류 도매에 한정하는 면허		
주류판매대리업면허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의 주류 판매에 관한 지속적인 대리행위를 인정하는 면허	
주류판매중개업면허		타인간 주류의 매매거래를 계속적으로 매개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면허	

자료: 이은경 외(2012), p.54. 재구성

2) 기타 불법유통 방지제도

- 일본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주류, 주류판매업자가 재반입해 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 등에 일정한 표시(라벨)를 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의 용도구분 표기와 같은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일본에서는 주류의 품목, 알코올 함량, 세율적용 구분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은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면허제도 외에 주류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발견되지 않음

IV. 타당성 분석



IV. 타당성 분석

- 본장의 주된 목적은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 주류판매면허(도매업면허) 제도, 주세율 체계(종가세 대 종량세)에 대한 타당성을 이론적 또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정함을 주된 목적으로 함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 타당성: 소비패턴의 고급화·다양화에 따른 시장경제의 이해(이론적 접근)

- 주류는 소비를 통해 주류 소비자에게 효용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음주 관련 각종 외부불경제를 함께 발생시키는 이중적인 특성을 보유
- 주류는 여타 재화·용역과 마찬가지로 소비를 통해 효용을 창출하고, 주류산업 역시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효용 극대화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긍정적 접근이 필요
- 특히 주류소비와 관련한 상기의 두 가지 상충적인 특성 가운데 전자와 관련해서는 주류도 일반소비재와 동일한 특성을 지니므로, 효용극대화 측면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를 통해 주류 소비패턴의 고급화·다양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
- 한편 과도한 음주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적 외부불경제 현상으로 인해 분별 있는 음주문화 정착 및 주류소비 억제가 필요
 - 이 부분은 주세율 체계의 적정성·타당성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가. 주류시장의 다변화 현상

- 종전 우리나라 주류 시장은 少품목·대량유통 주류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소비자기호가 변화(다양화·고급화 등)하고 소규모주류제조면허(2002년 맥주 신설)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변화 양상으로 전환

- 그 결과 대중적 수요기반을 가진 대기업이 제조하는 주류제품과,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들이 생산한 다품종·소량유통 중심의 주류제품으로 소비구조가 다변화·다양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
 - 이로 인해 동일 주종 내에서도 제품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 소수의 대기업에 의한 과점시장(oligopolistic market)과 다수의 소규모주류제조자에 의한 차별화된 틈새시장(niche market)으로 구성된 독점적 경쟁시장(monopolistically competitive market)으로 이원화(이중구조)

나. 제품 차별화와 주류시장의 구조변화

- 독점적 경쟁시장이란, 큰 틀에서는 서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제품으로서 상호간에 대체관계가 크지만, 기호, 취향, 디자인, 색상, 맛, 알코올도수 등의 측면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다수의 (소규모) 공급자들이 생산·공급하는 시장
 - 제품 차별화의 결과 맛과 품질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동일제품으로 인식하지 않고 상호간에 상당히 높은 경쟁·대체관계가 존재하는 시장이 해당
 - 아울러 다수의 소규모 생산자(공급자)들이 존재함은 시장 전체에 대한 개별 생산자들의 시장지배력이 미약함을 의미
 - 따라서 공급자들은 가격수용자로서 행동
 - 대부분의 경우 시장영역과 지배력이 미치는 영역은 영업장이 소재한 지역과 인접한 구역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음
- 소규모주류제조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은 영역이 제한되지만, 제품 차별화로 인해 상호간에 대체성은 높지만 완전대체재는 아니기 때문에, 공급자 각자가 당면하는 개별 수요곡선은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것이 특징
 - 해당 주종 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이 과잉참여한 상태가 아니라 면허제도 또는 제조기술상 제조비법 등의 차이로 인해 시장진입이 제한된 상태라면,
 - 단기적으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 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초과이윤(excess profit))을 향유
 - 초과이윤의 존재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시장진입장벽의 강도에 따라 지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만약 진입장벽이 낮다면 제품 차별화의 진전을 통한 주류제품의 다양화와 그를 통한 소비자선택권의 확대에 의한 사회후생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양(+)의 초과이윤이 존재하고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발급에 있어 진입장벽 등이 크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초과이윤이 0에 이를 때까지 시장진입이 계속될 것임

- “대중적 취향”에 기반을 둔 대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대량의 기성형 제품과 달리, 소규모주류제조자들이 다수 출현하면서 특정한 선호·기호를 가진 소수의 마니아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제품을 공급하는 소규모 다품목 시장이 혼재된 형태로 우리나라의 주류시장 구조가 급속히 변모
 - 소량의 기호제품을 공급하는, 일종의 고급화 전략에 치중하는 소규모제조업자들이 다수 출현

- 2000년대 이전의 주류제조면허가 대형의 제조시설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다품종·소량 중심의 맞춤형 기초주류제품의 공급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나, 최근 대중적 시장의 기반 위에 맞춤형 틈새시장이 정착한 것은 우리나라 주류시장이 선진화되고 있음을 시사

- (유의사항) 다만 제품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선택권의 확대에 의한 사회후생의 증진이, 자칫 음주억제를 통한 사회후생의 증진정책과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양자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양립이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
 - 전자는 소비자선택권을 다양화 및 확대해줌으로써 잠재적 후생수준을 제고한다는 질적 측면에서의 후생증진의 의미를 지니며,
 - 후자는 주류소비(음주) 총량을 규제·억제를 정책목표로 하되 분별 있고 절제된 음주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양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외부불경제를 감축하는 의미
 - 그러므로 상호간에 모순되는 점이 없음에 유의할 필요

- 제품 차별화를 통해 창출된 틈새시장에서 신규진입의 증가를 통해 소비자선택권의 확대가 이루어지면 초과이윤이 감소하면서 사회후생(주로 소비자잉여)이 증대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평균생산비가 가장 낮은 수준에서 장기균형점을 형성하면서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최고수준에 도달
 - 이 경우 모든 경쟁기업은 장기균형에서 초과이윤이 0이 되고 정상이윤을 획득

- 그런데 제품 차별화로 인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의 장기균형에서는 완전경쟁시장과 마찬가지로 초과이윤이 0이 되고 정상이윤을 누리지만,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점은 평균생산비가 최저가 되는 수준보다 작은 수준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
 - 이는 독점적 기업의 경우 생산량을 늘리면 평균생산비용을 더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선택 불가능하기 때문

- 그러므로 제품 차별화로 인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평균생산비용이 최저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과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수준 사이의 차이, 즉 유희생산능력(excess capacity)의 문제가 발생
 - 평균생산비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일종의 자원낭비로 볼 수도 있으나, 차별화된 제품을 (소량)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대가로 해석한다면 낭비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소규모주류제조자들이 생산하는 주류제품의 생산비용이 대기업이 생산하는 소위 기성형 제품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이유는,
 - 첫째, 기성형 제품에 비해 소량생산에 의존하는 만큼 충분히 “규모의 경제” 효과를 향유하지 못한다는 점
 - 둘째, 고급화·다양화 전략의 선택으로 인한 투입 원재료비용의 증가
 - 셋째, 제품 차별화로 인한 유희생산능력 등의 영향으로 평균생산비용이 최저점이 아닌 수준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이를 두고 단순히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발현시키지 못함을 이유로 비효율(inefficiency)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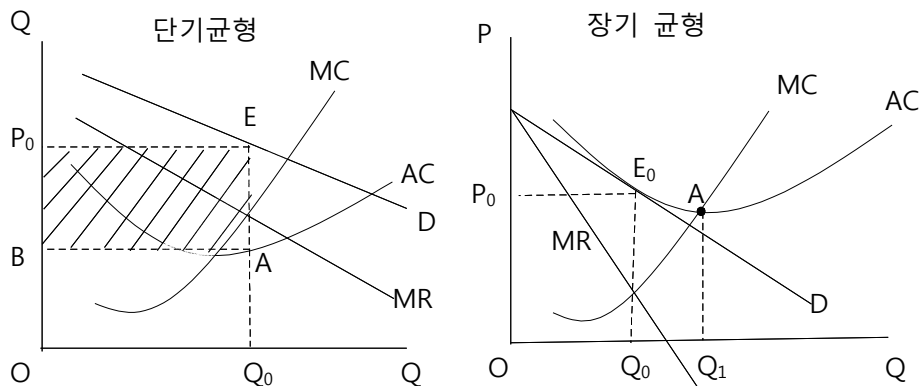
- 오히려 소비자선택권의 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적 비용 또는 일종의 무형투자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

-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규모제조면허 제품은 대기업이 조제·공급하는 기성형 제품과 경쟁·대체관계가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지향하는 시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
- 아래에서는 이해 증진을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을 이론모형으로 설명·분석

다. 제품 차별화와 소비자선택권의 확대: 후생 측면에서의 이론적 검토

- 균형(독점적 경쟁시장의 장·단기 균형)
- 단기균형: $MR=MC$ 에서 성립하고 (+)의 초과이윤 획득 가능
 - [그림 IV-1]의 왼쪽 그림 중 E점에서 단기균형이 성립
- 장기균형: (+)의 초과이윤 → 신규진입 → 낮지만 수요 대체 등을 통해 수요곡선이 하방(또는 좌측) 이동 → $P=AC$ 에서 장기균형([그림 IV-1]의 오른쪽 그림에서 E_0 점)
 - 만약 손실을 보는 경우 퇴출을 통해 수요곡선이 상방이동하여 종국적으로 초과이윤=0에서 균형을 회복([그림 IV-1]의 A점)

[그림 IV-1]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단기 균형



주: 단기균형, 초과이윤= $(P_0 - B) \times Q_0$ 장기균형, 초과이윤=0

- 장기균형에서 평균비용(AC)이 최저점인 경우(최적생산능력)보다 작은 규모에서 생산하고 균형이 성립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장기균형이 성립하였지만,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장기평균비용곡선보다 평균생산비용이 높은 점에서 장기균형이 성립
 - 따라서 장기균형에서는 도달가능 최저생산비용보다 높은 평균비용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상, 즉 생산효율이 가장 높은 $\overline{OQ_1}$ 보다 작은 수준($\overline{OQ_0}$)에서 생산
 - 상기의 차이(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overline{Q_0Q_1}$ 로 표시 가능)를 흔히 초과생산설비(excess capacity) 또는 “유휴설비”로 지칭
 - 평균생산비용이 최저점이 아닌 점에서 생산과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자원낭비”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으나, 독점적 경쟁시장에서의 초과생산설비는 “제품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에 대한 대가”로 해석하는 경향
 - “제품 차별화”는 소비자선택권의 확대라는 순기능을 가지므로 반드시 낭비적 요소로 보는 것은 부적절
 - 균형에서 $P > MC \Rightarrow$ 우하향 수요곡선 때문
 - 본질적으로는 제품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때문에 소비자기호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수요곡선이 수평이 아닌 우하향하게 되는 특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

- 그러므로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지닌 소규모 주류제조업자들의 평균생산비가 높은 것은 아래의 두 가지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추정
 - 하나는 소규모 생산설비로 인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 다른 하나는, 특정 기호를 지닌 소수의 소비자들로 형성된 틈새시장(niche market)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류제품을 공급하면서 제품 차별화에 대한 대가(price 또는 extra cost)를 치르면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의 생존전략을 전개하기 때문: 따라서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균형 특성이 발현
 - “초과생산설비(또는 유휴설비)”의 크기는 제품 차별화의 정도와 형태에 따라 차이가 천차만별

-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소규모 맥주제조업자(일명 micro-brewers)에 대한 세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소규모영세업자들의 보호 목적 외에도 전통주류 제품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도 많이 활용

라. 소결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기본 취지는 주세를 통한 두 가지 큰 정책기능(소비자효용 극대화, 음주의 외부불경제 축소) 중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통한 효용극대화에 충실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적정 범위 내의 규제는 타당성이 인정
 - 특히 일반주류제조면허와 구별하여 소규모제조면허를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소규모·다품종 주류제품 시장의 특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
- 아울러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도 틈새시장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의 육성 차원에서도 바람직
 - 제품 차별화를 통해 (주류)제품의 다양성 확대, 소비자후생 증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 다만 소규모주류제조업의 경우 시설규모와 시장규모·영역이 제한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충분히 향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품목·대량생산 방식으로 대변되는 대기업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의 제약 발생
 - 이와 같은 차이는 일반적으로 제품다양화·소비자선택권의 확대를 통한 소비자효용(후생)의 증진을 위해 투입된 일종의 추가비용적 성격을 지니므로 사회적 후생증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
 - 사회적 효용 증대 측면에서 장려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규모의 제한에 따른 비용상승분에 대한 세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범세계적 추세

2. 상표 용도구분 표시제 관련 정책의 타당성

- 주류 유통단계에서 과세정보의 축소·누락을 목적으로 하는 무자료거래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류제품 상표에 용도구분 표시를 의무화하여 시행 중
 - 용도구분 표시를 통해 주류제품의 용도의 사용 시 추적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류제품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
 - 이 자체는 주세의 세원관리와의 관련성은 적지만, 유통과정상 도·소매 및 음식점·유흥주점 사업자들 대상으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원관리의 적정화·정상화가 주된 정책대상이자 목적

가. 상표 용도구분 표시제 관련 현안

- 주류제품 상표에 용도구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상표 용도구분 표시” 의무제는,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담뱃갑에 흡연경고 문구와 그림을 표기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띠지만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존재
 - 담배제품 포장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이유는 흡연의 유해성을 알림으로써 흡연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외부불경제 대응정책적 차원”에서의 규제
 - 주류제품에도 음주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문과 함께, 일부에 대해 “상표 용도구분 표시”가 병기
 - 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에 의거 다음의 주종에 대해 상표 용도구분을 표시
 - 희석식소주, 맥주(소규모맥주 제외), 위스키, 브랜디: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
 - 그 외 주류: 가정용, 주세면세용
 - 단, 탁주, 약주, 청주, 지역특산주, 민속주는 적용 제외
 - 와인, 증류식소주 등 다품종·소량유통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면세용을 제외하고 용도구분 표시의무를 폐지 예정(2017년 중)
- (참고) 흡연의 중독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흡연억제 효과가 작고, 매우 장기에 걸쳐 흡연억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

- 그러므로 흡연억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험을 보면, 고세율 부과를 통해 장기적인 흡연억제 효과를 위해 시장기반을 다진 바탕 위에
 - 단기적으로 미약한 흡연억제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흡연장소 규제, 담배구입 연령 제한, 흡연 유해성 경고문구·그림 삽입 등의 보조적 규제제도를 활용
 - 흡연의 중독성 특성으로 인해 고율의 소비세를 부과하더라도 단기적 흡연억제 효과는 제한적
 - 다만 고율의 소비세는 경제력이 취약하고 예산제약이 심한 청소년 흡연을 저하에 효과적이고, 따라서 이들이 성인으로 진입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인흡연율이 저하되는 효과를 장기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특징
 - 이런 관점에서 고율 소비세와 흡연 경고문구·그림 부착 규제를 병행
- 주류 세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당국이 부담해야 하는 징세비용의 일부분
- 현행의 상표 용도구분 표시 의무제도는 납세의무자(주류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의 납세순응비용을 일부 증가
 - 상표 인쇄비 등에 대한 추가적인 한계비용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
 - 다만 생산·영업관리, 재고관리 등의 측면에서는 일부 비용 증가
 - 반품, 교환 등에 따라 타 용도로 재출고가 필요한 경우 상표를 교체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면서 주류 제조업자(수입업자 포함)의 비용부담이 증대
- 한편 한계비용은 상당히 낮은 반면 상표 용도구분 표시에 따라 소비자들의 감시·신고기능이 크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원관리 측면에서의 효과성·편의성 등 탈세방지 및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것이 특징
- 상표 용도구분 표시제는 주류 부정유통을 적발할 수 있는 소비자 감시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낮은 한계비용을 지닌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주류 부정유통 방지는 물론이고 탈세(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방지에도 효과적
- 그러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라는 경제원칙에 비추어볼 때 상표 용도구분 표시제는 경제원칙에 충실한 수단

- 다만 이 경우에도 한계비용은 0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규제의 범위와 수준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도 있는 만큼 실효성과 산업자율성 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최소한의 적정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조정방안을 모색할 필요

나. 타당성 검토

- 주류 용도구분 표시는 다소간 납세협력비용을 높이는 부작용도 있지만, 적은 비용으로 주류 부정유통 및 그로 인한 탈세 방지의 실효성이 높은 것이 특징
 - 그러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수준으로 범위를 좁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일부 대형매장의 경우에는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주류를 대량 구입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상존
 - 다만 그럴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형매장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대형매장용으로 용도구분을 표시하고 있지만,
 - 유통구조상 부정유통을 목적으로 대량 구입하는 사업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를 일정량 이상 구입하는 경우 주류판매기록부에 구입자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의무화
- 한편 해당 정보는 과세당국에 제공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실효성 있게 주류 대량구입자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아, 주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과세당국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
 -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신의·성실원칙에 의해 엄정하게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 순수 과세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그런 전제하에서는 굳이 “대형매장용”이라는 용도구분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주류판매기록부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게 된다면 대형매장을 통한 주류의 부정유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 밖에 소비비중이 미미한 주류는 원칙적으로 “면세용”의 용도구분만 제외하고 기타의 용도구분 표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맥주와 희석식소주와 같이 주류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 주종의 경우에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주류판매기록부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전제하에 대형매장용의 용도구분은 조건부로 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3. 주류 도매업면허제도 관련 정책의 타당성

- 주류제품은 여타의 재화·용역과 달리 분별 있는 음주·주류소비 문화를 지향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소비규제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
 - 그 중 하나가 세원관리의 적정성 확보라는 전제하에서 유통질서의 안정성·투명성 확보 및 주류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류 도매업 면허제도를 운용 중

가. 주류 판매업면허제도 관련 현안

- 주류 판매면허제도는 주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련 세목의 세원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세원관리의 기능을 수행
 - 주세는 제조장(수입품의 경우 보세구역) 반출단계에서 과세가 되므로 유통단계에서의 탈세 문제는 주세와 관련성이 없으나,
 - 유통단계에서 주류사업과 관련한 세원관리 문제는, 해당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에 대한 소득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 성격상 주류 소비(음주)에 의한 외부불경제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
- 현재 주류도매판매업면허는 크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면허요건: 자본금 5천만원, 창고 66m², 전업(專業) 조건 등)와 특정주류도매업면허(창고 22m²) 제도로 구분
 - 전자는 지역별 T/O제로 운영되고 있어, 면허 신규발급이 제한
 - 2000년대 이래 최근까지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총 1,200개 내외 수준을 계속 유지(<표 II-6> 참조)

- 면허 발급된 시군 경계를 벗어나면 영업장(판매장)의 설치가 불가
 - 그러나 주류의 판매는 경계를 벗어나도 무방
 - 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사실상 면허발급이 상당히 용이한 상황
 -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면 특별히 시장진입이나 퇴출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별다른 문제 없음
 - 특정주류도매업면허는 2000년대 이래 유효한 면허소비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소폭 감소 추세
 - 사실상 면허발급이 용이한 특정주류도매업면허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의 주류소비수준이 포화상태에 접근하였음을 암묵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으로 추측 가능
- 따라서 주류도매업면허제도와 현존하는 문제는 과세당국에 의해 면허의 신규발급 등이 제한되고 있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문제로 귀결
- 아래에서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중심으로 논의
-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지역별 T/O제 운영에 따라 사실상 시장진입이 저해되어 경쟁이 제한되는 한편, 협소한 영역의 시장에 대한 과당경쟁 제한을 통해 면허지역 내에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등의 여력을 확보해줄 수 있는 등 장·단점이 혼재된 상황
- 경쟁 제한의 잠재적으로 지역 독점을 통해 지역내 시장지배력을 발생시킴으로써 독점이윤 또는 판매자의 교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발생 가능
- 다만 면허지역을 벗어나더라도 주류의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타 지역 면허자의 지역내 판매장 설치가 불가할 뿐 유효경쟁이 존재하여 독점적 이윤과 시장지배력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
- 특히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비록 수적으로는 많지 않더라도 다수의 종합주류도매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유효경쟁이 높은 것이 특징

- 과점(oligopoly) 시장구조하에서 Bertrand 가격경쟁에 돌입할 정도로 유효가격경쟁이 치열할 경우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점(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이런 경우라면 굳이 신규진입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완전경쟁균형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국민경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유지·확보 가능

나. 타당성 검토

- 미시경제학 이론에 의거하면, 시장참여자의 수가 완전경쟁수준보다 많아지면 최저생산비용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면서 출혈경쟁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시장 퇴출이 발생
 - 이런 현상은 상당수의 자영업 분야에서 사업자들의 초과공급으로 인해 신규 창업자는 물론이고 기존의 자영업자까지 도산·파산하면서 위기상황이 벌어졌으며, 지금도 이런 문제는 현재진행형
 - 근본원인은 1990년대 말 이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수많은 인력이 실직·명예퇴직 등으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화물자동차, 택배, 택시(운전),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등에 진출하면서 초과공급으로 가격이 하락
 - 해당 시장의 경우 시장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급의 증가는 곧 수요량 증가효과보다 훨씬 더 큰 가격하락을 초래
 - 이는 자영업자들의 시장진출이 증가하였지만, 시장 전체의 수입총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면서 기존·신규를 불문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모두 크게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
-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작기 때문에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발급되는 지역경계의 구분이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타지역 면허업자와 잠재적 또는 실제적 유효경쟁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존재
- 양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

- 이는 주류 수요가 수요곡선 중 가격비탄력적인 영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을 시사
 - 이명헌·성명재(2002, <표 II-1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맥주, (희석식)소주, 위스키의 (미보상)가격탄력성이 각각 -0.94219, -0.39455, -1.29497로, 맥주와 소주, 특히 소주의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임을 시사
 - 주로 1990년대 및 그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최근에는 가격탄력성이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
- 이런 조건하에서 종합주류도매업자들의 추가적인 진출은 기존 면허업자는 물론이고 신규진출자에게도 공급 증가에 따른 공급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지역내 매출 규모의 총액 자체가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
-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시장의 성숙도(즉, 양적 포화도)와 주류 수요구조(가격탄력성, 수요군집성), 그리고 지역간 주류 소비시장에 대한 유효경쟁이 상당히 큰 상태라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제도에서의 지역별 T/O제는 면허 없는 지역에 대한 수송비 증가로 경쟁 제한의 부정적 효과가 존재하지만, 도시화로 인한 수요 군집 등으로 유효경쟁 수준 역시 높아 부정적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지역별 T/O제도가 신규 시장진입자가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
- 그러므로 현행 지역별 T/O제를 유지하면서, 점차 약화될 시장경쟁 제한 효과와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격오지 수요 비중, 신규 시장진입자에 대한 부담 등을 감안하여 조정을 검토할 필요
- 안정적 공급 필요성과 경쟁제한의 비용 등의 상대적 크기를 반영하여 주류 공급량의 지역별 분포와 유효경쟁 정도에 대한 세밀한 분석 필요

4. 현행 주세율 체계의 타당성

가. 증가세·종량세의 장·단점 비교

- 개별소비세(excise taxes)의 세율체계는 크게 증가세(ad valorem)와 종량세(specific tax)로 구분(혼합세 포함)
 - 증가세: 과세대상의 가치·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을 책정하는 체계
 - 종량세: 과세대상의 무게(질량), 부피, (단위당) 농도, 개수, 횡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세율로 책정하는 체계

- 서구 선진국에서는 주류, 담배, 유류 등에 대해 종량세 과세체계를 채택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종량세율을 물가수준 등에 연동하는 물가연동종량세 체계를 채택하는 국가도 다수
 - 상기의 3대 재정품목은 소비시에 외부불경제(예: 음주운전, 간접흡연, 대기환경오염, 교통혼잡 등)를 발생시키는데, 사회적 외부비용을 소비세의 형태로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할 때 종량세 형태로 많이 과세
 - 외부비용은 과세대상 물품의 가격·가치와 관계없는 경우가 많아 증가세보다는 종량세 체계로 많이 과세하는 경향

- 일반적으로 (특히 단일세율의) 증가세는 과세대상 물품의 상대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종량세는 고가의 물품일수록 실효세부담률이 작아지는 반면 저가품일수록 높아지는 것이 특징
 - 따라서 종량세는 사회적 비용을 세율에 반영하여 과세하면 외부불경제 시정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 저가품에 높은 실효세율이 발생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이 저해되는 것이 특징
 - 다만 저율의 종량세율 체계는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지 못하면서, 증가세 체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역진성 보완기능마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형평성·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음

- 우리나라에서는 유류세, 담배세 등에서 종량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주세는 종가세(단, 주정은 종량세) 체계로 과세
 - 우리나라에서 종가세 체계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 제고 목적이 중요시되었기 때문

- 그 밖에 종가세는 세율변동 없이, 과세물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결정되므로 세수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안정적인 반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경우 종량세는 물가상승률에 반비례하여 실효세율이 낮아지므로(즉, 감세) 장기적으로 세수확보에 장애 발생
 - 기타 장·단점은 <표 IV-1>~<표 IV-2> 참조

<표 IV-1> 종가세·종량세 체계의 장·단점 비교 1

	종가세	종량세
장점	① 세부담이 제품가격(품질)에 비례: 세수가 물가상승에 비례 ② 수직적 형평성에 기여 ③ 제품간 상대가격 유지 ④ 과세표준 방식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과세 가능	① 제품 특성(알코올도수)에 따른 과세 ② 과세행정이 간편 ③ 탄력 운용시 일정 세수 확보
단점	① 제품 특성에 따른 과세가 불리 ② 저가품(덤핑제품)이 유리: 제품고급화에 장애 ③ 가격 조작 가능성 ④ 가격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 환율과 국제가격에 민감	① 상대가격의 변화를 초래 ② 고가품이 유리 ③ 경직 운용시 실질세수 감소 ④ 수입품에 비차별적

원자료: 장근호(2005), <표 IV-5> p.32의 내용을 정리
 자료: 성명재(2017B)의 <표 3> 인용

<표 IV-2> 증가세·종량세 체계의 장·단점 비교 2

	증가세	종량세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례세로 과세되는 경우 상대가격 체계의 유지에 유리 ·물가수준에 관계없이 실효세부담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물가수준에 관계없이 실세 수 확보에 유리 ·상대가격 체계의 왜곡이 없어 자원배분에 중립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외부효과 내생화가 용이하여 “시장의 실패” 교정에 유리 ·가격에 관계없이 세부담의 최저한이 보장되므로 덤핑 방지에 효과적 ·증가세에 비해 저가의 재화·용역에 대한 실효세부담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억제 정책목표 달성에 유리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덤핑시 실효세부담 유지가 곤란(반덤핑 효과가 미미) ·외부효과가 가격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우 외부효과를 내생화시키기 어려움 ·과세대상 재화·용역에 대한 가치를 결정·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세율이 책정됨에 따라 과세 전·후의 상대가격 체계가 왜곡(소비자선택의 왜곡을 초래) ·가격수준에 관계없이 과세됨에 따라 정액과세시 저가제품일수록 실효세부담률이 높아짐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 현상이 발생하기 쉬움 ·물가연동제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단순 종량세율 체계는 물가상승시에 세수의 실질가치 유지가 곤란하여 장기적으로 세수부족 현상이 발생 ·실효세수를 확보 위해서는 주기적인 세법개정 또는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

원자료: 김은정·성명재·유종민(2016)의 <표 3-4> 재인용
 자료: 성명재(2017B)의 <표 4> 인용

나. 증가세와 종량세 주세체계 시행국가의 비교

- 범세계적으로 종량세 구조의 주세율 체계가 대세이고 증가세 체계의 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일부에 국한(<표 IV-3> 참조)
 - OECD 및 EU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종량세 과세체계를 채택
 - OECD 회원국 가운데에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칠레 등이 증가세를 채택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터키 등은 증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하여 적용

- 일부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종가세율 체계를 채택
 - 숫자상으로는 종량세 채택국가가 절대적·압도적으로 많은 상황
- 종가세율 체계와 종량세율 체계 중 어떤 방식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평가는, 어떤 과세기준과 정책목표를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적정 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매우 어렵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음
- 물가상승률이 높아 종량세율 체계로는 실효세율 유지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세부담의 형평 제고(즉, 역진성 보완) 기능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가세율 체계를 많이 채택
 - OECD(2016, p. 124)에 의하면, 멕시코에서 주세 종량세율 체계를 채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때문이라고 설명
 - 한편 음주의 폐해(예: 음주운전, 음주 관련 각종 질병과 그로 인한 의료비지출 증가, 노동력 상실 등)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축소하는 데 높은 비중을 두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량세율 체계를 많이 채택
 - 단, 예외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포도주(와인) 대량생산국에서는 와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별소비세(excises)를 과세하지 않음
 - 와인이 이들 국가의 전통주일 뿐만 아니라 주된 지역경제의 수입원이자 유망 수출산업으로서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대

<표 IV-3> 주세 종가세 채택 국가의 현황

(단위: %)

	과세체계	맥주	와인	증류주	
OECD	한국	종가세	72	30	72
	터키	종가세 (종량세 혼용)	63	종량세	종량세
	멕시코	종가세	26.5	26.5/30 (도수 기준 차등)	26.5/30/53 (도수 기준 차등)
	칠레	종가세	15	15	27
	이스라엘	종가세 (종량세 혼용)	종량세	0	75 + 20.98ILS/리터
중국	중국	종량세 (종량세 혼용)	종량세	10	20 + 1위안/리터
	홍콩	종가세	0	0	100
아프리카	베닌	종가세	10	10	10
	부르키나 파소	종가세	25	25	25
	부룬디	종가세	31 ~ 51(브랜드에 따른 차등 적용)		
	코트디부아르	종가세	8 ~ 30(브랜드에 따른 차등 적용)		
	콩고	종가세	20	20	40
	가나	종가세	30	-	25
	기니비사우	종가세	30	-	25
	케냐	종가세	85	45	100
	말라위	종가세	15	65	65
	말리	종가세	5	5	5
	니제르	종가세	25	45	45
	르완다	종가세	57	70	70
	세네갈	종가세	30	30	30
	토고	종가세	10	15	15
	우간다	종가세	60	60	60
잠비아	종가세	35	125	125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혼합세	15+7.40RM/리터	15+12.00RM/리터	15+30.00RM/리터
	캄보디아	종가세	25	10	10
	라오스	종가세	50	60	70
	미얀마	종가세	50	50	50
	태국	종가세	60	60	50
	베트남	종가세	45	25	45
중남미	아르헨티나	종가세	8	0	20
	우루과이	종가세	22	0	48
	콜롬비아	종가세 (종량세 혼용)	48	종량세	종량세
	페루	종가세	27.8	20.0	20.0
	볼리비아	종가세	0	5	10
	과테말라	종가세	6	7.5	8.5
	에콰도르	종가세	30	40	40
코스타리카	종가세	10	10	10	

주: 멕시코와 칠레는 중남미 국가이나 OECD 회원국이므로 OECD 란에 기재
 원자료: 한국주류산업협회(2016).
 자료: 성명재(2017A)의 <표 5>

다. WTO 주세분쟁을 통해 확립된 주세 과세원칙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소비세 부담의 역진성 보완 기능을 강조해온 전통을 이어 받아 주세 구조도 증가세 체계를 채택해온 것으로 추정
 - 1960년대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진 것도 종량세 체계에서 증가세 체계로 전환한 대표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추정
 - 이와 반대로 석유류의 경우에는 1996년 1월부터 증가세율 체계에서 종량세율 체계로 전환
 - 그 배경에는 당시 국제유가가 매우 불안정하게 등락을 보임에 따라 세수확보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이 세율체계 전환의 주요 요인 중 하나

- 증가세와 종량세 체계의 선택은 주권국가의 온전한 재량하에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권이 주어진 것으로서, 과세체계 선택과 관련된 조세주권은 분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확립된 WTO 규범

- WTO의 GATT 제3조 제2항에서 국내주·수입주 사이의 불공정 과세차별 문제에 대한 검토·시사점
 - 1990년대 이후 EU·미국 등이 주세제도가 수입주류를 차별하고 있다고 우리나라와 일본, 칠레 등을 WTO에 제소하여 WTO 주세분쟁이 진행되고 제소국이 승소
 - 특히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일본, 칠레 포함)의 주세제도가 국내주와 경쟁·대체 관계에 있는 수입주류에 대해 더 높은 주세율을 부과함으로써 GATT가 표방하고 있는 내국민대우 원칙과 비차별적 시장접근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결정
 - 특히 칠레·EU WTO 주세분쟁에서 패널은 증가세하에서 칠레의 증류주 내 주세율 차등이 GATT 제3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시

- 한·EU 및 한·미간 WTO 주세분쟁(1998년)의 결과 GATT 제3조 제2항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를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
 - 사실상의 제약점
 - 맥주, 와인류, 증류주의 3가지 주종간 세율 수준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
 - 증류주의 경우 사실상 주세율을 일치시키는 것이 제약조건

- WTO 주세패널 판결사항에서 GATT 제3조 제2항이 사사하는 주된 내용
 - 국내재와 수입재가 서로 동종제품(like products)으로 판정되는 경우 양자 사이에 어떠한 세율격차도 과세차별에 해당되므로 금지
 - 국내재와 수입재 사이에 경쟁·대체관계(competitive and substitutable)가 존재하며, 세율격차가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차별에 해당되므로 금지
 - 최소허용수준을 허용하는 만큼 경쟁·대체관계가 존재하는 수입주에 대해 국내주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 현실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차이의 허용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세율차등은 어려운 상황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 기술적으로는 상기의 주세패널 결정이 항구적인 사항은 아니며, 주세패널 판결이 단행되었던 시점의 시장여건이 구조변화를 통해 국내주와 수입주(이상 증류주) 사이에 더 이상 경쟁·대체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면 주세율의 차등과세도 가능
 - 그러나 시장환경의 변화방향이, 경쟁·대체관계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사실상의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이 우리나라에 있는 만큼 결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상황

라. 타당성 검토

- 종량세와 종가세 체계의 선택문제는 전적으로 모든 주권국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각국의 여건에 부합하는 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최적
 - 다만 한 가지, WTO 무역질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입재와 국내재 사이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국민대우’원칙과 ‘비차별적 시장접근’원칙이 보장되는 것이 기본전제

- 경제이론에 비추어볼 때 종량세와 종가세의 선택문제는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선택문제로 귀결

- 주세와 관련하여 ‘형평성’이란,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여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완화하거나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지칭
 - 일반적으로 가격에 관계없이 세율이 결정되는 종량세 체계에 비해 가격에 비례하여 세부담액이 결정되는 종가세 체계가 형평성 측면에서 종량세 체계보다 우월
 - 주세와 관련하여 ‘효율성’이란,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효용(편익)을 일치시키기 위해 음주 관련 외부불경제를 축소함으로써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
 - 음주의 사회적 외부(한계)비용은 일반적으로 주류제품의 가격과 관계없이 결정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세율에 반영할 수 있는 종량세 체계가 보다 바람직
- 이론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증적으로도 ‘형평성’과 ‘효율성’ 중에서 어떤 원칙이 다른 것보다 항상 더 우월하거나 지배적(dominant)인 원칙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경제적 필요성 등에 따라 보다 적절한 과세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
- 그런 관점에서 종량세와 종가세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평가하기보다는 현행 체계(즉, 종가세)하에서 실질적인 과세목적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또는 예상되는 부작용(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그런 관점에서 현행의 종가세 체계는 형평성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
- 전통적 서민주로서 소비비중이 높은 (회석식)소주와, (증류주라는 측면에서) 물성이 동일한 위스키와의 세전 상대가격 격차가 10배 이상(평균 기준)인 상황에서 세부담의 역진성은 종가세가 종량세보다 훨씬 우월
- 따라서 세부담의 형평성(역진성 및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보완) 측면에서 볼 때 현행의 종가세 구조의 주세율 체계는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평가

V. 효과성 분석



V. 효과성 분석

- 본장의 주된 목적은 주류제조(주로 주류(맥주)소규모제조면허 관련), 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 주류도매업면허 지역별 T/O제, 종가세 구조의 주세율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

1. 개요: 효과성 분석방법

-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상표 용도구분표시, 주류도매업면허제도와 관련한 효과성 분석은 특성상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 방법이 적절
- 주세 종가세율 과세체계의 효과성은 반례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의 방법으로 정량평가를 위주로 분석
 - 종가세율 체계를 채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高인플레이션율에 대응한 실세수 확보 기능과,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즉, 세부담의 역진성 보완 및 그를 통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 최소화)의 두 가지로 집약
 - 이 가운데 특히 과세의 형평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Ⅵ장의 개편방안에서 논의하는 사항 중 일부를 발췌하여 간략히 정량평가를 논의

2.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제도

- 소규모주류(맥주)제조면허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크게 규제 완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를 통한 소비자 효용과 사회후생수준의 증진·제고 기능과, (주류)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기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
 - 특히 후자는 제품 차별화를 통한 소규모·다품목의 소규모주류제품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류 틈새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 시장규모 활성화를 통해 소규모·영세사업자의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존재

가. 효과성 분석: 소비자후생의 증진 효과

-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제도의 도입은 [그림 IV-1]에서 보듯이 독점적 경쟁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제품 차별화·다양화의 결과를 가져다 주며, 이는 소비자들의 주류 선택권을 확대하여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킴
-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는 제약조건(constraints)의 완화를 의미하므로 후생수준을 (직·간접적으로) 증진시킴은 경제이론적으로 이미 입증 완료
- 그에 반해, [그림 IV-1]에서 보듯이,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증가가 효과는, (장기)평균생산비용곡선의 최저점이 아닌 점에서 최저생산비용이 아닌 상태에서 장기균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주장도 일부 존재
 - 그러나 이는 초과이익 및 초과비용이 모두 0인 상태에서 제품 차별화·다양화를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을 위한 비가시적인 비용의 성격을 지니므로, 여전히 자원배분의 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므로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제도의 도입과 지속적 시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규모주류제품 시장의 활성화와 제품 차별화를 매개체로 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를 통해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므로 정책의 효과성이 (직·간접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음

나. 효과성 분석: 주류(맥주)산업 활성화 효과

- (주류)산업 생산의 증진 효과는 주류(맥주)제조면허의 (보유)건수 추이로부터 확인 가능
 - <표 II-3>에 의하면 맥주 제조면허 건수는 2000년대 초 한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의 대형 제조업자들만 존재하였으나,
 - 2007년 99건으로 대폭 증가후 60~80건 사이에서 안정화

- 이런 결과는 소규모주류(맥주)제조면허 도입과 함께 (일반)맥주 제조면허의 시설 기준(담금·저장·제성용기 총용량)을 완화(2008년 8,125kl → 2,775kl, <표 II-7> 참조)를 통해 (맥주)제조시장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 데 따른 것
- 이는 맥주 제조면허 발급건수의 급증은 주류(맥주)산업 생산의 활성화를 시사
 - 만약 소규모주류제조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면 주류(맥주)제조면허 건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되었을 것
- 다만 소규모주류제조면허는 틈새시장의 확충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일반 주류(맥주)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주세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으로 추정
- 그러므로 소규모주류(맥주)제조면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산업생산 및 소규모 주류 제조업자의 출현 및 다양한 주류(맥주)제품 생산·유통·소비의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책의 유효성·효과성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3. 주류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

- 주류제품의 상표에 주류제품의 유통상 용도(예: 가정용 등)를 표시하는 제도는, 당해 유통단계 이외의 장소나 용도에서 소비되는 경우 식별(identification)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용도의 유통·소비의 적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 통상적으로 주류 유통·소비와 관련된 주류유통업, 음식업, 유흥주점업 등의 업종은 특성상 부가가치율이 높기 때문에 투입분 과세정보를 은폐·축소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의 탈루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기 쉽기 때문에 소득탈루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이들 업종의 경우 무자료 주류제품을 취급함으로써 과세자료·정보의 생산을 최소화
 - 상표에 용도구분을 표시하면 면세주류 또는 가정용, 일반소매점용 등의 주류제품이 음식·유흥주점 등에 부정유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 가능

- 주류제품은 물성상 음식업, 유흥주점, 일반소매점, 면세용 등의 구분 없이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용도구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부정유통 제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
 - 반면에 주류제품 상표에 용도구분을 표시하는 경우 용도의 유통·소비에 대한 식별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 음식점, 유흥주점 등에서 용도의 제품(주로 가정용이나 면세용 등)의 유통·소비가 원천적으로 방지·억제

- 사전적으로 상표 용도구분표시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드물지만 자칫 사업자들의 용도별 재고관리 비용이 일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동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상기 비용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 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는 주세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거의 없지만, 상표 용도구분표시를 위해 소요되는 한계비용이 매우 미미한 가운데 주류제품의 부정유통에 대한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탈루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극대화
 - 이는 제품 용기만 보더라도 부정유통 여부를 즉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만큼 주류제품 부정유통 방지·최소화 방안으로서 최적

- 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를 통해 주류 유통 및 세원관리 측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므로, 주류 관련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의 세원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평가
 -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의 세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매우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상표 구분표시 의무제를 통한 과표양성화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됨
 - 보다 중요하게는 주류유통구조의 투명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임

- 결론적으로 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는 용도의 주류제품 유통·소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 소요비용에 비해 효과성이 극대화된 상태인 것으로 평가

- 예전에는 상표 구분표시가 가정용 대신 유흥주점용 등으로 표시되고 가정용은 아무런 표시가 없었던 시절에는 음식점·유흥주점에서 표시가 없는 제품이 유통되더라도 부정유통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나,
- 최근 가정용 등으로 표시구분이 전환된 이후에는 가정용·면세용 등의 제품이 음식점, 유흥주점 유통이 사라진 상태로서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된 것으로 평가

4. 주류도매업면허 지역T/O제

- 현행 주세제도하에서 주류도매업면허는 시군별 지역T/O로 운용되면서 형식상 지정된 지역영역 안에서는 시장진입이 제한
- 그러나 도매업 면허제의 시행에 따라 판매장을 지정된 지역 외에 설치할 수 없을 뿐, 역외로의 주류판매는 여전히 허용되기 때문에 도매업 면허제를 통한 신규사업자 또는 역외 사업자에 의한 시장진입장벽은 상당히 느슨한 상태
 - 따라서 실질적인 시장진입과 경쟁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거나 유효한 상태
- 시장진입이 저해되면 경쟁제한에 따라 독점이윤(monopolistic profit)으로 불리는 초과이윤이 발생하여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
 - 도매업면허 등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쟁제한을 유발하므로 잠재적으로 기시장진입자(즉, 면허업자)들의 초과이윤을 향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류도매업면허는 상대적으로 좁은 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장 설치를 제외하고는 권역외 판매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경쟁의 제한 범위는 상당히 협소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 이는 주류도매업면허로 인한 시장진입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초과이윤 가능성은 그만큼 낮음을 시사

- 반면에 면허권역 외부로의 주류판매 허용으로 인한 잠재적 경쟁으로 인해 유효경쟁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일반적 기준에 의하면, 외부효과·외부성(externalities)이 없는 한 완전경쟁상태에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며, 예외적으로는 비록 시장참여자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유효경쟁이 극심한 경우 완전경쟁균형과 사실상 동일한 균형이 도달하기도 함
 - 현재의 주류도매업면허를 통한 상태가 이와 유사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

- 오히려 경제위기 이후 각종 인력구조조정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해 유희노동력의 공급이 급증하면서 창업붐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자영업 부문의 과잉공급으로 부도·도산·파산 등이 성행하는바, 역설적으로 주류도매업면허 제도가 과잉공급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
 - 신규진입자는 물론이고 기존 도매업자들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초과손실 및 그로 인한 유통업 몰락 가능성을 크게 높일 개연성 존재
 - 주류도매업면허는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규제함으로써 주류유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

- 주류도매업판매면허 제도의 경우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세수효과 등은 논의의 문제에 해당

- 다만 지역적 판매장 설치 제한의 대가로 요구되는 중소 수요지역에 대한 공급안정성의 필요성은 도시화로 인한 수요집중 등으로 줄어들 전망
 - 수송비 등 유통비용의 영향이 큰 격오지 등의 수요비중이 하락함에 따라, 지역별 면허제도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 필요성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제도의 효과성 정도도 하락할 전망
 - 주류도매업면허제도는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주류유통시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본래의 도매업면허제도의 정책취지(시장안정화 및 적정 세원관리 등)에 부합하고 있음

5. 주세 종가세 과세체계

-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종가세 체계를 기준으로 책정
 - 종가세 체계의 근본 채택이유는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실세수 확보 및 종량세의 역진성 보완 기능이 가장 큰 이유

가. 효과성 분석: 실세수 확보 측면

- 주세율 체계가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된 196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하였던 시기로,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는데, 물가수준에 따라 종량세율 수준을 적시에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
 - 종가세로 전환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세수가치 하락을 걱정하지 않게 됨으로써,
 - 주세의 실세수 확보 차원에서 종가세 체계의 효과성이 극대화
- 다만 최근에는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져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짐으로써 종가세를 통한 실세수가치 보장기능의 효과성은 반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가세 체계하에서는 추가적인 세제개편을 통한 세율조정 없이도 물가수준(가격변동)에 맞춰 실세수가치가 유지된다는 효과성은 그대로 유지
- 그러므로 종가세의 주세율 체계는 가격·물가에 중립적인 실세수가치 확보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

나. 효과성 분석: 세부담의 역진성 보완

- <표 VI-4>에서는 세수중립적 측면에서 증류주에 대한 종가세 → 종량세 체계로의 가상적 전환시 세부담의 형평성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줌
- 종량세는 주류제품의 세전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의 세부담이 책정되므로, 세전가격이 낮을수록 실효세부담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고가제품일수록 실효세부담률이 낮아지는 세부담의 불공평 현상이 두드러진 특징

- 위의 이론분석과 마찬가지로 <표 VI-4>의 모의실험결과에서 보듯이 세수중립적으로 과세체계를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경우 누진도 지수가 더 역진적인 방향으로 변화(Suits 지수: -0.15628 → -0.17105)하고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0.0344%에서 0.0375%로 소폭 확대

- 이는 종량세 체계가 종가세 체계에 비해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열악함을 의미
 - 따라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주류소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주류소비패턴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주세부담구조 자체는 소득에 대해 역진적이고,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 종가세 체계가 종량세 체계에 비해 역진성과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 크기가 조금 더 작은 것으로 분석

- 종가세·종량세 사이의 선택을 통한 세수영향은 과세체계별 세율수준의 문제이며, 종가세 또는 종량세 체계의 선택 자체만으로는 세수영향과 관련한 효과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세수영향은 논외로 함

- 그러므로 현행의 종가세율 체계가 세부담의 형평성(불공평) 측면에서도 종량세 체계에 비해 정책효과성(역진성 보완)이 높은 것으로 평가

Ⅵ. 효율성 분석



Ⅵ. 효율성 분석

- 본장의 주된 목적은 소규모주류(맥주)제조면허제도, 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도, 주류판매업도매면허, 주세 증가세율 체계가 소기의 정책목표를 수행·달성함에 있어 효율적인 제도와 방법으로 구성·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

- 범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주류의 생산·판매에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세원관리 및 분별 있는 주류 소비문화의 정착 등이 주된 이유
- 일반적으로 여타 소비재 등에 비해 개별소비세제(excise taxes)의 세부담 수준이 높은 주류의 특성상 탈세의 유인이 높다는 점에서 세원관리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주류제조의 면허제도를 시행
 - 특히 정보화·전산화가 미흡하였던 과거 시점에서는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소수의 대형사업자 위주로 주류제조면허를 허용·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
 - 그런 관점에서 다수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의한 주류제조면허제도를 허용하게 되는 경우 과거의 세정여건하에서는 주세 세원관리에 한계가 존재
- 최근에는 정보화·전산화가 진전되면서 세원관리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증대의 결과 주류소비패턴도 고도화·고급화 추세가 정착되면서 제품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선택권의 확대요구가 급속히 증대
 - 少품목·대량주류제품 위주의 기존 시장환경으로는 상기의 환경변화를 충족시켜주기 어렵기 때문에,
 - 다양한 소비자기호의 충족을 위해 소규모주류제조면허제도를 도입(2002년 맥주)
 - 2016년에는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탁주·약주·청주로 확대 도입

- 주류소비패턴의 고도화·고급화 추세가 더욱 진전되면서 최근 소비자 주류소비선택권이 더욱 다양화되면서 소규모주류산업의 생산과 제품의 다양화·차별화 및 산업경쟁력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
 - 특히 경제위기 이후의 각종 구조조정 및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 증가 등에 따라 자영업시장에서의 노동공급 증가현상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산업정책 및 노동정책적 측면에서의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 주류 틈새시장(niche market)의 확대를 통한 자영업 시장의 확대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도 소규모주류제품 시장의 확대가 긴급

- 그러므로 소규모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들 대상의 욕구충족 및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소규모주류제조자의 활성화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주류제조면허제하에서 주류소비자선택권 확대 및 소규모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규모주류제조면허제도의 도입이 유일하면서도 불가피한 상황
 - 따라서 소규모주류제조면허는 주류제조면허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조건하에서 동 제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일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정책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소규모주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시설기준을 변화된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소 상향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이에 대해서는 제Ⅵ장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함

2. 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

- 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도는 주류 유통구조상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소득세 등의 탈루를 목적으로 무자료 주류제품을 거래·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상표용도구분 표시
 -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 용도구분표시 생략 가능
 -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
 - 기타의 주류: 가정용, 주세면세용

-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서 매입 및 매출 누락을 위해 용도의 주류(예:가정용 또는 면세용 등)를 무자료로 거래·유통·소비하는 경우 소비과정에서 쉽게 용도의 주류제품의 확인·식별이 가능해지므로 탈세가 어려워짐
- 탈세를 목적으로 과세정보의 축소를 기도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데 주류 제품상표에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통한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의) 탈루·탈세 적발이 용이
 - 무자료거래 방지 측면에서의 정책 효과성에 비해 그에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거의 0원으로 매우 미미
- 그러므로 무자료거래 축소·방지 등을 위한 정책목표의 달성 측면에서 볼 때 상표용도구분표시 의무제는 가장 비용효율성이 뛰어난 정책수단
 -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
- 다만 동 제도는 주류사업자들로 하여금 용도별 주류제품의 수급불일치 현상이 발생할 때 재고관리 측면에서 다소의 비효율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효과성이나 (비용)효율성 등에 비추어볼 때 다른 어떤 정책수단보다도 우월
 - 주류제조·유통사업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준에서 용도구분 표시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3. 주류도매업면허제도

- 주류도매업면허제도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관리와 주류 유통시장 경쟁의 적정화 등이 주된 정책목표 및 기능
 - 적정 수준의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T/O제의 형태로 도매업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 이는 지역별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손실을 방지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세원관리 체계를 유지·관리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지역별 T/O제 시행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당해 지역 외에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권역외 판매는 자유롭게 허용되므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유효경쟁은 활성화

- 한편 우리나라 주류시장의 지리적 거리를 감안할 경우 지역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권역내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잉여(주로 공급자잉여; suppliers'surplus)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큼
 - 그러므로 과당·과잉경쟁에 따른 사회적 후생 방지 차원에서 현행의 T/O제는 세원관리의 적정화 효과와 함께 과당경쟁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방지·예방할 수 있는 장치

- 주류도매업면허제도의 지역별 T/O제 유지를 통해 과잉공급을 방지하는 것은 최근 폐업이 속출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개인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비용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됨
 - 1990년대말,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예퇴직자 등이 양산되고,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시기와 겹치면서 최근 노동시장 유입인구가 급증하면서 창업과 폐업이 속출하면서 상당수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는 현상이 발생
 -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한 퇴직자들이 창업시장에 몰려듦에 따라, 일시에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창업실패는 물론이고 기존 자영업자들의 영업실적도 하락하면서 신규진입자와 기존사업자들이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 발생
 - 이는 공급과잉의 결과로서, 자활을 위한 개인적 노력이 자신은 물론이고 시장기진입자들의 경제적 여건은 함께 악화시키기 때문에 과잉공급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
 - 이런 현상은 잠재적으로 주류시장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류유통업에서의 과잉공급현상 방지가 필요한 가운데, 정책수단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도매업)면허제도로써 신규시장진입 억제에 기여

- 지역별 T/O제로 인한 부정적 효과(경쟁제한 등)는 시장수요의 집중화 등으로 약화되고 있어 정책효율성은 과거보다 개선되는 상황

- 그러나 지역별 T/O제는 경쟁제한의 효율성 비용을 규모에 관계없이 부담할 수밖에 없음

4. 주세 증가세율 체계

- 일반적으로 주류는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인 수요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일부 고급·고가주의 경우에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매우 높지만,
 - 주류 전체를 놓고 볼 때 주류 수요는 소득비탄력적인 수요구조(income-inelastic demand structure)를 가짐
- 그러므로 소득계층별 주세부담은 역진성이 클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주세는 필연적으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특성을 보유
- 주세의 과세체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량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증가세 체계를 채택
- 종량세 과세체제는 화폐경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던 과거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물납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대에 와서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한계외부비용을 조세로써 피구후생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 한계외부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즉, 사회후생 극대화 수준)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할 때 종량세 형태의 세금을 채택
 - 이 경우 적정 수준의 종량세 과세체제는 외부불경제로 인해 초래되는 “시장의 실패” 현상을 교정하는 조세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한편 종량세 과세체제는 가격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세금액이 결정되므로 저가품의 실효세율이 고가품보다 무거워지는 특징을 나타내어 세부담의 역진성 및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

- 종가세 체계는 가격에 비례하는 세율구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과세하는 경우 세전·세후의 상대가격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준다는 의미에서 외부성이 없는 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유지해준다는 장점을 지님
 - 종량세 체계와 달리 세부담액이 과세대상의 가치·가격에 비례하므로 재분배 중립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종량세 체계에 비해 세부담의 역진성 보완 기능이 큼
 - 다만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초래되는 한계외부비용이 과세 대상 물품가격에 비례하지 않는 한 외부불경제로 인해 초래되는 “시장의 실패” 현상을 교정하는 것은 부적절
 - 그런데 한계외부비용은 가격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종가세 체계로는 외부불경제 교정이 어려움

- 세부담의 역진성 보완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소득지원, 가격보조 등의 방법이 있으나, 방법론상 적정성은 물론이고 이론적으로도 논란이 많을 뿐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비용비효율적
 - 상기 방안들은 모두 세부담 역진성 보완을 위해 최종소비단계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 저가주류제품에 대한 세부담 환급 또는 보조금 지급 등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가 소요되는 만큼 많은 협력비용(compliance cost)과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이 소요
 - 반면에 종가세 과세체계는 추가비용 없이 세부담의 역진성을 최소화
 - 따라서 주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납세협력비용·행정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종가세 체계가 가장 효율적 수단인 것으로 평가

- 그러므로 세부담의 역진성 보완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보완 기능은 현행의 종가세율 체계가 가장 효율적·효과적인 정책수단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따라서 종량세와 종가세 가운데 주세부담의 역진성 보완기능이 우월한 종가세 체계를 선택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채택

- 다만 상기의 결론은 주세 기능 중 세부담의 형평성 보완기능을 우선시하는 현재의 암묵적 정책기조를 반영한 데 따른 결론이며, 만약 주세의 정책기능을 외부불경제 축소·시정 등의 방향으로 선회하는 경우에는 다른 결론이 가능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

Ⅶ. 제도 운용 및 검토·개선방안



VII. 제도 운용 및 검토·개선방안

- 본 장에서는 제Ⅲ~Ⅴ장의 타당성 분석 효과성 분석, 효율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및 기대효과, 적정성 등을 논의함

1. 주류 시장 관련 현안이슈 검토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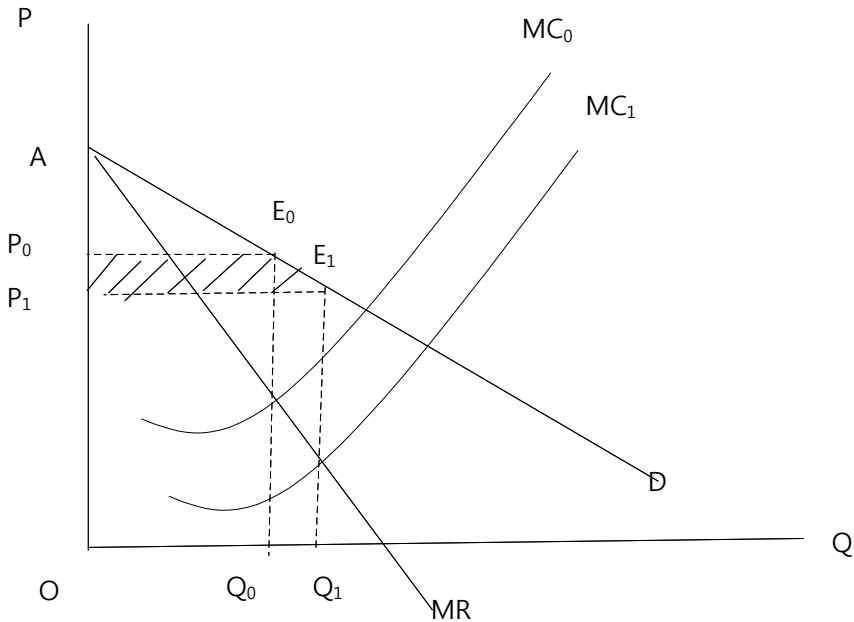
- 선진국의 주류 규제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대별 가능 (조성기·백진욱, 2010 참조)
 - 경제적 규제란 주로 주세(세금 및 부담금 포함) 부과, 세원관리, 제조·유통면 허제도 관리 등을 지칭하며, 관리(주체)는 대부분 재무부와 국세청 등을 비롯한 과세당국이 담당
 - 사회적 규제란, 주류 판매장소, 판매시간, 정부전매제도, 음주허용연령, 판매장소별 판매주종 규제 등 주류소비·음주 관련 규제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보건당국이 담당
- 최근 선진국에서 주류 관련 규제 동향은, 주로 생산·유통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주류소비 관련 규제는 강화하는 경향
- 제조·유통규제의 변화 요인
 - 산업정책적 고려: 주류산업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권·경쟁력을 강화
 - 정보화·전산화 등의 진전에 힘입어 세원관리 역량이 크게 개선·강화됨에 따라, 세원관리 인프라가 부족하였을 시절에 규정되었던 규제의 필요성이 감소

- 세원관리·주류 품질관리의 용이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조·유통면허제도, 시설 기준 등의 규제를 엄격하게 설정
 -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를 출현
 - 경쟁을 제한한 결과 시장 기진입자들은 경제적 지대(예: 초과점이윤 획득 등)를 수취

- 이와 같은 기존의 시장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면허제도 실시, 시설규모 규제 등을 통해 형성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로소 경제적 지대의 축소·소비자후생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 이런 맥락에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유통단계의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반대로 소비단계의 규제는 강화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예를 들어 강력한 면허규제 또는 주류제조시설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면, 신규주류 제조자들의 시장진입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주류 공급이 제한되고 시장 경쟁도 약화(또는 시장 기진입자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초과이윤(독점이윤에 의한 경제적 지대)이 발생
 - 소수의 제조·판매면허자들로 시장이 운영되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시장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기에서도 독점적 경쟁기업의 초과이윤은 사라지지 않고 지속
 - 독점적 시장지배력은 결과적으로 초과이윤만큼 소비자후생을 축소
 - 시설기준을 완화하거나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등의 활성화를 통해 잠재적·명시적 시장진입을 증가시키면,
 - [그림 VII-1]에서 보듯이 공급 확대 및 그를 통해 소비자후생이 증가($\Delta AP_0E_0 \rightarrow \Delta AP_1E_1$, 순증 규모: $\square P_0P_1E_1E_0$)

[그림 VII-1]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시장진입 증가에 따른 소비자후생의 증가



- 주류소비 측면에서의 규제 강화 필요성
 - 음주로 인한 폐해 및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규제의 관점으로 규제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들어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규제의 필요성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음주 관련 사회적 비용의 유형: 음주 관련 질병 및 노동력 손실, 음주운전사고, 음주 관련 가정폭력·불화, 주취폭력 등

- 음주 관련 사회적 비용의 증가 요인
 - 인건비 상승
 - 소득효과로 통해 주류소비량(음주량) 증가
 - 자동차의 급속한 보급 확산에 따른 음주운전의 급증
 - 기타 인력손실, 의료비 증가, 가정불화, 폭력 증가 등

나. 주류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주류 면허제도 개편의 필요성

- 주세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주류제조면허 관련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
 - 가장 근본적 변화는 정보화·전산화의 진전에 따른 세원관리 환경의 발전, 음주 관련 사회적 비용의 비약적 증가, 소비자 음주기호의 변화 등

- 정보화·전산화의 발전에 힘입어 과세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지고 정보축적 및 징세 기술 발전이 거듭되면서 관리자(과세당국) 중심의 세원관리 체계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세원관리 체계로의 이행 필요성이 증대
 - 종전에는 세원관리의 편의성과 효율화를 위해 관리자 중심의 소품종·대량유통(주로 소수의 대기업 중심) 주류 중심으로 제조·유통면허 제도 등이 운용
 - 정보화·전산화의 발전과 함께 납세의식도 제고되면서 규제의 범위·수준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
 - 특히 경쟁을 통한 시장기구의 자원배분 효율성 원칙과 규제(제조·유통면허 등)를 통한 적절한 세원관리 사이의 상충관계가 지속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증가

- 최근 소비생활 패턴이 고급화·선진국화·대중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의 사회적 비용 또한 비약적으로 증가
 - 특히 알코올중독과 건강악화 등에 의한 손실, 음주 관련 각종 사고, 폭력, 가정불화 등 음주 관련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분별 있는 음주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음주 억제 필요성이 확산
 - 음주 억제를 위해 조세(소비세)와 직접규제를 통한 이원적 노력이 필요

- 주류산업도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하나의 건설적인 산업이므로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한편, 음주 폐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소비단계에서의 무분별한 주류 소비문화에 있는 만큼, 양자를 모두 고려할 때 제조·유통단계의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느슨한 소비단계의 규제는 강화할 필요
 - 특히 이런 방향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편 움직임이 세계적인 추세

- 우리나라가 선진경제에 진입하면서 소비자들의 기호가 급속히 서구화·고도화·다양화되면서 대중적인 소비기반을 지닌 대중주를 선호하던 시장 분위기에서 벗어나 회소성과 개인의 주관적 취향에 맞춘 기호품 주류(주종)으로 주류 소비패턴이 변화
 - 이에 발맞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지닌 소규모주류제조자들이 소비자 기호에 맞춰 다양한 주류제품을 개발·생산·공급하면서 기호주류제품을 중심으로 주류 틈새시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
 - 이는 소비자선택권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곧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정리하면, 소품종·대량유통 주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종전의 주류시장 환경이, 최근 다품종·소량유통 주류시장으로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포괄하는 형태로 다양화·다각화 양상을 보이는 상황
 - 정보화·전산화, 자료 축적 및 정세기술 발전·납세의식 고양 등에 힘입어 세원·세정관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자신감 상승과 함께
 - 규제완화를 통한 주류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생산가능영역(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을 확대하고,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통해 사회후생가능영역(social utility possibility frontier)을 확대할 필요
 - 다만 주류 소비(음주)의 외부비용 억제 필요성으로 인해 최종소비단계에서의 각종 규제(소극적으로는 고세율 부과, 적극적으로는 판매시간·장소, 판매주종 제한, 음주 및 주류판매 허용연령 등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

다. 주류제조면허 관련 현안: 정책방향 및 기대효과

- 현재 주류 제조면허는 일반 면허와 소규모제조면허로 이원화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제도는 2002년 맥주를 대상으로 최초 도입
 - 2016년부터 탁·약·청주로 면허 범위가 확대
 - 여타 주종에 대해서는 소규모제조면허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잠재적인 문제의 소지를 내포

- 시설기준(제조용기 용량 등)의 차이가 일반면허와 소규모제조면허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

- 경제적 관점에서 차이점을 논한다면 과표설정 방식과 세경감 허용 여부(소규모제조면허 대상) 등이 두드러진 차이
 - 그 밖에 유통경로(특히 맥주 관련)도 상호간에 차이가 존재
- (소규모주류제조면허) 기본적으로 제조시설 용량이 작은 경우 그만큼 매몰비용(sunk cost)이 작기 때문에 제품 차별화·다양화에 유리
- (장점) 급변하는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기 쉬운 구조
 - (단점) 다만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어렵고, 또한 제품 차별화의 대가로 유희생산설비(excess capacity)를 가지게 되는 문제점 발생
 - 흔히 소규모제조자가 제조한 주류제품의 생산단가가 (대기업에 의한) 일반 제조면허 제조자가 제조한 주류제품의 생산단가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대부분 여기에 기인
- 현행과 같이 주류제조면허의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양자를 통합·단일화하면 제도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유리하고, 소규모제조자가 생산시설 규모 증대를 통해 일반제조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경우 문턱효과를 낮출 수 있어 시장진입 장벽 완화에도 유리
- 그 밖에 소규모주류제조업자들의 활동범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제조면허의 시설기준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현재의 시설기준(맥주 기준 75kl 미만)이 작지 않은 만큼 당분간 소규모 제조자 기준범위의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
- 제조면허를 일반 면허 vs. 소규모면허로 구분하는 것은 면허·세원관리상의 차이점(예: 과세표준 설정방식과 세경감률 등)에 의한 것인데, 양자를 별개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생산규모(시설량 기준) 구간별로 일반·소규모제조자의 여부를 자동구분하고, 세율·과세표준 산정 기준 등을 달리 규정해놓으면, 하나의 울타리 안으로 통합하더라도 불필요한 혼란의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이 경우 제조면허상의 연속성으로 인해 소규모주류제조자가 규모를 키워 일반제조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일반·소규모 제조면허를 통합하더라도 영세·소규모제조업자들의 세경감 혜택에 대한 혜택은, 선진국의 경우처럼 세경감 대상 제조자를 소규모제조자

로 한정하고, 세경감 혜택의 수준과 범위를 생산량 기준으로 상한(upper limit)을 두어 차등 적용(주요 선진국의 예: <표 III-2> 참조)

□ <표 III-2>에 의하면, 맥주 소규모제조자에 대한 주세를 경감해주고 있는 10개국 기준으로 경감주세율은 정상세율의 대략 50~90% 수준

○ 정상세율 대비 소규모맥주 제품의 연간생산량별 경감세율의 범위

- 오스트리아: 60~80%
- 벨기에: 87~99%
- 체코: 50~90%
- 에스토니아: 50%
- 핀란드: 50~90%
- 독일: 55~84%
- 헝가리: 50%
- 라트비아: 50%
- 룩셈부르크: 50~57%
- 슬로바키아: 74%

○ 현행 우리나라의 세경감비율(즉, 과세표준 경감률)이 시설규모별로 20%, 40% 또는 60%인 것은 여타 OECD 회원국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추정

□ 다만 주류제조 관련 일반면허와 소규모제조면허를 통합하되 시설규모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를 구분하더라도, 보완적으로 소규모제조자가 원할 경우 일반면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이 바람직

□ 제조면허의 통합 및 신축적 운용을 통해 주류제조시장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진입장벽 완화와 그를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대가 기대될 것으로 예상

<표 VII-1> 외국의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세율 적용 현황

	100리터당 abv에 따른 일반세율		소규모 독립 양조업자에 적용되는 저세율			저알코올 맥주 (2.8% abv미만)에 대한 100리터당 주세		VAT	알코올 강도에 따른 소비세 누진성 여부
	자국 통화	USD	연간 생산(hl)	자국 통화	USD	자국 통화	USD	%	
호주	각주 참조 ¹⁾							10.0	예
오스트리아	5.00	5.55	<12,500	3.00	3.33	-	-	20.0	아니오
			<25,000	3.50	3.88				
			<37,500	4.00	4.44				
			≤50,000	4.50	4.99				
벨기에	5.01	5.56	≤12,500	4.36	4.84	-	-	21.0	아니오
			≤25,000	4.50	4.99				
			≤50,000	4.65	5.16				
			≤75,000	4.79	5.32				
≤200,000	4.94	5.48							
캐나다	각주 참조 ²⁾							5.0/13.0/14.0/15.0	예
칠레	각주 참조 ³⁾							19.0	아니오
체코	80.00	3.25	≤10,000	40.00	1.63	-	-	21.0	아니오
			≤50,000	48.00	1.95				
			≤100,000	56.00	2.28				
			≤150,000	64.00	2.60				
			≤200,000	72.00	2.93				
덴마크	56.02	8.33	≤3,700	각주 참조 ⁴⁾	0.00	0.00	25.0	아니오	
			≤20,000						
			≤200,000						
에스토니아	8.30	9.21	≤3,000	4.15	4.61	-	-	20.0	아니오
핀란드 ⁵⁾	32.05	35.57	≤5,000	16.03	17.79	8.00	8.88	24.0	아니오
			≤30,000	22.44	24.90				
			≤55,000	25.64	28.46				
			≤100,000	28.85	32.01				
프랑스	7.41	8.22	≤200,000	7.41	8.22	3.70	4.11	20.0	아니오
독일	1.97	2.19	≤5,000	1.10	1.22	-	-	19.0	아니오
			≤10,000	1.32	1.47				
			≤20,000	1.54	1.71				
			≤40,000	1.65	1.83				
그리스	6.50	7.21	≤200,000	3.25	3.61	-	-	23.0	아니오
헝가리	1,620.00	5.80	≤8,000	810.00	2.90	-	-	27.0	아니오
아이슬란드	각주 참조 ⁶⁾							11.0	예
아일랜드	22.55	25.03	각주 참조 ⁷⁾					23.0	아니오
이스라엘	231.00	59.43	-			각주 참조 ⁸⁾		17.0	아니오
이탈리아	7.60	8.44	-			각주 참조 ⁹⁾		22.0	아니오
일본	각주 참조 ¹⁰⁾		-					8.0	아니오
대한민국	각주 참조 ¹¹⁾		-			각주 참조 ¹¹⁾		10.0	아니오
라트비아	3.80	4.22	≤10,000	1.90	2.11			21.0	아니오

	100리터당 abv에 따른 일반세율		소규모 독립 양조업자에 적용되는 저세율			저알코올 맥주 (2.8% abv미만)에 대한 100리터당 주세		VAT %	알코올 강도에 따른 소비세 누진성 여부
	자국 통화	USD	연간 생산(hl)	자국 통화	USD	자국 통화	USD		
룩셈부르크	1.98	2.20	≤ 50,000	0.98	1.09	-	-	17.0	아니오
			≤ 200,000	1.12	1.24	-	-		
멕시코	26.5% ¹²⁾		-			-	-	16.0	예
네덜란드	각주 참조 ¹³⁾		-			-	-	21.0	예
뉴질랜드	27.20	18.97	-			각주 참조 ¹⁴⁾		15.0	아니오
노르웨이	각주 참조 ¹⁵⁾		-			-	-	25.0	예
폴란드	19.48	5.17	각주 참조 ¹⁶⁾			-	-	23.0	아니오
포르투갈			각주 참조 ¹⁷⁾					23.0	예
슬로바키아	3.59	3.98	≤ 200,000	2.65	2.94	-	-	20.0	아니오
슬로베니아	12.10	13.43	-			-	-	22.0	아니오
스페인	각주 참조 ¹⁸⁾		-			각주 참조 ¹⁸⁾		21.0	예
스웨덴	194.00	23.02	-			-		25.0	아니오
스위스	각주 참조 ¹⁹⁾		-			각주 참조 ¹⁹⁾		8.0	예
터키	0.63	-	-			-		18.0	아니오
영국	18.37	28.09	각주 참조 ²⁰⁾			8.10	12.39	20.0	아니오
미국			각주 참조 ²¹⁾			-			아니오

주: 1) 호주: 48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개별 용기 - 알코올 함량 ≤ 3%: 알코올 리터당 47.85호주달러/알코올 함량 > 3%: 알코올 리터당 47.85호주달러; 48리터를 초과하는 개별 용기 - 알코올 함량 ≤ 3%: 알코올 리터당 8.21호주달러/3% < 알코올 함량 ≤ 3.5%: 25.73호주달러, 3.5% < 알코올 함량: 33.70호주달러. 알코올 함량이 1.15%를 초과하는 분부터 과세되기 때문에, 알코올 함량이 1.15%를 초과하지 않으면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이러한 과세는 201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며, 매년 2월과 8월 물가지수에 연동됨.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맥주 양조업체는 주세의 6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3만호주달러임(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Excise-and-excise-equivalent-goods/In-detail/Brewery-refunds/>)

- 2) 캐나다: 주세는 생산된 제품의 100리터당 부과됨(알코올 함량이 아님). 지방정부는 통상적으로 연방세보다 더 큰 추가세를 부과함. 연방세는 1) 2.5% ≤ 알코올 함량: 100리터당 31.22캐나다달러, 2) 1.2% ≤ 알코올 함량 < 2.5%: 100리터당 15.61캐나다달러, 3) 알코올 함량 < 1.2%: 100리터당 2.591캐나다달러가 부과되나, 일정 생산량까지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됨
- 3) 칠레: 알코올음료의 판매는 19%의 부가가치세와 부가세(surtax)가 부과됨. 맥주에 대한 주세는 20.6%이며 알코올 함량에 따라 부과하지 않고 판매가격(부가가치세 제외금액)에 주세가 부과됨
- 4) 덴마크: 독립적인 소규모 양조업자에게 생산량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2.8% 미만 알코올 함량의 맥주에 대해 주세가 비과세됨. 연간생산량이 3,700hl 이하인 경우: DKK 77.08/hl 연간생산량이 3,700hl 초과 20,000hl(X)이하인 경우: DKK 259.939/(X + 6.83)적용됨
- 5) 핀란드: 알코올 함량이 0.5% 미만에 대해 비과세
- 6) 아이슬란드: 리터당 알코올 함량 % abv에서 2.25센티리터를 차감 후 센티리터당 ISK112 과세. 즉, 2.25% abv 미만은 비과세됨

- 7) 아일랜드: 연간 3만리터까지 소규모 독립 양조업자에게 주세의 50%를 환급함. 저알코올 맥주에 대해서는 비과세(알코올 함량 \leq 1.2% abv) 또는 11.27유로(1.2% abv <알코올 함량 \leq 2.8% abv)로 과세됨
- 8) 이스라엘: 100리터당 ILS231로 과세되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변경됨. 2% 미만(재활용 병이 사용되면 3.8%)의 알코올에 대해서는 비과세됨
- 9) 이탈리아: 알코올 함량 0.5% 미만에 대해 비과세됨
- 10) 일본: 제품 100리터당 22천엔으로 부과. 13,000hl의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는 면허 최초 5년간(임시조치) 2,000hl에 대해 hl당 187백만엔의 경감세율 적용
- 11) 대한민국: 주세는 출고가의 72%로 과세되며, 주세의 30%가 교육세로 부과됨
- 12) 멕시코: 가격에 따라 과세되는데, 14도루삭(Gay-Lussac:GL)까지 26.5%, 14도GL에서 20도GL사이는 30%, 20도GL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53%가 적용됨
- 13) 네덜란드: 100리터당 알코올 함량 \leq 7디그리플라토: 8.83유로, 7디그리플라토 <알코올 함량 \leq 11디그리플라토: 28.49유로, 11디그리플라토 <알코올 함량 <15디그리플라토: 37.96유로, 15디그리플라토 이상 \leq 알코올함량: 47.48유로. 소규모 양조업자에게는 2천만리터까지 알코올 함량에 따라 8.83유로에서 43.92유로까지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14) 뉴질랜드: 2.5% abv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 27.870뉴질랜드달러, 1.15-2.5% abv에 대해 41.797뉴질랜드달러, 1.15% abv 미만은 비과세됨
- 15) 노르웨이: 생산제품 100리터당 a)0.0-0.7% abv: 비과세, b)0.7-2.7% abv: 327크로네, c)2.7-3.7% abv: 1,229크로네, d)3.7-4.7% abv 2,129크로네로 과세되며, 4.7% 이상의 맥주에 대해서는 알코올 함량당 476크로네로 과세됨
- 16) 폴란드: 소규모 양조업자에 대해 2백만리터 이하의 판매시 100리터당 생산량에 따라 30줄로티에서 9줄로티까지 공제허용하고 있으나, 공제금액은 기본세율 적용시 과세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17) 포르투갈: 100리터당 a)0.5-1.2% abv는 7.98로, b)1.2% abv부터 7디그리플라토까지 10.00유로, c)1.2% abv 이상 7-11디그리플라토까지 15.95유로, d)1.2% abv 이상 11-13디그리플라토까지 20.00유로, e)1.2% abv 이상 13-15디그리플라토까지 23.99유로, f)1.2% abv 이상 15디그리플라토를 초과시 28.06유로를 적용하며, 포르투갈은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연간생산량 200,000hl)에 대하여 기본 세율의 50%만 적용
- 18) 스페인: 100리터당 a) \leq 1.2% abv: 비과세, b)1.2-2.8% abv: 2.75유로, c)2.8% abv-11디그리플라토: 7.48유로, d)11-15 디그리플라토: 9.96유로, e)15-19 디그리플라토: 13.56유로, f)19디그리플라토 < : 디그리플라토당 0.91유로로 과세됨
- 19) 스위스: 100리터당 저알코올맥주(10.0 디그리플라토까지): 16.88프랑, 일반적 및 특수 맥주(10.1-14 디그리플라토): 25.32프랑, 독주(14.1 디그리플라토초과): 33.76프랑으로 과세되며, 소규모 양조업자(55,000hl)에게 40%까지 저세율 부과(한도 15,000hl)
- 20) 영국: a)1.2% abv미만은 비과세, b)1.3-2.8% abv에 대해 £8.42의 저세율 부과, c)7.5% abv를 초과하는 경우 £5.69가 일반세율에 추가 부과되며,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에게는 생산량에 따라 일부 경감이 이루어짐
- 21) 미국: 가중평균 연방 및 지방 주세율은 100리터당 22달러임

원자료: 세법연구센터, 『조세동향』 2015년 제1호, pp. 44-46 참조;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p. 131~135.

자료: 세법연구센터(2017)의 <표 II-1> 재인용.

2. 소규모맥주제조면허 관련 개편방안

가. 주류시장의 환경변화

- 본래 주류 제조면허의 기본취지는, 주세 및 주류 관련 세원관리의 적정화·효율화, 주류 품질 유지를 위한 규제, 분별 있는 주류소비문화 정착 등
 -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발전·소득증대에 따른 국민건강 보건위생에 대한 관심과 음주 폐해에 대한 국민경제적 경각심 고조, 전산화 및 납세의식·징세기술 발전에 따른 세원관리의 원활화, 주류 제조기술의 발전 등의 제반 환경이 급변
 - 이에 따라 주세제도도 변화된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

- 세무자료 전산화·정보화의 급진전은 주세 세원관리상 “규모의 경제” 효과를 향상시켜 중·소 주류제조자에 대한 세원관리의 편의성·효과성 향상에 기여
 - 이와 같은 세원관리 역량의 상승·증대는 주세의 납세의무자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주세 세원관리를 충분히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상승을 의미
 - 주류제조자의 주류 품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다수의 중·소 주류제조자가 출현하더라도 주세 세원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시사

- 전통적 주류에 대한 수요는 물론이고, 소득증대에 따라 소비자 기호가 다변화되면서 주종 다양화·고급화 등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증대
 - 주류제조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후생 증진 차원에서 소규모·다품종 주류 제품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

- 따라서 적절한 주세 세원관리가 전제된다는 전제하에서 다수의 소규모·다품종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원활히 충족시켜줌으로써 사회후생의 증대가 가능
 - 공급자 중심(즉, 소수의 대형의 주류제조자 대상)의 주세 세원관리에서 벗어나 시대적으로 수요자 중심(즉, 기존 납세의무자 + 다수의 중·소형 주류제조자 대상)의 세원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

-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주류제조시장의 유통경로 확대, 시설기준, 세경감(또는 과세표준 경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이는 소규모 주류제조시장의 확대를 통해 달성 가능

나. 소규모주류제조 면허 관련 개편방안

1) 소규모맥주제조면허 유통범위 조정시 주세 과세표준 개편문제

- 현재 소규모맥주제조면허 보유자(제조자)의 맥주제품 유통범위는 면허소지자의 영업장으로 제한되며 일반소매점에서의 유통·판매가 금지
 - 주류도 소비를 통해 소비자에게 효용을 주는 만큼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진이 바람직
 - 소규모 주류제품의 경우 특정 기호를 지닌 소수의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기호 품으로서, 현재에는 소규모제조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만 소비(음용)가 가능
 - 그러나 이는 소비자선택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향
 - 그러므로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생산하는 소규모맥주의 유통범위는 현재의 제조자 영업장 내에서 일반소매점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
 - 이 경우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에 대한 개편도 함께 요구됨
 - 현재 소규모제조자의 영업장 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의 110%를 기준으로 산정
 - 영업장 판매가격은, 제조장 반출가격과 소매주점의 이윤 등이 혼재된 상태
 - 따라서 영업장 판매가격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과도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원가의 110%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
 - 만약 소규모맥주의 일반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반출가격(소규모제조자의 일반 소매점 판매가격)이 구분되어 파악되므로, 이 경우에는 통상가격, 즉 반출가격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산정

- 소규모제조자 영업장 판매분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제조원가의 110%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
- 이는 결과적으로 주세 과세표준의 이원화를 의미

□ 소규모맥주 주세 과세표준의 이원화 필요성

- 소규모제조자의 주세 부담 회피·축소를 위한 전략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원화가 필수적
- 만약 반출가격을 주세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단일화하면, 일반소매점에 제조원가의 110%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량(미량) 공급함으로써 전체 주세부담을 축소·회피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굳이 소매점 판매가 이윤극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업장 내 판매 소규모맥주의 주세부담 축소를 목적으로 원가 이하로 극소량 일반소매점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따라서 이런 현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의 이원화가 필수적

2) 소규모맥주제조면허 시설기준 개편방안

- 현행 소규모맥주제조면허의 시설기준(저장·담금조의 용량 기준)은 5~75kl
 - 소비자 기호의 다각화·다양화 및 소량·고급화 등의 추이를 고려할 때 다수의 소량·다품종 주종(제품)의 개발·보급이 요구
 -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소규모맥주의 공급조건 관련 규제가 상당히 높은 편

□ 그러므로 소규모맥주제조 시설기준의 확대를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 및 산업정책적 차원에서의 주류산업의 발전방향 제시가 긴요

- OECD 주요국의 소규모맥주 주세 경감세율 기준(주로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연간 맥주생산량 최대한도(상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5천kl, 1만kl 또는 2만kl가 많은 편
 - 다만 경감세율 적용 상한(연간생산량 기준)이 1만kl 또는 2만kl인 국가의 경우에도 마지막 구간의 세율경감률은 대체로 10% 또는 그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감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연간생산량 한도의 차상위 최대적용기준은 대체로 4천kl 또는 5천kl 수준

- 그러므로 실질적인 경감세율의 최대 적용 한도는 대체로 5천kl라고 보아도 무방

□ 실질적 의미에서 소규모맥주제조 범위를 5천kl, 맥주의 최소제조기간(발효기간, 단 병입후 숙성기간은 제외)을 대략 2주 정도라고 가정하면, 연간 최대 25~26회 제조가 가능하므로, 소규모맥주제조의 저장·담금조의 실질적인 시설용량기준은 대체로 200kl 내외로 추정 가능

- 그런데 서유럽의 경우 일반 수질이 좋지 않아 음용수의 대응으로서 맥주를 소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유럽 국가의 실질적 시설기준(대략 200kl 수준)을 25~40% 정도 할인하면, 소규모맥주의 시설기준은 120~150kl 수준 정도로 환산이 가능

- (참고) 우리나라의 현행 시설기준은 75kl(상한)으로서, 상기 수준은 현행 수준의 4.6~2배 수준

□ 서유럽국가와 우리나라의 물리적 여건(환경) 차이(주로 수질문제 등)를 감안할 때 소규모맥주제조면허의 시설기준(상한)을 현행(75kl)보다 다소 상향조정하는 방안(1.6~2배 범위 사이)의 검토 가능

□ 맥주제조시설의 규모의 경제 특성을 감안할 때 생산규모가 제한적인 소규모맥주 제조는 특성상 제조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환경적 제약이 존재하므로 선진국에서 주세를 경감해주며, 우리나라도 주세 과세표준을 경감함으로써 주세 부담을 경감해줌

- 만약 소규모맥주제조 시설기준을 확대하면 세경감 구간도 조정이 필요(하기의 '3)'목 참조)

3) 소규모맥주제조면허 과세표준 경감방안

□ 소규모맥주제조면허의 과세표준 경감은, 시설기준의 확대방안과 연계하여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

□ 과세표준 경감 구간의 산정기준: 연간생산량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

○ 연간생산량 상한(한도)의 산출산식:

- 최대시설기준 × 연간최대생산 횟수 × 평균가동률 × 생산회당 평균생산량비율

○ 가정

- 최대시설기준: 상기의 '나'항 참조시 시설기준 120kl 또는 150kl

- 연간최대생산 횟수: 25회(1회당 2주 소요 가정, 2주는 유지보수기간 가정)

- 평균가동률: 50%

- 생산회당 평균생산량비율: 50%/회(1회 생산시 생산시설의 50% 분량을 생산)

○ 세경감 상한구간

- 시설기준 120kl의 경우: $120\text{kl} \times 25\text{회} \times 0.5 \times 0.5/\text{회} = 750\text{kl}$

- 시설기준 150kl의 경우: $150\text{kl} \times 25\text{회} \times 0.5 \times 0.5/\text{회} = 937.5\text{kl}$

• 이 경우 구간의 단순화를 위해 900kl 또는 1,000kl로 조정

• 제도 단순화 측면에서는 1,000kl가 바람직

○ 세경감률(과세표준 경감률)은 현행의 3단계를 유지하되, 각 경감구간은 최대상한의 1/3씩 구분

○ 세경감률은 구간별로 현행과 같이 60%, 40%, 20%를 상정

□ 1안: 시설기준 120kl시

○ 연간생산량 과세표준 경감률

250kl 이하 60%

250 초과 500kl 이하 40%

750 초과 750kl 이하 20%

□ 2안: 시설기준 150kl시

○ 연간생산량 과세표준 경감률

400kl 이하 60%

400 초과 700kl 이하 40%

700 초과 1,000kl 이하 20%

〈표 VII-2〉 소규모맥주제조 관련 개편방안 모음

	현행	개편방안
유통범위	(일반) 소매점 유통 가능 (소규모) 소매점 유통 불가	(통합) 소매점 유통 가능 (단, 소규모맥주제조의 경우 과세표준은 소매점 공급시 반출가격, 소규모제조사 영업장의 경우 현행(제조원가의 110%) 방식을 이원적으로 적용)
시설기준	(소규모) 저장·담금조 75kl 이하	(소규모) 120kl 또는 150kl 이하
과세표준 경감률 (세경감률)	(중소기업) 300kl 이하 통상가격의 30% 감면 (소규모) 100kl 이하: 60% 감면 100 초과 300kl 이하: 40% 감면 300 kl 초과: 20% 감면	(1안: 시설기준 120kl 기준) 250kl 이하: 60% 감면 250~500kl 이하: 40% 감면 500~750kl 이하: 20% 감면 (2안: 시설기준 150kl 기준) 400kl 이하: 60% 감면 400~700kl 이하: 40% 감면 700~1,000kl 이하: 20% 감면

3. 주세율 체계 개편방안의 적정성 검토

- 최근 일부에서 증가세 체계하에서 알코올도수별로 주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현 및 국제분쟁 가능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

가. 알코올도수 차등 증가세율 체계로의 전환 주장

- 최근 일각에서 알코올도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주종별로 세율을 구분하고 있는 주세율 체계를 동일 주종 내에서도 알코올도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한 주장과 논의가 제기
 - 고알코올주의 소비억제 및 저알코올주로의 소비대체를 통한 음주 폐해의 저감·축소가 주된 목적
 - 이 방안이 실현되면 결과적으로는 저가주 위주의 국내주류제품의 세부담이 고가의 수입주류보다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

- 자유무역질서를 존중·보호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로 지칭)에서 확립된 합의내용과 원칙에 입각해볼 때 원칙적으로 경쟁·대체관계(competitive and substitutable)가 존재하는 경우 수입재에 대해 국내재보다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을 초과하는 세율 차이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WTO는 만약 동일제품(like-products)이라면 수입재에 대해 국내재와 어떠한 세율격차(내국세 해당, 관세 등은 적용 제외)도 금지
 - 이에 우리나라는 1998년 한·EU 및 한·미간 WTO 주세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주세가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수입주류(위스키, 보드카 등)를 차별하고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패소

- WTO 주세패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이론적으로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세율 차등이 가능하다는 논란이 가능
 - 이에 근거하여 알코올도수 차등(또는 비례) 증가세율 체계로의 전환·개편 주장이 대두
 - 그러나 WTO에서는 최소허용수준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증가세 체계하에서 알코올도수 비례 세율방안의 논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문제는 과거 우리나라와 칠레의 주세제도가 EU(미국)로부터 불공정과세라 하여 WTO에 제소되고, WTO 주세분쟁에서 모두 패소하였던 판례를 살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음
 - 칠레·EU간 WTO 주세분쟁 등의 판례에 입각해볼 때 말이 좋아 최소허용수준이지 사실상 거의 동일한 세율수준을 요구함에 주목할 필요
 - ※ 참고: EU로부터 WTO에 제소되어 패소하기 전, 칠레는 알코올도수별로 주세 증가세율을 차등하는 주세제도를 가지고 있었음

-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개편할 경우 이미 20세기말 국내주류(희석식소주)와 수입주류(주로 위스키 등) 사이에 불거졌던 국제분쟁(한·EU 및 한·미간 WTO 주세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
 - 따라서 아래에서는 상기 방안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적정성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

나. WTO 주세분쟁 결과에 입각해본 국제분쟁 및 실현 가능성 검토

- 1998~1999년에 걸쳐 EU와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수입주류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하였고, 이어서 진행된 한·EU 및 한·미간 WTO 주세분쟁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하였음
 - WTO 주세분쟁에서 패소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차별적인 주세율 체계를 개편하도록 요구
 - 의무 이행을 위해 2000년 1월 1일부터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율을 일치시키는 세계개편을 단행

- 한·EU 및 한·미간 WTO 주세분쟁의 주요 판결내용 요약
 - 1999년 한·EU 및 한·미간 WTO 주세분쟁에서, 1심 재판부 판결문(Report of the Panel)과 상소심 재판부(Appellate Body) 판결을 통해, 한국의 주세제도가 (소주 보호를 목적으로) 불공정하게 위스키를 차별하고 있으며, GATT 제3조 제2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판결

- WTO 주세패널의 판단근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
 - 국산재와 수입재 사이에 경쟁·대체관계(competitive and substitutable)가 존재하는지의 유무
 - 경쟁·대체관계가 있다고 할 때 과세(세율 등)의 차이가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 WTO 주세패널은 기타 동종제품(like products)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었으나, 경쟁·대체관계가 존재하고 세율격차가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굳이 동종제품 여부를 따지지 않았음

- WTO 주세패널의 판결 핵심내용
 - 한국 시장에서 소주와 위스키 등 수입증류주는 경쟁·대체관계가 존재하며,
 - 소주와 수입주류(위스키) 사이의 세율격차가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을 초과하므로
 - 결론적으로 수입주류를 차별하고 있다고 판결

- 소주와 보드카 등이 동종제품(like products)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대체·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유사한 과세를 해야 하는데 유사하지 않은 과세(dissimilar tax)를 적용하고 있다고 판결
- WTO 주세분쟁에서 논쟁이 된 부분은 GATT 제3조 제2항에 대한 위배 여부(성명재·장근호, 1999, p. 50 참조)
 - 동종제품의 국내재와 수입재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 것
 -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해 국내재와 유사하지 않은 과세(dissimilar tax)를 금지
 - GATT 제3조 제2항은 결과적으로 공정경쟁의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함을 시사
- 결과적으로 WTO 주세패널과 상소심은 우리나라의 주세가 GATT 제3조 제2항의 두 번째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결
 - 이는 결과적으로 GATT 체제 아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두 가지 원칙, 즉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과 비차별적 시장접근원칙(non-discriminatory market access principle)에 우리나라 주세가 위배된다는 결론을 도출
 -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소주와 위스키 사이의 세율격차를 철폐하는 이행조치를 할 것을 판결
- 한·EU 및 한·미간 WTO 주세분쟁에서 주세패널이 판결한 내용에 의하면,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소주와 위스키 등 수입증류주에 대한 주세율(교육세 포함)의 차이가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 판결의 근거
 - 그러나 주세패널은 최소허용수준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음
 - 당시의 소주 주세율(교육세 포함)이 38.5%, 리큐르 55%, 보드카 등 104%, 위스키 등 130%인 점을 들어 이런 차이는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한다고만 판시
- 상기의 결과만 보면 종가세 체계하에서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최소허용수준의 범위 내에서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율을 국내주류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결론을 도출 가능
 - 그런데 칠레·EU간 WTO 주세분쟁에서 알코올도수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종가

세율을 차등화한 칠레의 주세가 GATT 제3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
(성명재·장근호, 1999; pp. 152~159 참조)

- 동 분쟁은, 한·EU 및 한·미간 WTO 주세분쟁 직후 진행된 것으로 칠레의 주세가 수입주류를 차별하고 있다고 판결
- EU는, 종가세는 (병당)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체계이며, 알코올도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와 본질적으로 과세구조와 기준이 다른 과세체계임을 강조하였는데,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WTO 주세패널의 판례를 놓고 볼 때, 비록 종가세 체계하에서 최소허용수준을 의미하는 종가세율 차이의 최소허용범위가 얼마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종가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은 국제분쟁 야기 가능성 및 WTO 제소시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움

다. 알코올도수별 종가세율 차등화 방안의 논리적 타당성 및 적정성

- 알코올도수에 비례하여 주세 종가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은, 일견 음주 폐해에 대응하여 국민보건·건강 증진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편이라는 것이 제안자들의 주된 논거
- 그런데 상기의 주장은 다음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취약
 - 음주의 폐해는 고알코올주를 음용하였는지, 저알코올주를 음용하였는지도 중요하지만,
 - 알코올 총음용량과 훨씬 더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음
 - ※ 니코틴(타르) 함량이 낮은 담배를 흡연하는 사람은 니코틴(타르) 함량이 높은 담배를 흡연하는 사람보다 흡연량이 더 많아, 니코틴(타르) 흡입량은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음
 - 마찬가지로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어떤 알코올 함량의 주류·주종을 마셨는지 보다는 총알코올음용량 수준이 더 중요
 - 저도주 음용량이 고도주 음용량보다 더 많고, 따라서 총알코올 섭취량의 차이는 음용량 차이보다 격차가 훨씬 작은 것이 일반적

- 종량세율은 기준알코올도수의 단위부피당 주세액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히 알코올도수별로 주세종량세액을 차등화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주세액이 알코올도수에 비례
 - 증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므로 알코올도수에 따라 증가세율을 차등화하더라도 주세부담액은 알코올도수에 비례하지 않음

- 그러므로 명분은 알코올도수 비례세율 체계 확립을 통해 음주 폐해 축소·저감효과를 주장하지만 이는 알코올도수가 아니라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가 차등화되는 만큼 본래의 정책의도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
 - 주세와 관련해서는 종량세의 기본구조가 본래 특정 알코올도수 기준의 단위 부피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체계를 기준으로 하는 데 반해,
 - 증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원리이자 원칙
 - 가격 이외의 다른 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價格을 따라 稅金을 정한다”는 증가세의 취지에 벗어남

- 음주의 폐해와 같은 외부불경제로 인해 야기되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세, 즉 소위 피구후생조세는 한계외부비용만큼 종량세 세율로 책정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
 - 음주의 외부불경제 시정 목적의 주세율 부과가 목적이었다면 종량세 구조의 소비세가 적절하며,
 - 증가세의 소비세는 “시장의 실패” 교정적 조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 왜냐하면 음주의 폐해로 인한 외부불경제(외부비용)은 소비재(주류)의 가격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알코올음용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 그러므로 증가세 체계하에서 알코올도수 비례 세율체계 방안은 조세이론 및 논리적으로 적절성과 타당성이 빈약·취약한 것으로 생각됨

라. 종가세 과세표준의 적정성: 국내재·수입재의 비교

- 종가세 체계로 과세되고 있는 우리나라 개별소비세제(주세 포함)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제조장 반출가격(국내재) 또는 관세 포함 수입가격(수입재; 즉 보세구역 반출가격)으로 구성
 - 이 경우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는 소수의 대형 제조자(생산자)들로 구성되어 납세협력비용·징세비용이 최소화되고, 투명성·간편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탈세 방지 및 세원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
 - 소비세의 특성상 이론적으로는 최종소매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현실에서는 탈세 증가, 세원관리의 어려움, 납세협력·징세비용 급상승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 현재 종가세 체계하에서 제조업자가 광고·홍보·관측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생산비용의 일부에 포함되면서 과세표준 구성항목에 포함
 - 그러나 제조업자가 아닌 유통·판매업자가 상기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주세)의 과세표준에 불포함
 - 수입재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제조·수출업자가 국내재의 생산자에 해당
 - 수입업자는 일종의 판매·유통단계의 도매업자·판매업자로 볼 수 있음

- 상기의 행동양식의 차이로 인해 일부 국내 주류제조업자들이 국내재·수입재 사이에 주세 과세표준의 구성항목 차이로 인해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 국내재의 과세표준에는 제조자의 광고·홍보 및 관측비용, 이윤 등이 포함되는 반면 수입품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비용이 제외된다고 주장
 - 그에 기반하여 개별소비세제의 과세표준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일부 주류제조업자들 사이에서 주세 과세체계의 종량세 전환, 도·소매단계로의 과세단계 개편, 종가세 과세표준 구성항목의 나열 등을 주장

- 그런데 개별소비세제 과세표준 구성항목 차이의 본질은, 제조자들의 영업·판매활동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제조자의 행동양식에 기인하는 사항이며, 조세제도 자체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상황

- 즉, 광고·유통, 판촉행위를 제조자가 아닌 유통업자가 수행하는 국내재의 경우에는 동 비용이 과세표준에 불포함
 -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양자 사이의 과세표준 구성항목의 차이에 대한 주장은 상당 부분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식 차이에 기인
- 일부 제조업자들이 국내재·수입재 사이의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주장과, 그에 대응한 개편방안 주장은 다음의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종량세 과세 전환 문제: 동 문제는 음주의 외부불경제를 반영하여 주세체계를 정비할 것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국내재·수입재 사이의 과세표준 구성항목 차이 해소에 대한 논거로 사용하기에는 후자의 동기가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논리상 적절하지도 않음
 - 도·소매유통단계로의 전환 문제: 납세협력비용·징세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세원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탈세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적절
 - 종가세 구성항목의 조정: 본질적으로 모든 과세표준 구성항목을 나열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효과적·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규정상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광보·홍보·판촉비용, 이윤 등을 회계적으로 악용하여 과대계상하여 탈세하는 경우 대처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 개별소비세제 과세기반: 제조장반출가격·관세 포함 수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주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개별소비세제 전반에 걸친 공통의 일반원리로서 제도상 효과성·효율성이 높는데, 근본체계를 흔들만큼 문제점이 크지 않으며, 문제의 본질도 제도가 아닌 제조자 행태에 의한 것이므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
- 종량세 체계하에서 가격요소와 관계없이 세부담이 결정되므로 종량세로 전환하면 상기의 논란이 해소되지만, 종량세·종가세 체계의 선택 문제는 그보다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단순히 과세표준 구성항목의 차이 여부만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

마. 주세율 구조의 종량세율 체계 전환시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언

1) 모의실험 개요

□ 참고적으로 본 항에서는 증류주를 기준으로 주세 세수중립적 종량세율 체계 전환 방안에 대한 기대효과를 검토함으로써 동 방안의 적정성을 점검하면서 향후 장기적으로 주세율 체계를 종량세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 장·단점 비교와,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논의

- 일각에서 세수중립적 관점에서 종량세율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주세율 체계를 종량세 구조로 전면(또는 부분적으로라도) 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
- 결론적으로 동 방안은, 종량세율 전환의 최대 정책목표인 음주의 사회적 비용 억제효과를 얻지 못한 채 일부의 고가수입주류(위스키, 브랜디 등)에 대한 주세액만 대폭 인하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만 초래
- 이유는 음주의 사회적 비용에 비해 주세수입이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세수중립적 개편으로는 음주의 사회적 비용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수준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
 - 따라서 표면적 명분은 세수중립적 종량세율 체계로의 전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가주의 세율인하 방안이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

□ 세수중립적 종량세 체계 전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4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모의실험을 시행하였으며, 분석의 편의 모도를 위해 다음을 가정

- 가정
 - 세율구조가 변화하더라도 소비자들의 행태는 불변
 - 주세 세수중립적 개편은 증류주만을 대상으로 시행
 - WTO 규정에 의거해볼 때 맥주, 와인류, 증류주 각각에 독립적인 종량세율 부과가 가능하므로,
 - 종량세율 설정시 알코올도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맥주와 와인류는 종량세로 전환하더라도 현행 세부담과 거의 동일
 - 반면 알코올도수 차이가 큰 (희석식)소주와 위스키는 세율 변화가 크기 때문에 주세의 세수중립적 개편은 증류주 대상 세수중립적 개편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지님

- 증류주 내에서의 종량세율은 증류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희석식소주와 위스키의 두 주종을 기준으로 설정
- 알코올도수: 희석식소주 20%, 위스키 40%

□ 주세부담의 산출(추정)

- 가계동향조사자료에 조사된 각 가구의 주종(탁주, 맥주, 희석식소주, 양주(주로 위스키), 기타 주류의 다섯 가지)별 소비지출액 조사자료로부터 역산하여 주세 과세표준과 주세(교육세 포함) 부담액을 추정
- 소비지출액의 구성: 제조원가(주세 과세표준), 주세, 교육세, 유통마진(25% 가정), 부가가치세율(10%)
- 여기서 주세부담액이란 일반가계가 구입한 주류 직접구입분에 대한 것만 고려
 - 따라서 음식점, 유흥업소 등에서 소비한 주류에 포함된 주세부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추정방법의 소개) <표 VII-3>의 주종별 출고량과 납부할 세액 통계로부터 2014년의 희석식소주와 위스키의 1리터당 주세액을 산정

- 희석식소주와 위스키의 알코올도수 차이가 1:2(=20%:40%)이므로, 알코올도수 차이를 감안하여 제품 1리터당 종량세액을 1:2의 비율로 설정
- 현행 종가세 체계하에서 산출된 각 가구별 주세부담액과, 증류주 내 세수중립적 개편을 통한 종량세 부담액을 비교

2) 모의실험 결과

□ <표 II-2>의 주세 과세현황 통계표로부터 주요 주류의 현행 주세 체계하에서의 제품 1리터당 주세액 평균치를 추정하면 <표 VII-3>의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음 (2014년 실적치 기준)

- 알코올도수를 무시하고 제품 1리터당 현행 주세부담액 평균은 희석식소주와 위스키가 각각 약 1,189.1원과 9,570.0원으로 후자가 전자의 약 8.05배로 비쌈 (2014년 기준)
- 2015년의 경우에는 약 7.84배(=9,614.4원÷1,225.9원) 수준

<표 VII-3> 주요 주종별 과세실적과 단위당 주세액

(단위: 백만원, kl, 원/리터)

		2014년		2015년	
		납부할 세액	출고량	납부할 세액	출고량
맥주		1,568,691	2,173,472	1,608,517	2,208,808
희석식소주		1,138,898	957,818	1,171,369	955,523
위스키		172,174	17,991	167,310	17,402
리터당 증가세액 평균	맥주	721.7443		728.2285	
	희석식소주	1,189.0547		1,225.8930	
	위스키	9,570.0072		9,614.4121	

- 주: 1. 저자 추정치 기준
 2. 납부할 세액과 출고량은 <표 II-2>에서 추출
 (원자료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희석식소주의 알코올도수가 20%, 위스키 40%를 기준으로 할 때 동량의 제품에 대한 주세 종량세액은 후자가 전자의 2배 수준
- 종량세율 체계로 전환하여 희석식소주와 위스키 사이의 상대가격이 변하더라도 소비대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주세 세수중립적 개편을 위한 종량세액을 산정하면 희석식소주와 위스키의 리터당 종량세액은 각각 1,319.25원과 2,638.50원임
 - 현행 주세액(각각 1,189.05원, 9,570.01원) 대비 증감률은 각각 +10.95%와 -72.44%
 - 즉, 희석식소주 세율은 소폭 상승하는 반면, 위스키 세율은 대폭 하락

<표 VII-4> 희석식소주와 위스키의 증류주 세수중립적 종량세율 추정결과

(단위: 원/리터, %)

		2014년 기준	2015년 기준
환산종량세액(A)	희석식소주	1,319.25	1,351.75
	위스키	2,638.50	2,703.51
현행 증가세액(B)	희석식소주	1,189.05	1,225.89
	위스키	9,570.01	9,614.41
B 대비 A의 증감률	희석식소주	+10.95	+10.27
	위스키	-72.44	-71.88

- 주: 1. 저자 추정치 기준
 2. 알코올도수: 희석식소주 20%, 위스키 40% 기준

□ 그 결과 증류주 세수중립적 개편의 종량세율 전환시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주세 부담은 6.9% 증가(12,915원 →13,808원)하는 반면, 고소득층(소득 10분위)의 주세 부담은 3.9% 감소(56,038원 → 53,837원)(<표 VII-5> 참조)

- 희석식소주의 세율인상으로 모든 소득계층의 소주 세부담이 증가하지만,
- 위스키에 대한 주세율 인하에 따른 주세경감 효과는 대부분 고소득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의 주세부담은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주세부담은 증가

□ 이는 증가세율 구조보다 종량세율 구조의 소비세 과세체계가 재분배적 관점에서 세부담의 불공평도가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표 VII-5> 소득계층별 가구당 주세부담 분포의 변화효과

(단위: 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총주세	현행	12,915	20,786	28,232	37,736	37,060	37,008	45,580	47,659	51,526	56,038	37,454
	종량세	13,808	21,817	28,911	38,687	37,562	36,965	45,802	46,929	50,424	53,837	37,475
소주 주세	현행	8,571	11,972	13,032	15,593	11,340	11,348	13,843	11,881	12,555	11,830	12,197
	종량세	9,510	13,283	14,459	17,301	12,582	12,591	15,358	13,182	13,929	13,125	13,532
위스키 주세	현행	63	387	1,096	957	1,022	1,775	1,786	2,803	3,419	4,826	1,813
	종량세	17	107	302	264	282	489	492	773	943	1,331	500

주: 저자추정치 기준

□ 소득계층별 주세 부담분포는, 절대 세부담액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크지만 소득 대비 주세율 부담률은 고소득층일수록 작아지는 역진적인 세부담 분포 구조를 지닌 것이 특징(<표 VII-6> 참조)

- 그에 따라 세부담의 누진도를 나타내는 Suits 지수가 음(-)의 값을 가짐
-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경우 Suits 지수의 절댓값이 소폭 증가하여 세부담의 역진도가 조금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
- 아울러 주세부담 후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도 2014년 기준으로 0.31970에서 0.31971로 미미하지만 소폭 상승하여 소득분배 격차를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

※ Suits 지수는 세부담의 누진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짐. 0이면 중립적(소득비례적), 음수(-)이면 역진적, 양수(+)이면 누진적임을 의미함. 절댓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역진도 또는 누진도가 더 커짐을 시사

<표 VII-6> 증류주 세수중립적 종량세율 개편의 누진도 및 소득재분배 효과

(단위: 지니p, %)

	지니계수				누진도지수
	가처분소득(A)	가처분소득-주세(B)	B-A (C)	C/A (%)	Suits 지수
현행	0.31959	0.31970	+0.00011	0.0344	-0.15628
종량세	0.31959	0.31971	+0.00012	0.0375	-0.17105

주: 1. 2014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기준

2. Suits 지수는 세부담의 누진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짐. 0이면 중립적(소득비례적), 음수(-)이면 역진적, 양수(+)이면 누진적임을 의미함. 절댓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역진도 또는 누진도가 더 커짐을 시사함.

3) 정책시사점

- 현행 주세 세수를 기준으로 증가세율 체계를 종량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은 결과적으로 저가증류주인 희석식소주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고가수입증류주(위스키 등)의 세율을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으로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안
 - 효과 측면에서 보면, 종량세율 체계 전환에 따른 외부불경제 축소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고가의 수입증류주만 세율이 대폭 인하되어 수입주류의 시장점유율만 증대시킬 가능성이 농후
- 따라서 일각에서 세수중립을 전제로 하는 증가세 → 종량세 체계 전환 주장은, 비록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더라도, 본래의 종량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음주 억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고가주 세율 인하 및 저가주 세율 인상을 통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역진성 강화 및 국내주류 산업 위축)이라는 역차별 현상만 증대될 것으로 예측
- 종량세 구조로 세율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의 의미는, 음주의 사회적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주세를 부담시킴으로써 외부비용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한편, 가격효과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주류 소비를 감축하는 것을 의미
 - 사회·경제적 적정 수준의 주류 소비량: 음주의 사회적 편익(한계효용)과 사회적 비용(총한계비용 = 주류 생산 관련 한계비용 + 음주의 한계외부비용)이 일치하게 되는 수준의 소비량 수준

- 음주의 외부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 경쟁시장에서의 균형소비량은 사회·경제적 적정수준보다 소비수준이 더 큼

- 음주의 사회적 비용은 정영호·성명재(2009, p. 27)에 의하면 연간 약 18조 9,75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그 밖에 정우진·전현준·이선미(2006)와 이락현·김형천·신성식(2009)은 음주의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을 각각 14조 9,352억원과 24조 2,719억원으로 추정

- 결과적으로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소 10여 조원 이상에 이르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주세 세수가 3조원을 조금 상회(<표 II-2> 참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주세가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생화(internalization)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그중 희석식소주와 위스키의 세수는 도합 1조 2,387억원(2015년 기준) 남짓

- 그러므로 주세율 체계가 음주의 사회적 외부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외부불경제 교정적 조세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 세수 수준을 기준으로 세수중립적 개편만으로는 절대 정책목표를 충족할 수 없음을 의미
 - 따라서 전술하였다시피 세수중립 전제의 종량세율 체계 개편은 외부불경제 축소효과 없이 고가주류의 세율인하를 관철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가능

- 종량세율 체계로의 전환 문제는, 음주로 인한 외부불경제(사회적 외부비용)를 충분히 내재화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의 실효세율 인상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경우 주세 세수는 현재보다 최소한 2~4배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 바람직
 - 물론 세율인상을 통한 주류소비 감소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현행 세율보다 서너배 정도는 더 높아야 할 것으로 추정
 - 아울러 음주의 사회적 비용 중 상당 부분이 고알코올주인 증류주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의 상당 부분을 증류주가 점유해야 할 것으로 추론됨

- 이 경우 음주의 사회적 외부비용을 반영하여 종량세율 구조로 주세율 체계를 조정하면, 위스키의 주세액은 현재 수준과 큰 변동이 없거나 조금 상향조정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저가의 증류주 제품은 대폭적인 세율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 경우 저가주(주로 희석식소주)의 시장기반이 크게 잠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 정리하면, 종량세율 체계로의 전환의 기본 전제는, 피구후생조세의 관점에서 음주의 사회적 외부비용을 주세율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의 주세 세수규모를 기준으로 세수중립적 개편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
 - 세수중립적 개편은 결과적으로 위스키 등 수입증류주의 세율만 대폭 인하하고 희석식소주의 세율은 소폭 인상하는 수준에서 미조정될 뿐

- 만약 세수중립적 개편을 전제로 종량세율 체계로 전환한다면, 고가의 수입주류로 구성된 양주(위스키, 브랜디 등)의 세율인하 효과가 크게 부각되는 반면 본래의 정책목표(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전망됨
 - 주세 세수는 거의 대부분 희석식소주에서 비롯되므로 위스키의 경우 세수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세수중립적 개편은 명분만 존재

- 세수중립적 개편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주세의 세수규모가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할 정도로 충분히 큰 경우에만 타당

Ⅷ. 종합평가 및 결론



VIII. 종합평가 및 결론

- 본 보고서의 기본목적은 소규모주류제조면허제, 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 주류도매업면허(지역별 T/O제), 주세 증가세율 과세체계에 대한 임의심층평가를 하는 것
- 우리나라 주류시장의 여건을 요약하면, 과도한 규제 완화와 주류제품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진 필요성과, 세부담의 형평성(역진성)과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피구후생조세에 입각한 주세율 체계 정립 문제로 집약이 가능
-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소비자 선호의 다양화·고급화 및 민간경제의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다각화를 통해 사회후생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
 - 기존의 소수의 대규모·少품목 주류제품 중심의 국내주류시장을 다양화하여 다수의 소규모·多품종 주류제품의 공급확대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 기준을 시장 현실에 맞게 재조정
 - 아울러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운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규모주류제조자에게 세경감 혜택을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할 필요
 - 시설기준 및 세경감 혜택의 상향조정이 바람직
- 음식점이나 유흥주점에서 소비되는 주류제품은 특성상 (유통마진 등을 포함한) 부가가치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자료거래 등을 통한 각종 세부담(개인소득자의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의 탈루·회피 유인이 매우 높음
 - 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는 가정용·면세용 등의 주류제품이 (음식점, 유흥주점 등에서) 용도의 소비되는 경우, 식별·적발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세원관리 및 탈세방지에 최상의 정책효과(타당성, 효과성 등)를 발현 중
 - 반면 그에 따른 비용은 주류제품의 용도별 재고관리비용 증가 가능성 외에는 한계비용이 거의 0일 정도로 매우 효율적인 정책수단

- 주류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주류도매업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T/O제도를 시행중
 - 현행의 지역별 T/O제는 본연의 효율적 세원관리 기능에 충실한 가운데, 도매업자들이 면허권역을 넘어 주류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유효경쟁을 유지하면서도
 - 면허를 받은 지역 외에는 역외 판매장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
 - 이는 본래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경제위기 이후 단행되었던 구조조정과 베이버부머 세대들의 은퇴로 인해 초과노동공급 및 자영업부문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율 하락으로 야기되는 도산·파산 가능성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발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류 수요의 집중과 인터넷 등의 발달에 따라 지역별 T/O제도를 통한 중소지역 공급안정화 기능이 약화될 것이므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격오지 수요 비중 등을 감안하여 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

- 주세율 체계의 종량세 전환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로서, “세부담의 형평(역진성 완화)” vs.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 원칙에 대한 선택문제와 함께, 입장에 따라 주류제조사·수입업자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문제해결이 난망한 상황
 - 주종간 가격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종량세 수준에 대한 이해득실이 상충
 - 종량세율 전환시 사회적 비용을 세율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주요 논점

- 만약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의 종량세 전환시, 개편의 실익 없이 고가주의 세부담만 인하하게 되는 상황에 유의할 필요
 - 이 경우 종가세의 역진성 보완 장점이 사라지는 한편, 종량세 전환의 의의도 얻지 못함으로써 현행 체계보다 못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유념할 필요

- 외부비용을 충분히 세율에 반영한 상태라면 종량세 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예: 세수중립 종량세 전환방안 등)에는 오히려 종량세 체계로 전환시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만 증폭될 전망
 - 즉,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는 한편,
 - 가격이 저렴한 대중주(예: 희석식소주)의 가격만 인상되고, 고가증류주는 세율

이 대폭 인하됨으로써 본연의 주류소비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은 상태에서 형평성과 국내대중주의 주류산업 위축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그러므로 사회적 외부비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종량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현행의 종가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참고문헌

- 강신일, 「주류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 제10권, 제3호, 1988, pp. 119~138.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김영찬, 「미국의 주류판매 면허제도 해설」, 『주류산업』, 제24권, 제4호, 2004, pp. 52~64.
- 마정화·이정미, 「주류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제12권 제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 박명호·문예영,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7.11.
- 박종구, 「주세제도의 합리화: 종가세 체계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주류산업협회, 『주류공업』, 제17권 제2호, 1997.
- 박현진, 『주류안전관리 종합대책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4.
- 백낙승, 「선진제국의 주류 관리정책과 판매면허제도」, 『주류산업』, 제8권, 제2호, 1988, pp. 10~19.
- 서희열,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세무학연구』, 제17호, 2001, pp. 129~160.
- 성명재, 『주류 유통·판매 관련 규제정책의 국제비교』, 기타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1999.
- 성명재,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정책방향」, 『응용경제』, 제13권 제2호, 2011, pp. 31~70.
- 성명재,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재정수혜 결합분포와 재분배 정책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제22권 제1호, 2016, pp. 1~79.
- 성명재, 『주류시장 여건과 주세 부과체계』, 용역보고서, 한국재정학회, 2017(A).
- 성명재,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93호), 2017(B), pp. 111~154.
- 성명재,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수송용 유류 종량세의 물가연동제도 입효과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6권, 제2호, 2017(C).
- 성명재·박상원,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10-06, 한국조세연구원, 2010.

성명재·장근호, 『WTO 주세분쟁과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향』, 연구보고서 99-01, 한국조세연구원, 1999.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주세제도」, 미발표연구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4.

이락현·김형천·신성식, 「음주의 경제사회적 비용 추계」, 『의료경영학연구』, 제3권, 제2호, 2009, pp. 14~24.

이명헌·성명재, 『조세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외부불경제 유발 재화의 소비세율 인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02-06, 한국조세연구원, 2002.

이은경·이정미·마정화, 『주세법상 주류행정에 대한 연구』,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이상호, 「주류산업의 면허개방과 발전과제」, 『주류산업』, 제12권, 제4호, 1992, pp. 23~30.

장근호,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5.

정영호·성명재,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09-04, 한국조세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정우진·전현준·이선미,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예방의학회지』, 제39권, 제1호, 2006, pp. 21~29.

조성기·백진욱, 『주요국 주류행정시스템 비교』, 연구보고서, 한국주류연구원, 2010.

한국조세연구원, 『일본 세제의 새로운 구축을 위한 기본방침』, 번역자료, 2002. 6.

한국주류산업협회, 「전세계 주세율 증가세 체계국가」, 2016. 9.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Laws and Regulations under the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 2007.

Anderson, K., “Excise and Import Taxes on Wine, Beer and Spirit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Australian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Society, 2009. 12.

IBFD, “Turkey Special Consumption Tax Rates on Beverages and Tobacco Products Published,” 2016. 12. 2.

Ishi, H., *The Japanese Tax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Lafourcade, O., V. H. Nguyen, M. Giugale, *Mexico, a Comprehensive Development Agenda for the New Era*, 2001. 1

Manton, E., “Historical and cross-cultural changes in taxation of different alcoholic beverages,” Foundation for Alcohol Research & Education, 2015.07.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VAT/GST and Excise Rates, Trends and Policy Issues*, 2016.
- Omura, M., “The Effects of Tax Policy on Alcoholic Beverage Trends and Alcohol Demand in Japan,” 2014. 4.
- Österberg, E. and T. Karlsson, *Alcohol Policies in EU Member States and Norway: A Collection of Country Reports*, 2002.
- Richupan, S., “Alcohol products taxation: International Experiences and selected practices in asia,” Siam Development Institute, 2005. 2.
- SLGA, “Commercial Liquor Permit Application Package,” Saskatchewan Liquor and Gaming Authority, 2014.
- Sornpaisarn, B., K. D. Shield, and J. Rehm, *Alcohol taxation policy in Thailand: implications for other low-to middle-income countries*, 2011. 10.
- The Alcohol Research Group, *Alcohol Control Systems and the Potential Effects of Privatization*, 2008.

<웹사이트>

-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 (검색일자: 2017. 4. 3.)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 (검색일자: 2017. 4. 3.)
- 태국 소비세청, The Excise Department
<http://interweb.excise.go.th/contents.php?lang=en&m=4>, (검색일자: 2017. 3. 30.)
-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 (검색일자: 2017. 3. 31.)
- AGLC, <http://www.aglc.gov.ab.ca/licences/default.asp>, (검색일자: 2017. 4. 3.)
- ATO 법률 DB, <http://law.ato.gov.au/>, (검색일자: 2017. 4. 3.)
- IBFD, <http://www.ibfd.org>, (검색일자: 2017. 4. 3.)

부 록



부 록 1: 참고 표

〈부표 1〉 주세법 시행령 [별표 3](〈개정 2017. 2. 7.〉),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적 시설기준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가. 주정	1) 발효 및 증류시설 가) 발효조 총용량 나) 술덧탑 다) 정제탑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275kl 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1,0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나. 탁주 및 약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3kl 이상 2kl 이상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다. 청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무균상자	5kl 이상 7.2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1대
라. 맥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용기 총용량 (1) 전발효조 (2) 후발효조(저장조)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가스압측정기 라) 간이증류기	25kl 이상 50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1대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마. 과실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21kl 이상 22.5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바. 소주[법 별표 제3호가목5) 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25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사. 소주[법 별표 제3호가목1) 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5kl 이상 25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아. 위스키 및 브랜드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저장 및 제성조의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5kl 이상 나)와 다)를 합해 25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자.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침출,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5kl 이상 25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 비고: 1. 이 호는 이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공업용 합성주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호 가목의 시설 중 1)의 가)·나) 및 2)의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호 가목을 제외한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2. 법 제3조제1호의2 다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가. 탁주·약주 및 청주	1) 건물 가) 담금실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10㎡ 이상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나. 과실주	1) 건물 가) 원료처리실 나) 담금실(밑술실·제성실·저장실 포함) 2)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3)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6㎡ 이상 20㎡ 이상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 ~ 100도 1조 1대
다. 법 별표 제3호가목1) 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일반증 류주·리큐르 및 기타 주류	1) 건물 가) 담금실(원료처리실·침출실·발효실· 저장실·제성실 포함) 2)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3)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25㎡ 이상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 ~ 100도 1조 1대

3. 법 제3조제1호의2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시설구분	시설기준
1) 건물 가) 담금실(밑술실·제성실·저장실 포함)	10㎡ 이상
2) 부대시설 가) 세척 또는 세병장 시설 나) 병입 또는 타전 시설	
3)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 ~ 100도 1조 1대

4.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가. 탁주·약주 및 청주	1) 담금·제성·저장용기: 담금(발효)조· 제성조 총용량(청주의 경우 저장 및 검정조를 포함한다)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3) 그 밖의 시설: 유량계	1kL 이상 5kL 미만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나. 맥주	1) 담금·제성·저장용기 가) 당화·여과·자비조 등의 총용량 나) 담금 및 저장조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3) 그 밖의 시설: 유량계	0.5kL 이상 5kL 이상 75kL 미만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비고: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 병입(瓶入)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2.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3.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5.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의 재질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 중 합성수지 용기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 법령검색 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A3%BC%EC%84%B8%EB%B2%95#AJAX>)

